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19-02

연구보고 06-R13-1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책임연구원 : 김 은 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홍 영 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한국청소년개발원
06-19-02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춘화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조아미 교수
			윤옥경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	홍영오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부연구위원	박정선 교수 방은령 교수

연구결과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 가정과 학교 영역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의 장이 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음.
- 이에 따라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및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각 영역 별로 현행 대책을 분석하여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했음.
- 아울러 외국의 주요한 정책동향 및 프로그램 사례들의 검토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2.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의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및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전반적 수준에서 볼 때 개인, 가정 및 학교 지표들이 비행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성교육 및 전인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비행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주관

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많았으며, 폭력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많았음. 재산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많았음.

- 셋째, 학교급 및 성별로는 중학생 특히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인식이 문제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모 상호간의 관계 및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변인이었음. 성별로는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은 자기통제력, 일반계 여자고등학생은 가정친밀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변인이었음. 실업계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주관적 가정형편이 중요한 변인이었음.
- 넷째,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가정과 학교의 상호 접촉 또는 연계교육 그리고 학교상담 등을 비롯한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과과목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부모와 교사간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학교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3.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음.
- 첫째,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정책은 국가의 “소년사법”

의 원칙과 목표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정하는 일과 직결되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및 소년사법에 대한 기본 철학의 확립이 요구됨.

-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개입을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개입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가족 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원내용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 이혼이나 경제적 갈등에 의한 가정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부적절한 양육방식 및 부부갈등 같은 가정적 요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지원이 바로 가정·부모중심의 지원내용임.
- 넷째,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규약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며, 학교내에서 전문상담제도나 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과 범위	3
3. 연구방법	4
II.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5
2.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1)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관련 변인	6
(1)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6
(2) 학교관련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9
(3) 개인 관련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2
(4)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관련 변인과 사회적 변인간의 상호작용	13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5
3)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19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프로그램 관련 연구	20
1) 가정·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20
2) 학교 상담 관련 연구	24
III. 연구방법	29
1. 설문조사	29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29
2) 변인의 측정	30
(1) 청소년 문제행동의 측정	30

(2) 독립변인의 측정	31
(3) 가정·환경관련 연계교육 및 학생들의 요구 관련 문항	39
2.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 분석	40

IV.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 및

특징	43
1. 청소년 범죄의 현황	43
2.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의 현황	48
1) 청소년 흡연실태(중·고등학생)	48
2) 청소년 음주 실태	49
3) 청소년 가출 실태	50
4)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51
5)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인한 징계현황	52
3. 요약 및 시사점	55

V.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9
2. 조사대상자들의 문제행동 실태	61
1) 지위비행의 실태와 특성	61
2) 폭력비행의 실태와 특성	65
3) 재산비행의 실태	69
4) 성비행의 실태	70
3. 가정 관련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74
1)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문제행동	74
(1) 주관적 가정형편	74
(2) 주택소유여부	74
(3) 부모의 교육수준	75
(4) 부모와의 동거여부	76

2) 가족의 기능적 변인과 문제행동	77
(1)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	77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78
(3) 가족간의 불신	78
(4) 부모와의 관계	79
(5) 언어적 학대	79
(6) 신체적 학대	80
(7)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	80
4. 학교 관련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81
1)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81
2) 학교친구와의 친밀도	82
3)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82
4) 부모의 기대격차와 공부에 대한 부담감	83
5) 학교에 대한 유대감	84
5. 개인 관련 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84
1) 자기통제력	84
2) 자아존중감	85
6. 가정과 학교 및 개인관련 변인에 대한 종합분석	85
7. 요약 및 시사점	95
VI. 가정·학교 연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01
1. 가정 기능에 대한 실태	101
1) 부모와의 대화	101
2)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	103
3) 담임교사 인지 여부	103
4) 담임교사와의 만남	104
5) 부모와 교사간 공식적 만남의 시간	105
6) 대화의 시간 필요성 여부	105

7)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 여부	107
8)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평가	107
9)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108
2. 학교 기능에 대한 실태	109
1)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109
2) 학교생활 중 문제나 고민 해결 노력 여부	110
3) 학교상담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113
4) 학교에서 문제나 고민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114
5) 정규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수강 여부	115
6) 학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	117
7) 즐거운 학교생활	118
8) 교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119
9) 학교에서 부모참여프로그램 시행 여부	120
10) 반별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	121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2

VII. 가정·학교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 현황 125

1. 국내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125
1) 국가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 개관	125
(1) 법·제도 현황	125
(2)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의 현실과 한계	129
2) 가정 중심의 관련 정책 현황	132
(1) 부모교육 및 가정상담 관련 정책들	132
(2)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정책	135
(3) 새로운 가족문화형성 정책	138
3) 학교 중심의 관련 정책 현황	140
(1) 학교폭력 종합대책	140
(2) 학교 상담제도	156

(3) 교칙 및 규율체계와 학생인권정책	161
2. 외국의 주요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165
1) 미국의 정책 동향	165
(1) 소년사법체계의 동향	165
(2) 부모 및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개입체계와 프로그램	169
(3)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사례 및 지원프로그램	172
2) 영국의 정책동향	181
(1) 소년사법체계의 개혁동향	181
(2) 부모 침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체계와 프로그램	184
(3)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사례 및 지원프로그램	186
3. 정책 시사점	189
1) 회복적 소년사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89
2)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부모책임법제”의 등장	192
3) 부모·가정 상담 및 교육지원의 강화	194
4)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방안의 시사점	195
VIII. 정책 제언	197
1) 청소년정책 및 소년사법에 대한 기본 철학의 확립	197
2) 가정 및 학교에서 문제행동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관련법·제도의 개선	198
3) 부모·가정에 대한 개입방향과 전달체계	203
4)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의 개선	210
참고문헌	215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비행 관련 위험요인군	16
<표 II-2> 청소년비행 관련 보호요인군	18
<표 III-1> 가정 관련 독립변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4
<표 III-2> 학교 관련 독립변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7
<표 IV-1> 전체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2000~2004)	43
<표 IV-2> 소년범죄의 범죄자율(2000~2004)	44
<표 IV-3> 주요 죄명별 소년범죄자 현황(2000~2004)	45
<표 IV-4>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2000~2004)	46
<표 IV-5> 소년범죄자 교육정도(2000~2004)	47
<표 IV-6> 소년범죄자 범행동기(2000~2004)	48
<표 IV-7>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변화(년: 2000~2005)	49
<표 IV-8> 청소년 음주율	50
<표 IV-9> 가출 청소년 현황(2000~2005)	51
<표 IV-10> 연도별 학교폭력사범 및 불량서클 현황(2000~2004)	52
<표 IV-11> 청소년 각종 문제행동 징계현황(2003~2005)	53
<표 IV-12> 학교폭력 징계현황	24
<표 V-1> 조사대상자의 특징	60
<표 V-2> 학교급 및 성별 지위비행	61
<표 V-3> 학교급 및 성별 폭력비행	65
<표 V-4> 학교급 및 성별 재산비행	69
<표 V-5> 학교급 및 성별 성비행	71
<표 V-6>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비행의 차이	74
<표 V-7> 주택 자가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75
<표 V-8> 부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	76
<표 V-9>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	76

<표 V-10>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77
<표 V-11>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78
<표 V-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78
<표 V-13> 가족간의 불신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79
<표 V-14>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비행의 차이	79
<표 V-15> 언어적 학대경험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80
<표 V-16> 신체적 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80
<표 V-17>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81
<표 V-18>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	82
<표 V-19> 친구와의 친밀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82
<표 V-20> 학교적합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83
<표 V-21> 부모님의 기대격차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83
<표 V-22> 학교에 대한 유대감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84
<표 V-23>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85
<표 V-24> 자존감의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85
<표 V-25>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86
<표 V-26>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전체)	88
<표 V-27>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중학생)	89
<표 V-28>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남자중학생)	90
<표 V-29>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여자중학생)	91
<표 V-30>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일반계고등학생)	92
<표 V-31>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일반남고생)	93
<표 V-32>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일반여고생)	93
<표 V-33>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실업계고등학생)	94
<표 VI-1> 부모와의 대화 실태	101
<표 VI-2>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102

<표 VI-3>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103
<표 VI-4>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	103
<표 VI-5> 담임교사 인지 여부	104
<표 VI-6> 담임교사와의 만남 실태	104
<표 VI-7> 부모와 교사간 공식적 만남 여부	105
<표 VI-8> 대화의 시간 필요성 여부	106
<표 VI-9> 대화의 시간이 필요없는 이유	106
<표 VI-10>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 여부	107
<표 VI-11>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평가	108
<표 VI-12>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평가	109
<표 VI-13>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110
<표 VI-14> 학교생활 중 문제나 고민 해결 노력 여부	111
<표 VI-15> 학교생활 중 고민해결 노력 않는 이유	112
<표 VI-16> 학교상담실을 통한 상담회피 이유	113
<표 VI-17> 학교상담실 활성화 방안	114
<표 VI-18> 학교에서 문제나 고민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115
<표 VI-19> 학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	118
<표 VI-20> 즐거운 학교생활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19
<표 VI-21> 교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120
<표 VI-22> 학교에서 부모참여프로그램 시행 여부	121
<표 VI-23> 반별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	121
<표 VI-24> 반별 홈페이지 비활성화 이유	122
<표 VII-1> 행정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126
<표 VII-2> 위기청소년 지원관련 부처별 세부사업	127
<표 VII-3> 행정부처별 학교폭력 관련 추진내용	141
<표 VII-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교육 현황	143

<표 VII-6>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04. 8.15-12.15:4개월)	143
<표 VII-7>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업무별 주관부처 및 추진 일정	144
<표 VII-8> 균형적·회복적 접근방법의 수행목표와 새로운 역할들	166
<표 VII-9> 미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종합전략 모델	167

그림 목차

[그림 VII-1] 아동학대예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36
[그림 VII-1]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의 종류	204
[그림 VIII-2]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 전달체계	20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범위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적으로 존재했던 청소년 “문제행동”이 오늘날 새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서 등장하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적·정책적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사회 환경은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로의 재편이 각 부분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쟁력의 원천이 ‘사람’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구의 질적 성장은 국가 인적 자원개발의 최우선적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구조, 가족구조, 교육구조 등이 급변하면서 청소년의 성장환경 역시 부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미래세대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키우기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가정해체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학습중단 청소년 발생이 증가하는 등 공정한 학습기회 박탈로 인한 빈곤 세습화가 우려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정책과 맞물려, 방과 후 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 학습결손 및 비행노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약 50% 이상의 청소년이 가정 및 학교의 보호에서 무방비한 상태이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맞벌이 부부증가, 학교 밖 활동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학습중단, 성비행과 가출, 학교폭력을 비롯한 폭력행동, 약물오남용 등 청소년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간의 유기적 통합사회안전망 구축 및 대응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및 시도가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의 특징 중의 하나인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

하고 있는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또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 가정 관련요인 및 학교 관련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요인 및 가정·학교 관련요인이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 등 지지적 가정분위기,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통제 및 감독, 그리고 학교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 학교를 공부만을 강요하는 불쾌한 장소가 아닌 청소년기를 유익하고 폭넓게 보내며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쾌한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가정 내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처전략 훈련이나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 등을 제시하였고, 정책적으로는 사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과 지원, 청소년업무의 소관부처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 목표는 청소년의 일차사회화 기관인 가정 및 학교가 청소년 문제행동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새롭게 밝히기보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인들을 경험적으로 재확인하고, 현행 청소년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가정과 학교의 기능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문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실행되었음에도 실패하였는지 아니면 아예 시행되지도 않았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만일 후자라면 대안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대안이 무엇인지,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대책들이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주요한 정책동향 및 프로그램 사례들의 검토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과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2. 연구내용과 범위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관련 쟁점을 파악하였고, 가정·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범죄현황과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 행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등 국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청소년문제행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셋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가정과 부모, 학교와 교사의 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 등 가정과 학교의 연계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책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넷째, 가정 및 학교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정책과 사례분석을 위해, 현행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의 문제점과 한계 및 각국의 주요 정책방안과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조사결과에 나타난 정책 시사점, 가정과 학교의 기능 강화방안 및 청소년 참여를 통한 문제행동 예방대책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내외의 관계법령과 연구자료 등의 문헌 등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가정·학교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논의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국가기관에서 파악한 청소년 범죄 및 범죄이외의 문제행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제행동 중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범죄 이외의 문제행동 현황 및 징계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정과 학교 관련 요인에 대한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가정·학교 연계교육과 학교생활에 실태 조사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고등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문제행동대책 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넷째,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기존 대책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간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및 외국의 정책과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문제 행동의 개념
2.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프로그램 관련 연구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청소년 문제행동이라는 용어는 이재분·현주·박효정(2003)이 “청소년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비행 또는 문제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진화 등(2002)이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일탈행동과 범죄, 가치기준에서 탈락한 이상행동,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행동 등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가치와 윤리, 법·제도에 위배되는 범죄 및 일탈행위로 개인은 물론이고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와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행동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사회적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성격,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정의한 바에 따라,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처벌될 수 있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소한 지위비행도 모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구체적인 문제행동은 크게 네 가지 유형(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으로 나누되, 모두 18개의 문제행동을 포함하였다. 지위비행이란 형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사회규범상 청소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탈행위로써 본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성인용 술집 출입, 컨닝, 무단결석 및 가출 등의 일탈행위를 말한다. 폭력비행은 폭행, 집단패싸움, 금품강탈, 친구따돌림, 채팅/게시판 통한 욕설/폭언 및 환각성 약물흡입/복용 등의 일탈행위를 포함하였다. 환각성 약물흡입 또는 복용 행위를 폭력비행에 포함시킨 이유는 외국의 경우에는 환각성 약물사용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재산비행은 상점절도와 대인절도를 포함하였고, 성비행은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인터넷을 통한 음란/포르노물열람 및 채팅/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등의 일탈행위를 포함하였다.

2.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관련 변인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달라 분석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거나 문제행동의 유발 및 보호요인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석단위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별로 간단히 설명하고, 유발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1)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규범을 배우고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제도이다. 가족은 청소년기에 가치관 형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의 적응 및 친구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청소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노성호, 1993). 따라서 이러한 가족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비행이 나타난다는 배경에서 가정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는 비행소년 중에 가난한 가정 출신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가정형편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경우의 비행소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 1960년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양육방식 및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 등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업, 2002).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려 한다.

먼저 가족의 구조적 측면으로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가정형편 및 결손가정여부를 들 수 있다. 청소년비행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학적 이론(아노미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하위문화이론, 고전적인 해체이론 및 사회통제이론 등)은 이론의 출발점으로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시도와 더불어 출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김준호·김순형, 1995), 거의 모든 이론들은 가난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해답으로서 아노미, 학습, 하위문화, 사회해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업, 2002; Braithwaite, 1981; Tittle, Villemez, & Smithet, 1978; Tittle & Meiyer, 1991). 다만, 객관적인 가족의 월수입을 통한 김준호와 김순형(1995) 및 김준호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월수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인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수입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정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은 지위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낀 자녀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생활형편과는 관계없이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지위비행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객관적 월수입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가정형편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결손여부로써 결손가족과 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 역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김준호

등, 2002). Nye(1958)는 문제가 없는 결손가족보다는 문제가 있는 일반 가족이 비행소년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문제있는 가족이 비행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결손가족과 비행간의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결손이전에 이미 많은 긴장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준호 등, 2002). 김준호와 김순형(1995) 및 김준호 등(2002)의 연구에서는 결손유형(결손가족은 부모 중 하나만 있는 편부모가족과 부모가 둘 다 없는 소년소녀가장 가족)은 비행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모가 없는 결손가족의 자녀가 비결손가족 자녀에 비해 지위비행을 다소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부모의 부재 자체가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즉 결손가정 자녀의 비행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겪게되는 심리적·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일 수 있다(김준호 등, 2002).

가족의 기능적 측면은 가족의 친밀감,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 가정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 부부 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분위기 및 신체적·언어적 폭력 또는 학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비행과 관련하여 가족의 친밀감을 살펴보면, 가족의 친밀감이 문제행동을 억제한다는 결과는 많은 학자들(기광도·이희길, 2002; 강영자·김윤희, 1999; 전영실, 2002; 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Glueck & Glueck, 1950; Rankin & Kern, 1994; Rankin & Wells, 1990)이 보고하고 있는데, 이동원(1987)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성적 긴장이 비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가 문제행동을 억제한다는 결과 역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김준호·김은경, 1995; 최영신, 2005; Hirschi, 1969; Patterson, 1982, 1986; Rutter & Giller, 1984).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또한 청소년기 특징 중의 하나가 부모로부터의 독립 또는 자율성 추구가기 때문에 청소년을 감독 또는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행이 부모의 감독 또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 형태와 부모의 관계 정도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기광도·이희길, 2002; 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 외, 1989). 비행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들이 일반 가족보다 가족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의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김순형, 1995). 이명숙·김영미(199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이 가족구조의 형태보다는 부모간의 불화 정도의 예측력이 더 높았다.

부부 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분위기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언어적 폭력 또는 언어적 학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언어적 폭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고, 비행시기도 빨랐다(김준호 등, 1989; 김준호·이동원, 1996). 또한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도 청소년 비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상해 위험이 높은 폭력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준호·이동원, 1996; 민수홍, 1998).

청소년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경우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며,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일관성있는 처벌을 하면서 적절한 상담과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 청소년 비행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준호 외, 1989; 전명희·오익수·김진희, 1995; Barnes & Farrell, 1992).

(2) 학교관련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청소년에게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써, 그리고 자아개념, 사회관 및 청소년

년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기능한다(김준호 외, 2003:174-175). 따라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행동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와의 친밀감, 학교적합성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학교유대감, 부모와의 기대격차 및 학교성적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교사에 대한 애착과 제도로서의 학교에 대한 인식 및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를 밝혔다(Hirschi, 1969; Kelly & Pink, 1973 등). 청소년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애착과 비행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Hirschi(1969)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학교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학교에 대한 애착을 학교에 대한 동일시,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등으로 측정하였는데,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애착은 학생들에게 동조에의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비행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유대감은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 및 학생개개인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신념이다(Blum & Libbey, 2004). 학교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connectedness)의 중요성¹⁾을 강조한 Resnick과 그의 동료들(1997)은 청소년의 삶에서 가정, 친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들은 1994년에서 1995년사이에 미국의 132개 학교(80개의 고등학교와 나머지는 중학교)의 7학년에서 12학년의 9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다시 추후에 조사연구를 수행한 20,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연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이 청소년의 삶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즉 학교에 유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음주나 불법적인 약물복용이 적었고, 폭력행동이나 일탈행동에 덜 개입되어 있으며,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덜 경험하고 있고, 자살생각이나 시도도

1) 긍정적인 유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 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Bowlby의 애착이론, 두 번째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세 번째는 사회발달이론이다.

적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Blum, McNeely 및 Rinehart(2002)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학교의 구성원의 하나라고 느낄 때, 문제행동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으며, 정서적 안정감 수준이 높았음을 밝혔다. 또한 학교에 대한 유대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힌 Klem과 Connell(2004)의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한 유대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에 대한 강력한 예측치였다. 즉 학교에 유대감을 느낄수록 학업성적이 더 높았다.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발달적 요구 수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으로, 사회적 환경과 핵심적인 발달적 요구수준이 충족될 때 학교유대감은 최대가 될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주요한 발달적 요구수준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유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성인들로부터의 관심과 지지, 발달수준에 맞는 적절한 감독 및 동료들의 수용이다 (Blum과 McNeely(2002)).

비행과 가장 일관된 관계를 보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인 중의 하나가 학교성적으로써, 학업성취는 측정방식에 상관없이 비행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lliot & Voss, 1974; Hirschi, 1969; Lawrence, 1985; Polk & Schafer, 1972; 김준호·노성호, 1993, 김준호·김은경, 1995),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성적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1989, 김준호·노성호, 1993)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공부가 청소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부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대부분 자녀의 공부, 즉 성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자녀의 성적이 좋으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별 문제가 없지만, 부모의 기대만큼 성적이 높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기본적인

관계도 부정적이게 된다. 특히 여러 형제들 중에서 다른 형제와는 달리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와 친밀한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게 되고, 가정에서 소외되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된다(노성호, 1993).

김준호 외(1989)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변인과 공부압력, 부모의 불인정, 비행친구와 접촉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비행에 대한 경로분석을 한 결과, 공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불인정은 지위비행과 폭력비행, 재산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한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과 연관해서 볼 때, 공부 또는 성적으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게 되는 불만족 또는 불인정은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유성경·안희정·이소래·오익수(1999)의 연구에서도 학교관련 요인 중 성적하락 또는 낮은 성적이 청소년비행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열망과 자녀의 현재 성적으로 정의되는 공부압력은 중학생의 비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의 비행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노성호, 1993).

(3) 개인 관련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먼저 자기통제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의 핵심을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때와 장소에서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가져 올 장기적인 손실을 무시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민수홍,

2005). 민수홍(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지위비행, 범죄경험, 남 괴롭히기, 컴퓨터관련 일탈 및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지위비행과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 괴롭히기와 컴퓨터 관련 일탈도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교에서 징계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청소년 문제행동 또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중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Rosenberg와 Caplan(1982)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논쟁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대체로 부정적이며 자아수용능력이 현격하게 낮았으며(구본용, 1992), 비행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게 하며, 스스로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불안정하여 가족이나 타인과의 인간관계 형성도 원만하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 부적응 행동을 하는 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홍봉선, 1996).

(4)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 관련 변인과 사회적 변인간의 상호작용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밝힌 노성호(2004:196)는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은 단지 단일변인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변인들간의 연관된 효과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유대변인들인 애착과 감독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과 감독이 최하 수준인 청소년의 비행(무단결석, 가출, 금품갈취)이 다른 조건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으며, 가족구조와 애착의 상호작용에서는 전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지만 결손가정 청소년의 애착이 중간 정도일 때보다는 높거나 낮을 때 비행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성호(2004:197)는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개별변인들과 비행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분석방법보다는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더 큰 설명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김경(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변인간의 상호작용모델과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간의 상호작용모델이 각각의 부가적 모델보다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변인간에서는 ‘부모애착×교사애착’, ‘부모감독×기대격차’, ‘부모감독×비행유대’, ‘학업성적×비행접촉’, ‘학업성적×비행유대’, ‘기대격차×비행접촉’, ‘기대격차×비행유대’, 그리고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간에서는 ‘충동성×교사애착’, ‘자아존중감×비행접촉’, ‘자아존중감×비행유대’ 변수가 비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 중 하나의 예를 들어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충동성×교사애착’의 경우 뚜렷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여 교사와의 애착이 약할수록 충동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강했다. 김경(2004:114)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별로 개별화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행원인의 상승적인 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두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닌 비행원인에 노출된 경우에는 두 원인 중 개입이 보다 용이한 한쪽을 선택하여 접근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동원(1997)은 청소년 비행의 유발요인과 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모델, 유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모델 및 통제요인과 유발요인간의 상호작용 모델에 검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상호작용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밝힌 사실은 상호작용의 도입이 경비행에 대한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중비행과 비행심각도에 대한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동원(1997:138-139)은 이 결과를

비행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소년에게 중첩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원인들이 예상하는 경비행의 정도를 능가할 만큼 많은 경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경비행은 청소년이 그 시기에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행위인 반면 중비행은 극소수의 청소년이 저지르는 행위로서 비행유발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소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보통의 소년과는 달리 경비행의 반복보다는 중비행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회수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과 사회적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분석함에 있어서는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을 모두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포함하여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위험요인(risk factor)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고,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 위험요인은 개관적인 위험 상황들로서 주관적으로 인식된 어려움이 괴로움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단지 부재하거나 위험의 반대양상 자체는 아니다(유성경 등, 1999). 유성경 등(1999:17)에 따르면,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위험요인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드시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가시화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비행 또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은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들,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된 요인들, 또래 친구와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징과 관련된 요인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공통되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 유발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Dryfoos, 1990; 정현희·이시형·김은정·박현선·신혀아·강신옥, 1998에서 재인용).

다음의 <표 II-1>는 특히 국내외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위기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1> 청소년비행 관련 위험요인군

위험요인군	위험요인	
개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자기존중감/자기효능감 ● 충동성(공격성) ● 반사회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추구성향 ● 조기비행(비행경력) ● 역기능적 대처전략
가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결손 ● 가정불화 ● 비일관적/학대적 양육태도 ● 비행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 부모-자녀간 불안정한 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 감독 소홀, 부모의 위험 행동, 가족해체 ● 부모의 자녀 교육 기대 수준 ● 가족의 비행경력
학교/친구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낮은 학업성취도/낮은 학습의욕 ● 학교에서의 지지부족 ● 또래친구의 비행(비행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친구의 위험행동 수용 ● 잦은 결석 또는 전학 ● 교사들의 낙인/무관심 ● 학습긴장
지역사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환경 ● 폭력적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사회적 유대감 ● 비행 허용 사회환경

다양한 위험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부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들 요인이 서로 독립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단일한 특성의 위험요인보다도 위험요인의 누적된 효과가 청소년의 성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구본용 등, 2005에서 재인용).

이에 비해 자기존중감이나 사회성, 기능적인 대처능력 등 청소년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특성들과 지지적인 가정환경, 지지적인 또래관계 및 지지적인 학교환경 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다(Chung & Elias, 1996; Rutter, 1987; 정현희 외, 1998). 보호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빈곤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요인을 찾으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밝혀낸 것은 성격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일관적이며, 보다 긍정적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사나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빈곤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 간다는 것이었다(Gribble, 191; Franklin, 1995, Snow, 1995; 지승희, 2002:12 재인용). 이와 같이 보호요인은 가정 및 학교환경 내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스트레스 등 각종 위험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그리고 개인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자기성장을 지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다음의 <표 II-2>는 특히 국내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위기와 관련된 보호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유성경 등(1999)은 탈비행에 성공한 1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비행화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였다. 가정 관련 위험요인은 가정불화, 가족구조의 결손 및 경제적 빈곤, 가족들의 비행과 정신적 문제,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이었고, 학교관련 위험요인은 나쁜 성적과 성적의 하락, “노는 아이들”과의 어울림, 교사들의 낙인 및 무관심이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 해서 노는 아이들에게 눈에 잘 띄어 일찍 찍히는 경우, 거절을 잘하지 못해 술자리 등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이나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를 폭력으로 표현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

가 많았다.

<표 II-2> 청소년비행 관련 보호요인군

보호요인군	보호요인	
개인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가치관 ● 사회적 유능감/자기효능감 ● 긍정적 자기정체감/자기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기질적 귀인 ● 내재적 통제소재 ● 지적능력/문제해결능력
가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내 정서적 유대 ● 부모,형제자매의 지지 ● 자녀학습에 관여하는 정도 ● 가족에 의한 분명한 행동기준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부모관계/부부간 만족 ●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부모 ● 부모와의 많은 대화 ●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적절한 기대
학교/친구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 ● 높은 성적과 학업에 대한 욕구 ● 교사의 관심과 지지 ●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친구관계 ● 긍정적 학교생활 ● 교칙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가까운 친구의 존재
지역사회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관심 ● 술/담배 구입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적인 지역사회 ● 가정·학교, 다른 사회기관의 유대

이에 비해 보호요인은 친화력있는 인간관계,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 성취경험 및 진로계획,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전달 및 약속 지키기, 마지막으로 개인적 자질(분석적 사고능력/미래의식/긍정적 삶의 자세/ 높은 지능 등) 등 이었다. 특히, 부모들이 제공할 수 없었던 친화력있는 인간관계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이 청소년들을 가족의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다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은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을 촉발하는 환경적 위험요인들이 청소년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보호요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메타분석이란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이란 의미로, 낱낱의 연구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나 결과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오성삼, 2002:14). Lipsey와 Derzon (1999)은 청소년비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청소년비행에 대한 위험요인의 상대적 예언력을 비교하여,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교 집단에서의 주요 예언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공격성과 음주 및 흡연을 일찍 시작한 것이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고, 중학교 집단에서는 반사회적 또래와의 접촉과 사회적 유대감의 결핍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었다(유성경 등, 2000, 재인용).

청소년 문제행동 또는 비행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메타분석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권지은(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권지은은 1988년부터 1998년 2월까지 발행된 석·박사학위 논문 250편 중에서 청소년비행을 종속비행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경험적 연구가 아닌 문헌고찰 중심이거나 단순빈도분석만 하였거나 각종 통계자료만을 활용하여 동향만을 비교한 논문을 제외한 89편을 분석하여 개인변인 13, 가정변인 12, 학교 및 사회변인 9개를 추출하고 이를 메타분석하였다. 권지은은 효과크기의 부호가 양(+)인 변인들을 비행유발요인으로, 음(-)인 변인들을 비행억제요인²⁾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비행유발요인은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우울, 충동성, 자기합리화, 비합리적 기대, 반사회적 성향, 불안, 모험심 및 공격성이었고, 가정 관련 변인은 구조적 결손, 가정에 대한 불만, 가정불화, 비합리적 양육태도 및 부적절한 역할 모델링이었으며, 학교 및 사회 관련 변인은 비행유대, 낮은 학업성취도, 사회활동참여, 및 유해환경 접촉이었다. 비행억제요인 중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준법의식, 자기통제성, 책임감, 타인기대에 대한 인지 및 자아존중감이었고, 가정 관련 변인은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 적응력, 가족의 사회적 지

2) 권지은은 유발변인과 통제변인이 아닌 억제변인으로 명명하였다. ‘~을 일으키는’의 뜻을 지닌 ‘유발’의 개념과 ‘~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의 뜻을 지닌 ‘억제’라는 용어가 이들 요인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 가족 응집력, 합리적 양육태도 및 형제간 우애였으며, 학교 및 사회 관련 변인은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도, 교사의 지지, 사회적 유대 및 교사에 대한 애착이었다.

비행유발요인 중 개인변인 중에서는 공격성, 가정 변인에서는 가정불화, 학교 및 사회변인에서는 비행유대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전체 변인 중에서는 공격성의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컸다. 변인 군별로는 학교 및 사회 변인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비행억제요인 중 개인변인 중에서는 준법의식, 가정 변인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 및 사회변인에서는 학교에 대한 애착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으며, 전체 변인 중에서는 가정생활 만족도의 효과크기 평균이 가장 컸다. 변인 군별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 유발요인에서 가정 변인에 포함된 변인들 중 구조적 결손 변인의 효과크기에 비해 기능적 측면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불화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학교 및 사회변인의 효과크기가 다른 변인군보다 크게 나타났다. 권지은(1998:41)은 이를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정의 사회화 기능은 상당부분 상실되었고, 이를 학교와 매스컴이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되어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학교 프로그램 관련 연구

1) 가정·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도된 대부분의 공식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는 청소년 비행이 부모, 또래나 친구, 학교와 교사 및 지역사회 등과의 오랜 시간에 걸친 반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Ziegler, Taussig, & Black, 1992). 이에 비해 가족,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조기개입프로그램은 비행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llivan & Wilson, 1995).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해왔던 가정·학교 연계방법은 부모와 학교 간의 관계형성이나 의사소통 또는 가족에 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방문프로그램이었으나, 이 방법은 취업모나 저소득층 가정과 같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능성이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으로 아우라치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구조화하기 어렵고 부모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박현선·이상균, 1998:206).

이에 비해, 학교 내 전문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및 자녀 양육방법이나 대화방법,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 부부갈등해결 방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위한 지역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강화를 통한 청소년기 문제예방에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가정과 학교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가정의 교육력을 지원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다(정현희 등, 1997). 즉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자녀간의 관계 역시 바람직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Clabby & Elias(1986)의 ‘자녀의 의사결정지도’와 같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정현희 등(1997:43-44)은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정신건강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시행되어 온 많은 프로그램들 중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인 Weissberg, Caplan, 및 Harwood (1991) 등이 개발한 일명 ‘Stop Light’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코네티컷의 New Haven학교에서 교과과정의 일부로 시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연구자들은 학교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자기통제, 스트레스 관리,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지도하였다. Weissberg, Jackson, 및 Schriver(1993)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갈등해결능력, 자기통제능력, 및 교우관계 면에서의 월등한 증가를 밝혔다.

둘째, Botvin과 Tortu(1988)는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학습이론과 문제행동이론에 기초한 개발한 Life Skills Training Program(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또래압력을 저항할 수 있는 거절 기술과 자기주장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기술을 함께 지도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 흡연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마리화나 복용과 음주율도 감소되었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간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청소년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Comer(1987)의 School Development Program(학교발전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 등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쳤고,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기술, 기초 학업기술 및 예능 등을 지도한 결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의미있게 증가되었으며, 학생들의 문제행동 발생율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넷째, Elias와 Clabby(1989)가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자기통제, 집단참여,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받았던 집단의 학생들은 자기통제, 집단참여,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기술의 습득 등 모든 영역에서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교사가 보고한 문제행동과 교우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상황

에 대한 적응능력도 향상되었다. 6년이 지난 후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시 평가했을 때도 프로그램 참여집단의 학생들이 비프로그램참여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폭력이나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비율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lias, Gara, Schuyler, Branden-Muller, & Sayette, 1991)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정현희 등(1997)이 개발한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의 이해, 바람직한 자녀교육관,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방법 및 기술, 문제해결방법,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지도·해결하는 방법,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대처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통제집단의 자녀들보다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 아울러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인성지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인성지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을 수 있다. 프로그램진행방법과 관련해서 볼 때, 정현희 등(1997)은 학부모소식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학부모소식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현희 등(1997)이 거의 10여년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아직도 대규모 학급, 대단위 학교가 불가피하고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정신건강을 전담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음주, 흡연, 학교중퇴, 가출, 자살, 및 절도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학교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학교라는 장을 기반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더 동질적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동일한 발달

단계, 동일한 학교환경, 동일한 지역사회라는 동질성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감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교라는 장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대상의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학교상담 관련 연구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장을 가지고 출세하기를 기대한다. 학교의 교육환경도 공부를 잘하고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수의 우등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고 3이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긴장하게 되며, 가정, 학교, 친구집단, 사회전반 등 이들 주위의 모든 환경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된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라 거의 15년전인 1992년 한국사회학회 가족분과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대학입시와 가족’에 나오는 내용이다(김문조, 1992). 지금의 현실은 이와 같은 가정 및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전에 비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약물중독, 자살 등의 학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고,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실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로 인해 학교는 지식중심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정신을 위한 역할까지도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학생상담은 지나치게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즉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다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상담실로 불러 해결하려는 문제학생들 위주의 상담이 주된 활동이다. 그러다보니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은 상담실이 고민이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곳이 아

나라 선생님에게 혼나는 곳 또는 혼계듣는 곳으로 인식되어 상담실 방문을 극히 꺼리는 실정이며, 상담실 출입경험은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때에만 학교교육,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진단, 처방, 및 대책이 쏟아져 나오다가 곧 잊혀질 뿐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거나 실천하려는 노력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일반상담교사의 한계를 절감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양성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³⁾를 두거나 시·도 지역교육행정 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19조의 2)’과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각급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⁴⁾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

3)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도부터 장관이 지정하는 전국의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교육부령 제375호)을 설치하여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학교상담교사 양성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관한 법령 >

○ 초·중등교육법

-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시·도교육 행정기관에 둔다.
-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40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 제35조(초·중·고 교원의 배치기준)

- 초등(중등)학교에는 ...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12조(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4) 2003년 전체 학교의 50.55%인 5,222개교, 2004년 전체 학교의 73.27%인 7,626개교에 설치되어 있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

여 2005년 308명, 2006년 402명, 2007년 939명 등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선발하여 배치하려 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이마저도 실제적으로 모두 충원하지는 못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 201명과 기간제교사 107명으로 충원된 실정이다(황순길 등, 2005).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의 3,327명에 대한 충원계획도 가장 시급한 고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이라 중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약 3,000명의 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능력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느냐에 문제는 남아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정책에 한계를 느낀 상담관련 기관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나 학교청소년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학교상담실보다는 외부 청소년상담센터⁵⁾에서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⁶⁾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육성 3대 관련법에 의해 청소년상담사들이 학교 및 청소년 상담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청소년상담사는 단일 학교에만 배정되어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용이하게 실시하고 학생의 인성개발과 문제예방이라는 폭넓은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황순길, 2005:13). 청소년상담원에서 ‘학교청소년상담사 활동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 결과, 학교청소년상담사를 만난 후에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행복감,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학교폭력 가해 및 방관행동과 피해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 또한 75.3%의 학생들이 학교상담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를 잘 했다고 평가했고, 69.6%의 학생들은 친구에게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상담실 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학교청소년상담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에 대한

5) 2004년 전국 청소년 상담실 수는 136개소, 2004년 상담건수는 921,111건 상담수혜 청소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328,917건(35.7%),고등학생 260,071건(28.2%), 초등학생 113,492건(12.3%) 등이다 .

6) 2004년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235,305건(25.5%), 진로 203,509건(22.1%), 성격 154,534건(16.8%), 성 59,225건(6.4%), 가족 56,161건(6.1%), 학업/학교 부적응 53,460건(5.8%) 순으로 많았음.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에 전체의 61.5%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학교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이나 교육이 자녀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는 82%, '학교에 전문적인 상담선생님이 계셔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에는 85.9%,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에는 전체의 95.5%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상담실의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후 부모들은 '바람직한 자녀지도방법', '부모로서의 자기이해', '자녀이해', '자녀와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 '부모역할의 중요성'등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91.2%의 학부모들이 학교상담실에서 상담 혹은 교육프로그램 받기를 잘 했다고 응답하였다(황순길, 2005:93-99). 따라서 학교의 상담실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과 학교간 밀접한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분석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와 형사사법기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파악한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악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법처리 이외의 징계현황을 분석하였다.

1.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청소년의 비행 또는 문제행동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 및 문제행동 유발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학교의 선정은 편파된 표본을 피하기 위해서 성별, 학교급, 및 지역을 고려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학교를 표집하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구를 방위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에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당하였다. 조사에 대한 협조의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표집을 하였으며, 각 표집집단별로 중·고등학교를 각각 2~4개교씩 총 22개 학교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조사는 2006년 5월 8일에서 5월 30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집단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면접의 단위는 학급이되, 위의 방법으로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임의로 한 학급 또는 두 학급을 선정하였다. 학급의 선정은 중·고등학교의 학교유형과 학

생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집단면접은 훈련받은 면접원이 담임교사의 협조하에 실시하거나 대상 학교의 교사가 직접 대상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사된 전체 표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122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중 중학교는 11개 학교에서 532명이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8개 학교에서 462명이 조사되었고, 실업계 고등학교 3학교에서 128명이 조사되었다.

2) 변인의 측정

(1) 청소년 문제행동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비행행위를 중심으로 볼 때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처벌될 수 있는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소한 지위비행도 모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조사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문제행동항목은 모두 18개이다. 그 항목은 흡연, 음주,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성인용 술집출입,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켄닝, 무단결석, 가출, 폭행, 집단패싸움, 상점절도, 대인절도, 금품강탈, 친구따돌림, 환각성 약물흡입/복용, 인터넷을 통한 음란/포르노물열람, 채팅/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채팅/게시판 통한 욕설/폭언 등이다.

이러한 18개의 문제행동항목에 대해서 지난 1년동안 각 문제행동의 경험을 ‘없다’, ‘6개월에 한두 번’, ‘한달에 한두 번’, ‘1주일에 한두 번’ 및 ‘1주일에 3-4번’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변인들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문제행동항목들을 묶어서 4개의 비행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지위비행’으로서 흡연, 음주, 성인용 술집출입, 켄닝, 무단결석, 가출 등의 6개 항목이 포함된다. 둘째는 ‘폭력비행’으로서 폭행, 집단패싸움,

금품강탈, 친구따돌림, 환각성 약물흡입/복용, 및 채팅/게시판 통한 욕설/폭언 등이다. 세 번째는 ‘재산비행’으로서 상점절도 및 대인절도가 포함된다. 네 번째는 ‘성비행’으로서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인터넷을 통한 음란/포르노물열람 및 채팅/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비행유형별로 ‘없다’, ‘6개월에 한두 번’, ‘한달에 한두 번’, ‘1주일에 한두 번’ 및 ‘1주일에 3-4번’항목에 대한 빈도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정 및 학교관련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행유형을 5점척도화 하여 분석하였다. 즉 ‘없다’를 1점, ‘6개월에 한두 번’을 2점, ‘한달에 한두 번’을 3점, ‘1주일에 한두 번’을 4점, 그리고 ‘1주일에 3-4번’을 5점으로 하여 위에서 구분한 4가지 비행유형의 각 세부 비행유형들의 점수를 더해서 척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의 점수는 6점에서 36점, 성비행은 4점에서 20점, 재산비행은 2점에서 10점, 마지막으로 자살시도경험은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갖는다.

(2) 독립변인의 측정

가) 가정환경적 요인의 측정

가정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 관련 변인을 가정의 구조적 변인과 기능적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가) 가정의 구조적 변인

가정의 구조적 변인으로는 주관적 가정형편, 친부모 및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및 거주가옥의 소유형태를 측정하였다.

(나) 가정의 기능적 변인

가정의 기능적 변인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 비행행동과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가족통합도’, ‘부모간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 ‘훈육방식’ 요인을 포함시켰다.

‘가족통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영신(2005)의 연구에서 이용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즉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잘 돕는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지 못한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우리 집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한다’의 6개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나, 요인분석결과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잘 돕는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및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의 세 문항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밀도를 측정하려 했던 문항들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이 세 문항을 제외한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지 못한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및 ‘우리 집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한다’의 세 문항으로 ‘가족간의 불신’이라는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 변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었다.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는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 즉 ‘부모님은 내가 두렵거나 슬플 때 힘이 되어 주신다’,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려 했으나 복잡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잘 돕는다’,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및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의 세 문항과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가, 즉 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부모를 의식하며 행동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김준호와 김순형, 1995). 본 연구에서는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내가 외출했을 때 부

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의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다.

부모간의 관계는 부모간 대화의 정도와 부부싸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자주 하신다', '부모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부모님은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신다',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대리기도 하신다',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욕을 하기도 하신다'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4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 학대는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심하게 때리셨다'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를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언어적 학대는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고함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심하게 욕을 하셨다'라는 문항에 대해 신체적 학대와 같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훈육방식은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가 잘못하여 벌을 줄 때 혼내는 정도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했을 때 칭찬을 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벌과 칭찬의 빈도에 따라 분류하여, '상만 주는 형'은 칭찬을 자주 하나 벌은 전혀 주지 않는 형으로 1점을 주고, '무관심형'은 상도 벌도 주지 않는 형으로 2점을 주었으며, 잘못하면 때리고, 칭찬받을 일에는 상을 주는 '상벌 모두 주는 형'은 3점, 상은 전혀 주지 않고 잘못했을 때마다 벌만 주는 '벌만 주는 형'에는 4점을 주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 역시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잘못했을 때마다 혼난다'를 1점, '부모님 기분에 따라 혼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를 2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를 3점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가정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여러 문항으로 측정된 복합척도에 대해서는 기대한 대로 분류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1>에 제시되었다.

<표 III-1> 가정 관련 독립변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	2	3	4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736	.278	.140	.255
우리 집 식구들은 대화를 많이 한다.	.713	.162	.164	.072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 하신다.	.713	.063	.159	.324
부모님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신다.	.662	.032	.216	.232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잘 돕는다.	.657	.169	.260	.193
부모님은 나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신다.	.656	.076	.141	.319
부모님은 내가 두렵거나 슬플 때 힘이 되어 주신다.	.649	.061	.219	.319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	.642	.022	.195	.404
부모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635	.481	.103	-.099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자주 하신다.	.632	.453	.061	-.194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욕을 하기도 하신다.	.121	.840	.091	.162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074	.820	.087	.216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면 때리기도 하신다.	.086	.815	.067	.245
부모님은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신다.	.256	.659	.046	.198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232	.112	.867	.072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240	.076	.852	.082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249	.077	.847	.070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지 못한다.	.259	.234	.091	.706
우리 집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한다.	.249	.311	.043	.691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299	.293	.080	.691
Eigenvalue	8.101	2.316	1.565	10182

요인 1은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관심과 애정 및 가족간의 화목과 관련있는 문항들인데 ‘부모님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신다’와 ‘부모님은 서로 대화를 자주 하신다’의 두 문항은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두 문항은 요인 2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요인 2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 두 문항을 제외한 8문항으로 복합척도를 구성하고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요인 1에 포함되었던 두 문항과 부부싸움과 관련된 4문항으로 복합척도를 구성하여 ‘부모간의 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가 외출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가와 관련있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식구들 상호간의 부정적 관계와 관련있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간의 불신’으로 명명하였다.

나) 학교 관련 변인의 측정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 할 것 같다’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은 별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부를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싫다’의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이다.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은 ‘우리 학교에는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우리 담임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신다’, ‘우리 담임교사는 나를 싫어하신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신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다’의 5문항으로 측정하려했으나 요인분석결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와 ‘학생들에 따라 처벌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두 문항이 포함되어 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이다.

학교친구와의 친밀도는 ‘우리 학교에는 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가 있다',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 '우리 학교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다', '학교에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다', '우리 학교에는 나에게 힘을 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이다.

부모와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공부 또는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나에게 내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신다',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때가 많다', '부모님은 나의 성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3문항을 포함하였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2문항을 포함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1이다.

학교에 대한 유대감은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체로 유능하다', '갈수만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인 것이 좋다', '이 학교에서는 공부하는데 흥미나 재미를 느낀다', '우리 학교의 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 '학생들에 따라 처벌이 공정하지 못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이 학교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다'의 9문항을 측정하려하였으나, 요인분석결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라는 문항과, '학생들에 따라 처벌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문항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요인 포함되었고, '이 학교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다' 문항은 요인적재값이 너무 낮아 척도에서 제외하고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다.

이상에서 학교와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여러 문항으로 측정한 복합척도에 대해서는 기대한 대로 분류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와 관련하여 5개의 변인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5개의 요인을 추출하

도록 지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2>에 제시되었다.

<표 III-2> 학교 관련 독립변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인 것이 좋다.	.782	.215	.181	.091	-.007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734	.135	.149	.210	-.070
이 학교에서는 공부하는데 흥미나 재미를 느낀다.	.676	.111	.254	.120	.059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체로 유능하다.	.612	.006	.184	.406	-.060
우리 학교의 규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	.561	.012	-.011	.342	.083
갈수만 있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541	.085	.303	.001	.090
이 학교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다	.268	-.115	.111	.065	.234
우리 학교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다.	.054	.864	.018	.045	-.001
우리 학교에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081	.837	.001	.054	-.041
우리 학교에는 나에게 힘을 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다.	.048	.814	.106	.064	-.061
학교에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다.	.025	.737	.116	-.006	.030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	.053	.665	.185	.076	-.003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것들은 별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187	.093	.831	.135	-.044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	.217	.110	.786	.014	.077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252	.194	.771	.108	.039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공부하기가 싫다.	.045	.025	.646	.138	.274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08	.107	.595	.235	-.026
우리 담임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신다.	.138	.043	.114	.801	-.042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신다.	.138	.054	.047	.770	.047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053	.043	.288	.615	.064
우리 학교에는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	.236	.166	.076	.604	.025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	.473	-.111	.038	.504	.122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469	-.068	.058	.496	.089
우리 학교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다.	.164	.348	.100	.385	.052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때가 많다.	-.023	.003	.083	.009	.793
부모님은 나에게 내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신다.	.004	.085	.134	.017	.744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010	-.025	.111	-.023	.709
지금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006	-.093	-.079	.000	.567
부모님은 나의 성적에 대체로 만족하고 계신다.	.153	.039	-.017	.133	.494
Eigenvalue	6.772	3.120	2.457	1.928	1.360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

련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신다’와 ‘학생들에 따라 처벌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두 문항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결합되었고, ‘이 학교의 규칙은 너무 엄격하다’라는 문항은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아 제외하고 6문항으로 복합척도를 구성하여 ‘학교에 대한 유대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 3 5는 예측한 바와 같이 척도가 구성되었고, 요인 2는 학교 친구와의 친밀도, 요인 3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요인 5는 부모와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요인 1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문항들과 함께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으로 명명되었다.

다) 개인 관련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지적되어 온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두 가지 변인을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써, 일반적으로 자기자신에 대하여 신뢰감이나 긍지가 낮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영신, 200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개의 문항 중에서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비교적 변별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4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가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각 문항별로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한 4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다.

자기통제력은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나는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

도 여러 위험이 따른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5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한 4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3이다.

(3) 가정·환경관련 연계교육 및 학생들의 요구 관련 문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감소에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어왔는데, 가정과 학교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가정의 교육력을 지원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각급 학교를 장으로 하는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Botvin & Tortu, 1988; Comer, 1987; Elias, Gara, Schuyler, Branden-Muller, & Sayette, 1991; Weissberg, Jackson, & 및 Schriver, 1993).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하루일과를 보내는 생활의 장이며, 학부모에 대한 접근도 그 어느 장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예방적 노력의 효과가 잘 유지되며, 일반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Elias & Tobias, 1996; 박현산·이상균,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 전문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및 자녀 양육방법이나 대화방법,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 부부갈등해결 방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감소효과 및 학업성적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해결책들의 실제 구현상황 및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먼저 가정 관련 문항은 부모와의 대화의 정도, 부모와의 대화부족의 이유,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자녀를 올바르게 키우

는 양육방법,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 효과적인 부부갈등해결 방법, 분노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의 실시여부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 부모가 받았으면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조사를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나 스트레스, 학교상담실의 이용활성화 방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태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학생과 부모님의 참여와 관련된 평가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2.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문제행동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한 ‘범죄분석’을, 청소년 범죄이외의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청소년통계’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통계는 형사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범죄자료를 포함한 청소년 통계관련 각종 자료를 집계한 자료이다. 먼저 청소년문제행동 중 형사사법절차를 밟은 범죄행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형사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범죄통계자료는 형사사법절차를 거친 범법행위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으로 특정한 조건의 범죄가 배제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의 청소년범죄의 전반적인 발생 실태, 범죄 죄명별, 청소년 연령별, 교육정도별 및 범행동기별 범죄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동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및 가출행동 등 청소년

문제행동 중 지위비행에 대한 실태 및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문제행동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문제행동이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이다.

각종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특히 학교청소년에 대한 징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급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집계된 자료이므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와 자체 징계만을 내려 공식적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한계는 있으나, 본 연구가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를 통해 2003년에서 2005년의 3년동안의 흡연, 음주, 유해업소 출입/유해매체이용, 가출, 절도, 성폭행, 약물오남용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현황을 파악하였다.

IV.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 및 특징

1. 청소년 범죄의 현황
2.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의 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IV.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 및 특징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이용하였고,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청소년통계’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정감사보고자료를 참고하였다.

1. 청소년 범죄의 현황

본 연구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중 범죄는 소년범죄자에 의해 행해진 범죄를 뜻한다. 소년범죄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범죄 중에서 소년범의 수와 전체범죄에 대한 소년범의 구성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2004년까지의 소년범의 발생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전체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2000~2004)

구 분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범죄(명)	1,982,791	2,051,677	2,012,208	1,962,249	1,981,787
전체소년범(명) (구성비%)	143,643 (7.2)	130,983 (6.4)	115,423 (5.7)	96,085 (4.9)	72,770 (3.7)
형법범(명)	42,872	36,381	75,982	67,135	51,298
특별법범(명)	100,771	94,602	39,441	28,950	21,472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해당연도, 전체범죄와 소년범죄 중 연령미상인 경우는 제외
소년범죄: 12세 이상 19세 이하

<표 IV-1>에 제시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년범죄는 2000년에

전체 범죄의 7.2%를 차지했으나, 2001년 6.4%, 2002년, 5.6%, 2003년 4.9%, 그리고 2004년 3.7%를 차지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인구 10,000명당 소년범죄자를 분석해도 감소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IV-2> 소년범죄의 범죄자율(2000~2004)

구 분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범죄(명)	1,982,791	2,051,677	2,012,208	1,962,249	1,981,787
전체소년범(명)	143,643	130,983	115,423	96,085	72,770
(구성비%)	(7.2)	(6.4)	(5.7)	(4.9)	(3.7)
청소년인구수	5,711,908	5,195,160	5,260,552	5,143,358	5,112,591
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251	252	219	186	142

† 청소년 인구수: 12~19세의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임.

2000년 인구 10,000명당 소년범죄자수가 251명이었으나, 2002년 219명, 2003년 186명, 그리고 2004년 142명으로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2000년 이후에 전체 소년범죄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년범죄자를 주요죄명별로 분석하였다. <표 IV-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년범의 전체 범죄자에 대한 비율은 형법범이 2000년 7.1%, 2001년 6.1%, 2002년 7.6%, 2003년 6.5%, 2004년 5.4%로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주요 죄명별로 보면, 2003년에는 절도 37.4%, 강도 25.8%, 공갈 14.8%,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절도 33.7%, 강도 21.6%, 공갈 16.8%의 순으로 전체 범죄자에 대한 소년범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주요 죄명별 소년범죄자 현황(2000~2004)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죄명별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년범 소년범	소년 범죄 비율	소년	소년 범죄 비율	소년범	소년 범죄 비율	소년범	소년 범죄 비율	소년범	소년 범죄 비율	
형법범	42,872	7.1	36,381	6.1	75,982	7.6	67,135	6.5	51,298	5.4	
재산범	소 계	35,039	29,567		34,025		31,896		26,323		
	절 도	30,125	45.9	23,065	40.2	24,953	38.0	22,907	37.4	19,845	33.7
	장 물	520	14.8	319	12.2	298	13.5	234	10.8	171	9.9
	사 기	3,474	1.4	5,308	2.1	8,032	2.9	8,077	2.5	5,713	1.7
	횡 령	920	3.2	875	3.1	742	2.7	678	2.3	594	2.0
강력범	소 계	2,892		2,168		2,323		2,359		1,708	
	살 인	39	3.9	49	4.4	58	5.6	17	1.7	22	2.3
	강 도	2,295	37.4	1,668	32.4	1,270	27.9	1,371	25.8	871	21.6
	방 화	62	5.9	84	6.9	50	4.5	56	3.9	50	4.7
	강 간	496	8.0	367	6.4	945	10.5	915	9.3	765	8.6
폭력범	소 계	2,949		2,665		2,110		1,985		1,541	
	폭 행	846	3.9	761	3.4	655	3.3	573	2.6	435	2.1
	상 해	1,663	3.6	1,516	3.3	1,107	2.7	1,140	2.6	887	2.4
	공 갈	440	29.0	388	20.7	348	22.2	272	14.8	219	16.8
과 실 처 사 상	69	7.7	53	6.1	48	5.7	29,369	7.9	20,188	6.6	
업무상과실치사상	23	0.5	14	0.3	19	0.5	40	4.1	48	4.9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	-	-	-	35,630	9.2	17	0.4	15	0.4	
기 타	1,900	1.2	1,914	1.2	1,827	1.2	1,469	1.0	1,475	1.0	
특별범	100,771	6.1	94,602	5.5	39,441	3.0	28,950	2.3	21,472	1.6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51,593	11.1	46,365	10.2	-	-					

† 2002년도부터 특별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형법범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낸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범죄분포를 <표 IV-4>에 제시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형법범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낸, 2002년부터 살펴보면, 형법범의 비율은 14세 미만이 1.5%, 14~15세가 25.3%, 16~17세가 33.1%, 그리고 18~19세가 40.1%였고, 2003년 14세 미만이 1.3%, 14~15세가 29.3%, 16~17세가 33.4%, 그리고 18~19세가 38.1%였으며, 2004년에는 14세 미만이 1.0%, 14~15세가 27.1%, 16~17세가 32.1%,

그리고 18~19세가 39.7%로 나타나 최근 3년간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특별법범은 앞서 주요 죄명별 소년범죄자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절대적인 범죄자수는 줄어들었으나 18~19세의 비율은 2003년 52.3%에서 2004년 60.8%로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2000~2004)

연령별 구분 죄명별	소년범죄자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0	형법범	42,872	100	668	1.6	15,102	35.2	15,592	36.4	11,510	26.8
	특별법범	100,771	100	899	0.9	16,298	16.2	35,075	34.8	48,499	48.1
2001	형법범	36,381	100	367	1.8	11,813	32.5	12,234	33.6	11,697	32.2
	특별법범	94,602	100	963	1.0	14,393	15.2	31,357	33.1	47,889	50.6
2002	형법범	75,982	100	1,125	1.5	19,262	25.3	25,137	33.1	30,458	40.1
	특별법범	1,827	100	85	4.7	105	5.7	586	32.1	1,051	57.5
2003	형법범	67,135	100	891	1.3	18,265	29.2	22,409	33.4	25,570	38.1
	특별법범	28,950	100	532	1.8	3,587	12.4	9,682	33.5	15,149	52.3
2004	형법범	51,298	100	523	1.0	13,931	27.1	16,485	32.1	20,359	39.7
	특별법범	21,472	100	153	0.7	1,968	9.2	6,303	29.4	13,048	60.8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해당연도

† 2002년도부터 특별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형법범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전체 소년범죄자 중 24.5%를 차지하는데, 재학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2004년에 전체 소년범죄자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퇴자 6.4%, 졸업자 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5 참조). 고등학생은 전체소년범죄자 중 53.2%를 차지하는데, 고등학교 재학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 소년범죄자의 3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퇴자 9.7%, 졸업자 1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소년범죄자 교육정도(2000~2004)

연 도						
교육정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43,643 (100)	130,983 (100)	115,423 (100)	96,085 (100)	72,770 (100)
불취학		112 (0.1)	221 (0.2)	147 (0.1)	87 (0.1)	26 (0.0)
초등 학교	재중	270 (0.2)	284 (0.2)	293 (0.3)	157 (0.2)	116 (0.2)
	중퇴	357 (0.2)	291 (0.2)	256 (0.2)	174 (0.2)	101 (0.1)
	졸업	1,534 (1.1)	1446 (1.1)	1,106 (1.0)	760 (0.8)	392 (0.5)
중학 교	재중	16,694 (11.6)	12,789 (9.8)	12,773 (11.1)	12,016 (12.5)	9,473 (13.0)
	중퇴	14,630 (10.2)	12,642 (9.7)	9,991 (8.7)	7,396 (7.7)	4,641 (6.4)
	졸업	9,764 (6.8)	9,013 (6.9)	7,472 (6.4)	5,263 (5.5)	3,715 (5.1)
고등 학교	재중	44,382 (30.9)	38,160 (29.1)	34,168 (29.6)	30,393 (31.6)	23,027 (31.6)
	중퇴	18,660 (13.0)	17,070 (13.0)	14,706 (12.7)	10,951 (11.4)	7,076 (9.7)
	졸업	19,358 (13.5)	19,582 (15.0)	16,276 (14.1)	11,428 (11.9)	8,693 (11.9)
전문 대학	재중	4,823 (3.4)	5,485 (4.2)	4,965 (4.3)	4,137 (4.3)	2,515 (3.5)
	중퇴	567 (0.4)	894 (0.7)	740 (0.6)	504 (0.5)	273 (0.4)
	졸업	185 (0.1)	187 (0.1)	196 (0.2)	189 (0.2)	142 (0.2)
일반 대학	재중	6,264 (4.4)	6,540 (5.0)	6,343 (5.5)	6,381 (6.6)	5,695 (7.8)
	중퇴	409 (0.3)	564 (0.4)	473 (0.4)	374 (0.4)	259 (0.4)
	졸업	181 (0.1)	197 (0.2)	172 (0.1)	182 (0.2)	117 (0.2)
대학원		41 (0.0)	104 (0.1)	90 (0.1)	52 (0.1)	21 (0.0)
기타		749 (0.5)	807 (0.6)	823 (0.7)	797 (0.8)	676 (0.9)
미상		4663 (3.2)	4,707 (3.6)	4,478 (3.9)	4,844 (5.0)	5,812 (8.0)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해당연도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범행동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비율은 2000년 27.5%, 2001년 28%, 2002년 25.8%, 2003년 25.2%, 그리고 2004년 27.5%를 차지해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표 IV-6> 참조). 마찬가지로 연도에 상관없이 부주의(2004년에는 11.1%), 호기심(2004년에는 1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육 중에서는 유희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율이 연도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다(2004년에는 전체 소년범죄자의 4%).

<표 IV-6> 소년범죄자 범행동기(2000~2004)

연도	동기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43,643 (100)	130,983 (100)	115,423 (100)	96,085 (100)
이 유	소계	22,420 (15.6)	19,633 (15.0)	18,646 (16.2)	16,406 (17.0)	5,164 (7.1)
	생활비마련	1,943 (1.4)	1,975 (1.5)	1,931 (1.7)	1,852 (1.9)	1,515 (2.1)
	유흥비마련	8,193 (5.7)	6,071 (4.6)	4,946 (4.3)	4,421 (4.6)	2,928 (4.0)
	도박비마련	12 (0.0)	10 (0.0)	10 (0.0)	11 (0.0)	17 (0.0)
	허영사치심	786 (0.5)	650 (0.5)	541 (0.5)	448 (0.5)	212 (0.3)
	치부	573 (0.4)	481 (0.4)	400 (0.3)	328 (0.3)	169 (0.2)
	기타	10,913 (7.6)	10,446 (8.0)	10,818 (9.4)	9,346 (9.7)	323 (0.4)
우발적	39,501 (27.5)	36,651 (28.0)	29,724 (25.8)	24,207 (25.2)	20,047 (27.5)	
부주의	23,108 (16.1)	19,923 (15.2)	15,600 (13.5)	11,978 (12.5)	8,093 (11.1)	
호기심	8,958 (6.2)	7,151 (5.5)	8,019 (6.9)	7,680 (8.0)	7,484 (10.3)	
유혹	1,616 (1.1)	1,277 (1.0)	1,234 (1.1)	963 (1.0)	940 (1.3)	
보복	1,568 (1.1)	1,236 (0.9)	1,064 (0.9)	704 (0.7)	533 (0.7)	
현실불만	1,014 (0.7)	943 (0.7)	596 (0.5)	540 (0.6)	412 (0.6)	
사행심	815 (0.6)	599 (0.5)	558 (0.5)	439 (0.5)	679 (0.9)	
가정불화	156 (0.1)	134 (0.1)	114 (0.1)	99 (0.1)	96 (0.1)	
기타	41,698 (29.0)	40,909 (31.2)	37,183 (32.2)	31,017 (32.3)	24,224 (33.3)	
미상	2,790 (2.0)	2,527 (1.9)	2,685 (2.3)	2,052 (2.1)	5,098 (7.0)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해당연도

2.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의 현황

1) 청소년 흡연 실태(중·고등학생)

먼저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에 대한 현황 중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을 살펴보았다. <표 IV-7>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을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흡연율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중학생은 남녀 모두 2005년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2000년 7.4%에서 2004년 2.4%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4.2%로 증가하였고, 여자 중학생의 경우도 2000년 3.2%에서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2.3%로 증가하였고,

2004년 1.7%로 떨어졌다가 2005년에 다시 3.3%로 증가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0년 27.6%에서 2005년 15.7%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여자 고등학생도 2004년을 제외하고 2000년 10.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6.5%로 나타났다.

<표 IV-7> 중고등학생의 흡연을 변화(년: 2000~2005) (단위: %)

연도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2000	7.4	2.7	6.3	10.6	27.6	19.9	29.8	37.9
	2001	6.0	2.2	5.5	8.5	24.8	10.1	32.6	29.6
	2002	3.5	2.0	1.4	7.8	23.6	15.8	24.2	30.2
	2003	2.8	1.6	0.7	5.6	22.1	21.4	20.0	25.2
	2004	2.4	0.5	2.9	4.4	15.9	10.8	17.3	21.5
	2005	4.2	3.8	3.5	5.7	15.7	12.6	22.1	13.2
여	2000	3.2	0.9	1.0	6.6	10.7	12.2	10.0	10.5
	2001	2.0	0.6	1.8	3.3	7.5	9.6	6.1	7.3
	2002	0.9	0.0	1.6	0.8	7.3	8.5	9.6	3.5
	2003	2.3	0.0	2.0	4.2	6.8	6.8	7.6	5.3
	2004	1.7	2.1	1.3	1.7	7.5	9.2	8.5	4.9
	2005	3.3	2.9	2.7	3.5	6.5	5.2	8.1	5.9

† 자료: 국민건강증진연구소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 2004년과 2005년 자료 재구성

2) 청소년 음주 실태

다음은 청소년의 음주실태를 살펴보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중 적어도 한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평생음주율은 63%에 이르고, 그 중 중학생은 53.6%, 일반계 고등학생은 79.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한 평생음주율은 전체 47.1%, 중학생 28.5%, 일반계 고등학생은 70.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중학생은 거의 1/3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고등학생은 2/3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한 연간음주율도 중학생의 25.1%, 일반계 고등학생 61.9%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1%에 이르러 고등학생은 거의 2/3정도가 매년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청소년 음주율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평생음주율1	33.8	53.6	79.6	84	63
평생음주율2	15.2	28.5	70.6	74.9	47.1
연간음주율3	8.6	25.1	61.9	71	41.6
월간음주율	4.6	14.7	38.4	57.4	28.6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 및 분석 연구」

평생음주율1) 한번이라도 술을 마신 경험을 모두 포함한 평생음주율

평생음주율2)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마시는 경우, 어쩌다 한 모금 마신 경우 등을 제외한 평생음주율

연간음주율3)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마시는 경우, 어쩌다 한 모금 마신 경우 등을 제외한 연간음주율

또한 2005년의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로 술을 마신 때가 중학생의 경우는 집안행사시 29.4%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24.8%, 부모님 친구들과 모임 15%의 순이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29.5%, 생일 18.4%, 수학여행이나 소풍갔을 때 16%의 순이었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34.3%, 생일 20.6%, 수학여행이나 소풍갔을 때 10.8%의 순이었다.

3) 청소년 가출 실태

다음은 가출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V-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찰

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세에서 20세미만의 가출 청소년은 18,442명에서 2003년 13,374명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 16,8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3,294명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가출 청소년은 전체 가출자 46,149명의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6,195명(46.6%), 여자 7,099명(53.4%)으로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 인구수, 예를 들어 2004년 통계청의 추계인구자료에 의하면 남자청소년(12~19세)의 인구는 2,414,434명, 여자청소년의 인구는 2,696,157명을 고려해 볼 때 비율면에서 여자청소년의 가출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가출 청소년 현황 (2000~2005)

단위 : 명(%)

연도 청소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남자	여자
전 체	59,099	61,319	60,499	60,628	63,142	46,149	21,070	25,079
9세 ~ 20세 미만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100.0)	6,195 (46.6)	7,099 (53.4)

† 자료 : 경찰청 (통계청의 청소년통계 참조)

4)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범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2000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구속 또는 검거되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표 IV-6>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학교폭력사범⁷⁾으로 검거한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불량서클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2005년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05년에 경찰청에서 파악하여 해체한 불량서클의 수는 752개, 학교에서 파악하여 해체한 불량서클

7) 학교폭력사범은 다른 문제행동과는 달리 형사사법기관의 사법절차를 거쳤으나, 범죄 분석에 '학교폭력'만의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루었다.

의 수는 87개 달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2006년 3월 13일에서 5월 31일까지 운영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파악하여 해체한 불량서클의 수는 190개에 이른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표 IV-10> 연도별 학교폭력사범 및 불량서클 현황 (2000~2004)

구 분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검거 학생	33,833	27,446	23,921	12,559	9,923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검거·구속 학생	31,691	28,653	28,289	11,440	7,880
학교의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	11,562	11,310	7,318	7,769	7,488
경찰청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29	34	79	21	22
학교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73	39	63	72	50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5)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인한 징계현황

다음은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학교에서 징계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범죄행동 이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먼저 <표 IV-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절도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중 2003년 남학생 2,323명, 여학생 804명, 2004년 남학생 2,563명, 여학생 1,059명, 2005년 남학생 2,841명, 여학생 832명으로 남학생은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징계받은 학생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은 2004년 488명에서 2005년 5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자 중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으로 징계받은 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 106명에서 2004년 134명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 9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로 징계받은 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 1,224명, 2004년 884

명, 2005년 656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학생 역시 2003년 1,181명, 2004년 1,121명, 2005년 946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가출실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여학생의 가출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소년 각종 문제행동 징계현황(2003~2005)

연도	구분 학교 급	절도		성폭 행		가출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유해업 소/매체 물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중	1262	478	46	2	460	620	6	2	365	526	2737	1651	63	99
일반	499		131	27	2	319	595	3	0	645	279	9120	1688	32	12	1261	784
실업	562		195	33	0	445	599	10	2	500	370	9820	4513	29	66	1907	964
계	2323		804	106	4	1224	1814	19	4	1510	1175	21677	7870	124	177	4609	3343
2004	중	1400	764	47	2	349	451	6	1	349	503	2910	1730	123	88	2460	2090
	일반	675	150	43	3	251	261	33	1	551	304	8909	2499	116	48	1125	760
	실업	488	145	44	0	284	409	2	6	545	387	4916	2414	41	55	2619	1578
	계	2563	1059	134	5	884	1121	41	8	1445	1194	16726	6643	280	191	6204	4428
2005	중학	1647	489	33	0	318	372	5	7	348	417	2441	1293	83	65	2048	1529
	일반	620	183	31	0	117	120	1	3	348	163	6559	1110	62	44	1631	609
	실업	574	160	33	0	221	454	2	3	485	297	5679	2464	56	114	2047	1055
	계	2841	832	97	0	656	946	8	13	1181	877	14679	4867	201	223	5726	319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국정감사보고자료

음주로 인해 징계받은 중·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 1,510명, 2004년 1,445명, 2005년 1,181명으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학생은 2003년 1,175명, 2004년 1,194명, 2005년 877명으로 2003년과 2004년에는 차이가 없다가 2005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음주에 의한 징계율이 높은 편이다.

흡연에 의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3년 21,677명, 2004년 16,726명, 2005년 14,679명으로 이 역시 감소 추세에 있고, 여학생 역시 2003년 7,870명, 2004년 6,643명, 2005년 4,867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흡연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많으므로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표 IV-12> 학교폭력 징계현황

	구분	가해 학생수	학생선도위원회 조치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2003	중학교	4,591	3,064	1,077	424	26
	일반계	1,484	1,010	340	114	20
	실업계	1,694	1,093	390	167	55
2004 ^a	계	6,374	4,258	1,434	626	56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징계(학교폭력법 제정 이전)

	구분	가해 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조치별								
			서면 사과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004 ^b	계	1,114	183	140	11	60	358	194	66	90	12

	구분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조치별				
			퇴학	출석정지	전학	봉사활동	기타
2005	중	4,092	0	289	255	2,905	600
	고	2,409	91	93	152	1,718	436
	총계	6,301	91	382	407	4,623	1,03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계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매체물 소지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3년 124명, 2004년 280명, 2005년 201명으로 2003년 비해 2004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2003년 177명, 2004년 191명, 2005년 223명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이 2003년에는 중학생 4,591명, 일반계 고등학생 1,484명, 실업계 고등학생 1,694명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표 IV-12참조).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6,374명이 징계를 받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1,114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5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 6,301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수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2004년까지의 소년범의 발생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년범죄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구 10,000명당 소년범죄자를 분석해도 감소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년범의 전체 범죄자에 대한 비율 중 형법범 역시 200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죄명별 소년범죄비율은, 2003년에는 절도 37.4%, 강도 25.8%, 공갈 14.8%,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절도 33.7%, 강도 21.6%, 공갈 16.8%의 순으로 전체 범죄자에 대한 소년범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는 2004년에 중학생이 전체 소년범죄자 중 24.5%를 차지하는데, 재학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 소년범죄자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퇴자 6.4%, 졸업자 5.1%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전체소년범죄자 중 53.2%를 차지하는데, 고등학교 재학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전체 소년범죄자의 3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퇴자 9.7%, 졸업자 1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범행동기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비율은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연도에 상관없이 부주의(2004년에는 11.1%), 호기심(2004년에는 1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욕 중에서는 유희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율이 연도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다(2004년에는 전체 소년범죄자의 4%).

청소년 범죄이외의 문제행동의 현황을 요약해 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중학생은 남녀 모두

2005년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여자 고등학생도 2004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흡연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있으므로, 중학생의 흡연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한 평생음주율은 전체 47.1%, 중학생 28.5%, 일반계 고등학생은 70.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사 후 마시는 음복, 성찬식 등의 종교행사 때 마시는 경우나 어찌다 한 모금 마신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중학생은 거의 1/3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으며, 고등학생은 2/3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음주실태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30.3%, 고등학생의 50%는 음주에 대해 부모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심지어 교사와 술자리를 같이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음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부모 및 교사의 음주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세에서 20세미만의 가출 청소년은 2003년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에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가출 청소년은 전체 가출자의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범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2000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구속 또는 검거되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학교폭력사범으로 검거한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학생 불량서클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검찰청의 학교폭력사범검거 학생과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검거 구속 학생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감소하였다.

절도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징계받은 학생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학생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으로 징계받은 학생 중 남학생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로 징계받은 학생 중 남학생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학생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가출실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여학생의 가출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징계받은 중·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여학생은 2003년과 2004년에는 차이가 없다가 2005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음주에 의한 징계율이 높은 편이다.

흡연에 의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흡연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흡연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많으므로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매체물 소지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03년 비해 2004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학생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매체물 소지의 증가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이 2003년에는 중학생 4,591명, 일반계 고등학생 1,484명, 실업계 고등학생 1,694명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표 IV-12 참조).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기 이전에는 6,374명이 징계를 받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1,114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5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 6,301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의 수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또다시 보복의 위험이 있기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범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청소년 문제행동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자들의 문제행동 실태
3. 가정 관련변인과 문제행동
4. 학교 관련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5. 개인 관련 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6. 요약 및 시사점

V.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V-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32명(47.4%), 일반계 고등학생이 462명(41.2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128명(11.4%)이 표집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72명(50.9%), 여학생이 551명(49.1%)였고, 이를 학교급에 따른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중학생이 236명(전체의 21.4%), 여중학생 296명(전체의 26.1%), 일반계 남고생 246명(전체의 21.8%), 일반계 여고생 216명(전체의 19.2%), 실업계 남고생 89명(전체의 8.2%), 마지막으로 실업계 여고생이 39명(전체의 3.3%)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정 형편에 따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662명, 59.5%), 그 다음으로 '어려운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210명, 18.9%)였으며, '잘 사는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15.1%)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먼저 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는 825명(75.2%)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63명(14.9%)은 친부모의 어느 쪽 하고도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부친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415명(51.4%)이었고, 고졸이 387명(35.5%)이었으며, 중졸이하는 65명(6.1%)이었다. 모친이 대졸이상인 경우는 428명(39.1%)이었으며, 고졸은 497명(45.3%), 중졸이하는 88명(8.1%)이었다.

주택소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소유인 경우가 533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세로 341명(31.2%)이었으며, 무상인 경우는 14명(1.4%)이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한달 용돈을 살펴보면, 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650명 (5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사이가 204명 (18.2%)이었으며,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56명(4.9%)이었다.

<표 V-1> 조사대상자의 특징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	실업계	
성별	남	236	246	89	571(50.9)
	여	296	216	39	551(49.1)
주관적 가정 형편	매우 어려움	15	15	11	41(3.7)
	어려움	72	82	56	210(18.9)
	보통	320	292	50	662(59.5)
	잘 삶	101	59	8	168(15.1)
부모동거 여부	매우 잘 삶	21	9	2	32(2.9)
	부모동거	394	354	77	825(75.2)
	편부/편모	33	40	36	109(9.9)
	부모비동거	85	64	14	163(14.9)
부학력	초졸	9	6	8	23(2.1)
	중졸	13	17	12	42(3.8)
	고졸	159	168	60	387(35.4)
	대졸	192	203	20	415(37.9)
	대학원졸	94	47	7	148(13.5)
	모름	54	16	9	79(7.2)
모학력	초졸	9	8	9	26(2.4)
	중졸	18	31	13	62(5.7)
	고졸	196	229	72	497(45.3)
	대졸	185	148	12	345(31.5)
	대학원졸	59	22	2	83(7.6)
	모름	53	18	12	83(7.6)
주택소유 여부	자가	224	276	33	533(48.9)
	전세	175	127	39	341(31.3)
	월세	66	39	37	139(12.8)
	무상	7	4	3	14(1.3)
	기타	45	10	7	62(5.7)
1달 용돈	쓰지 않음	84	42	14	140(12.6)
	1~5만원	349	241	60	650(58.3)
	5~10만원	65	113	28	204(18.3)
	10~20만원	13	38	14	65(5.8)
	20~30만원	2	16	5	23(2.1)
	30만원이상	16	11	6	33(3.0)
전체		532	462	128	1122

2. 조사대상자들의 문제행동 실태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행동 실태를 학교별 및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지위비행의 실태와 특성

지위비행의 세부 비행에 대한 학교급 및 성별 실태에 대해 <표 V-2> 에 제시하였다.

<표 V-2> 학교급 및 성별 지위비행

	학교 급	성별	없다	있다					계	
				소계	6개월에 1~2	1달에 1~2	1주일에 1~2	1주일에 3~4		
흡연	중학 교	남	208 (88.1)	28 (11.9)	10 (4.2)	4 (1.7)	1 (0.4)	13 (5.5)	236	
		여	276 (93.6)	19 (6.4)	8 (2.7)	5 (1.7)	3 (1.0)	3 (1.0)	295	
		전체	484 (91.1)	47 (8.9)	18 (3.4)	9 (1.7)	4 (0.8)	16 (3.0)	531	
	일반 고	남	194 (78.9)	52 (21.1)	14 (5.7)	10 (4.1)	5 (2.0)	23 (9.3)	246	
		여	190 (88.8)	24 (11.2)	10 (4.7)	4 (1.9)	2 (0.9)	8 (3.7)	214	
		전체	384 (83.5)	76 (16.5)	24 (5.2)	14 (3.0)	7 (1.5)	31 (6.7)	460	
	실업 고	남	66 (74.2)	23 (25.8)	8 (9.0)	1 (1.1)	1 (1.1)	13 (14.6)	89	
		여	30 (76.9)	9 (23.1)	1 (2.6)	0 (0.0)	0 (0.0)	8 (20.5)	39	
		전체	96 (75.0)	32 (25.0)	9 (7.0)	1 (0.8)	1 (0.8)	21 (16.4)	128	
	전체		964 83.2	155 16.8	51 5.2	24 1.8	12 1.0	68 8.7	1119	
	음주	중학 교	남	151 (64.0)	85 (36.0)	54 (22.9)	18 (7.6)	5 (2.1)	8 (3.4)	236
			여	210 (70.9)	86 (29.1)	59 (19.9)	23 (7.8)	2 (0.7)	2 (0.7)	296
전체			361 (67.9)	171 (32.1)	113 (21.2)	41 (7.7)	7 (1.3)	10 (1.9)	532	
일반 고		남	97 (39.4)	149 (60.6)	84 (34.1)	46 (18.7)	11 (4.5)	8 (3.3)	246	
		여	95 (44.0)	121 (56.0)	80 (37.0)	35 (16.2)	4 (1.9)	2 (0.9)	216	
		전체	192 (41.6)	270 (58.4)	164 (35.5)	81 (17.5)	15 (3.2)	10 (2.2)	462	
실업 고		남	41 (46.6)	47 (53.4)	27 (30.7)	15 (17.0)	2 (2.3)	3 (3.4)	88	
		여	15 (38.5)	24 (61.5)	12 (30.8)	6 (15.4)	3 (7.7)	3 (7.7)	39	
		전체	56 (44.1)	71 (55.9)	39 (30.7)	21 (16.5)	5 (3.9)	6 (4.7)	127	
전체			609 51.2	512 48.8	316 29.1	143 13.9	27 3.0	26 2.9	1121	

유형	학교급	성별	없다	있다					계
				소계	6개월에 1~2	1달에 1~2	1주일에 1~2	1주일에 3~4	
술집 출입	중학 교	남	210 (89.4)	25 (10.6)	13 (5.5)	9 (3.8)	1 (0.4)	2 (0.9)	235
		여	283 (95.9)	12 (4.1)	7 (2.4)	3 (1.0)	1 (0.3)	1 (0.3)	295
		전체	493 (93.0)	37 (7.0)	20 (3.8)	12 (2.3)	2 (0.4)	3 (0.6)	530
	일반 고	남	178 (73.0)	66 (27.0)	29 (11.9)	22 (9.0)	9 (3.7)	6 (2.5)	244
		여	158 (73.1)	58 (26.9)	38 (17.6)	17 (7.9)	2 (0.9)	1 (0.5)	216
		전체	336 (73.0)	124 (27.0)	67 (14.6)	39 (8.5)	11 (2.4)	7 (1.5)	460
	실업 고	남	64 (71.9)	25 (28.1)	12 (13.5)	8 (9.0)	4 (4.5)	1 (1.1)	89
		여	26 (66.7)	13 (33.3)	4 (10.3)	4 (10.3)	3 (7.7)	2 (5.1)	39
		전체	90 (70.3)	38 (29.7)	16 (12.5)	12 (9.4)	7 (5.5)	3 (2.3)	128
전체	919 (78.8)	199 (21.2)	103 (10.3)	63 (6.7)	20 (2.8)	13 (1.5)	1118		
کنینگ	중학 교	남	185 (78.4)	51 (21.6)	28 (11.9)	11 (4.7)	5 (2.1)	7 (3.0)	236
		여	245 (83.3)	49 (16.7)	39 (13.3)	8 (2.7)	0 (0.0)	2 (0.7)	294
		전체	430 (81.1)	100 (18.9)	67 (12.6)	19 (3.6)	5 (0.9)	9 (1.7)	530
	일반 고	남	185 (75.2)	61 (24.8)	43 (17.5)	11 (4.5)	4 (1.6)	3 (1.2)	246
		여	169 (78.2)	47 (21.8)	36 (16.7)	6 (2.8)	3 (1.4)	2 (0.9)	216
		전체	354 (76.6)	108 (23.4)	79 (17.1)	17 (3.7)	7 (1.5)	5 (1.1)	462
	실업 고	남	54 (60.7)	35 (39.3)	22 (24.7)	5 (5.6)	4 (4.3)	4 (4.5)	89
		여	27 (69.2)	12 (30.8)	8 (20.5)	2 (5.1)	1 (2.6)	1 (2.6)	39
		전체	81 (63.3)	47 (36.7)	30 (23.4)	7 (5.5)	5 (3.9)	5 (3.9)	128
전체	865 (73.7)	255 (26.3)	176 (17.7)	43 (4.3)	17 (2.1)	19 (2.2)	1120		
무단 결석	중학 교	남	212 (89.8)	24 (10.2)	9 (3.8)	8 (3.4)	1 (0.4)	6 (2.5)	236
		여	281 (95.3)	14 (4.7)	9 (3.1)	4 (1.4)	0 (0.0)	1 (0.3)	295
		전체	493 (92.8)	38 (7.2)	18 (3.4)	12 (2.3)	1 (0.2)	7 (1.3)	531
	일반 고	남	208 (84.6)	38 (15.4)	19 (7.7)	10 (4.1)	7 (2.8)	2 (0.8)	246
		여	197 (92.1)	17 (7.9)	11 (5.1)	4 (1.9)	0 (0.0)	2 (0.9)	214
		전체	405 (88.0)	55 (12.0)	30 (6.5)	14 (3.0)	7 (1.5)	4 (0.9)	460
	실업 고	남	74 (84.1)	14 (15.9)	6 (6.8)	2 (2.3)	3 (3.4)	3 (3.4)	88
		여	28 (71.8)	11 (28.2)	7 (17.9)	1 (2.6)	0 (0.0)	3 (7.7)	39
		전체	101 (80.3)	25 (19.7)	13 (10.2)	3 (2.4)	3 (2.4)	6 (4.7)	126
전체	999 (87.0)	119 (13.0)	61 (6.7)	29 (2.6)	11 (1.4)	17 (2.3)	1118		
가출	중학 교	남	207 (87.7)	29 (12.3)	15 (6.4)	8 (3.4)	1 (0.4)	5 (2.1)	236
		여	280 (94.9)	15 (5.1)	12 (4.1)	1 (0.3)	1 (0.3)	1 (0.3)	295
		전체	487 (91.7)	44 (8.3)	27 (5.1)	9 (1.7)	2 (0.4)	6 (1.1)	531
	일반 고	남	210 (85.4)	36 (14.6)	23 (9.3)	7 (2.8)	2 (0.8)	4 (1.6)	246
		여	201 (93.5)	14 (6.5)	4 (1.9)	4 (1.9)	4 (1.9)	2 (0.9)	215
		전체	411 (89.2)	50 (10.8)	27 (5.9)	11 (2.4)	6 (1.3)	6 (1.3)	461
	실업 고	남	79 (89.8)	9 (10.2)	6 (6.8)	2 (2.3)	1 (1.1)	0 (0.0)	88
		여	33 (84.6)	6 (15.4)	5 (12.8)	0 (0.0)	0 (0.0)	1 (2.6)	39
		전체	112 (88.2)	15 (11.8)	11 (8.7)	2 (1.6)	1 (0.8)	1 (0.8)	127
전체	999 (89.7)	120 (10.3)	65 (6.6)	22 (1.9)	9 (0.8)	13 (1.1)	1119		

먼저 흡연경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94명 중 83.2%는 지난 1년동안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1.1%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88.8%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6%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흡연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와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학교급에 따른 흡연 경험여부를 빈도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2)=58.52, p<.001$), 성별에 따른 흡연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17.13, p<.001$). 특히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의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각각 $\chi^2(1)=4.78, p<.05, \chi^2(1)=8.17, p<.01$)

음주경험의 실태는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1명 중 51.2%는 지난 1년동안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67.9%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41.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44.1%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경험과는 달리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음주 경험이 많지만 어쨌든 중학생의 31.7% 심지어 여중학생도 28.3%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일반계와 실업계 모두 반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음주경험이 없는 경우와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학교급에 따른 흡연 경험여부를 빈도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1)=74.97, p<.001$),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6.14, p<.05$).

술집출입경험의 실태는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18명 중 78.8%는 지난 1년동안 술집출입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3.0%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73.0%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0.3%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음주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음주경험이 없는 경우와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학교급에 따른 흡연 경험여부를 빈도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8) = 82.12, p < .001$). 음주경험에 비해 술집출입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술집에서 음주를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술을 구입하여 음주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술집출입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5.43, p < .05$). 특히 중학생의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8.70, p < .05$)

컨닝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0명 중 73.7%는 지난 1년동안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1.1%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76.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63.3%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컨닝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컨닝경험이 없는 경우와 컨닝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따른 컨닝 경험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2) = 18.85, p < .001$), 성별에 따른 컨닝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5.87, p < .05$).

무단결석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18명 중 80.3%는 지난 1년 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2.8%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88.0%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71.8%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무단결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경우와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따른 무단결석 경험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2) = 18.67, p < .001$), 성별에 따른 무단결석 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9.51, p < .01$). 특히,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의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각각 $\chi^2(1) = 5.81, p < .05, \chi^2(1) = 6.12, p < .05$).

마지막으로 가출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19명 중 89.7%는 지난 1년동안 가출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1.7%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89.2%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8.82%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출 경험이 없는 경우와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따른 가출경험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2) = 2.54, ns$). 남학생의 87%, 여학생의 93.6%가 가출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성별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13.89, p < .001$).

2) 폭력비행의 실태와 특성

<표 V-3> 학교급 및 성별 폭력비행

유형	학교급	성별	없다	있다					계	
				소계	6개월에 1~2	1달에 1~2	1주일에 1~2	1주일에 3~4		
폭행	중학교	남	188 (79.7)	48 (20.3)	32 (13.6)	7 (3.0)	4 (1.7)	5 (2.1)	236	
		여	276 (93.2)	20 (6.8)	14 (4.7)	2 (0.7)	2 (0.7)	2 (0.7)	296	
		전체	464 (87.2)	68 (12.8)	46 (8.6)	9 (1.7)	6 (1.1)	7 (1.3)	532	
	일반고	남	197 (80.1)	49 (19.9)	31 (12.6)	8 (3.3)	5 (2.0)	5 (2.0)	246	
		여	202 (94.0)	13 (6.0)	5 (2.3)	4 (1.9)	3 (1.4)	1 (0.5)	215	
		전체	399 (86.6)	62 (13.4)	36 (7.8)	12 (2.6)	8 (1.7)	6 (1.3)	461	
	실업고	남	68 (76.4)	21 (23.6)	14 (15.7)	4 (4.5)	1 (1.1)	2 (2.2)	89	
		여	33 (84.6)	6 (15.4)	5 (12.8)	0 (0.0)	0 (0.0)	1 (2.6)	39	
		전체	101 (78.9)	27 (21.1)	19 (14.8)	4 (3.1)	1 (0.8)	3 (2.3)	128	
	전체		964 (84.2)	157 (15.8)	101 (10.4)	25 (2.5)	15 (1.2)	16 (1.6)	1121	
	집단 패싸움	중학교	남	215 (91.1)	21 (8.9)	10 (4.2)	5 (2.1)	2 (0.8)	4 (1.7)	236
			여	280 (94.6)	16 (5.4)	9 (3.0)	4 (1.4)	1 (0.3)	2 (0.7)	296
전체			495 (93.0)	37 (7.0)	19 (3.6)	9 (1.7)	3 (0.6)	6 (1.1)	532	
일반고		남	218 (89.0)	27 (11.0)	11 (4.5)	10 (4.1)	1 (0.4)	5 (2.0)	245	
		여	204 (94.4)	12 (5.6)	7 (3.2)	3 (1.4)	0 (0.0)	2 (0.9)	216	
		전체	422 (91.5)	39 (8.5)	18 (3.9)	13 (2.8)	1 (0.2)	7 (1.5)	461	
실업고		남	75 (84.3)	14 (15.7)	7 (7.9)	2 (2.2)	3 (3.4)	2 (2.2)	89	
		여	35 (89.7)	4 (10.3)	3 (7.7)	0 (0.0)	0 (0.0)	1 (2.6)	39	
		전체	110 (85.9)	18 (14.1)	10 (7.8)	2 (1.6)	3 (2.3)	3 (2.3)	128	
전체			1027 (90.1)	94 (9.9)	47 (5.1)	24 (2.0)	7 (1.0)	16 (1.6)	1121	

유형	학교 급	성별	없다	있다					계	
				소계	6개월에 1~2	1달에 1~2	1주일에 1~2	1주일에 3~4		
금품 강탈	중학 교	남	216 (91.5)	20 (8.5)	6 (2.5)	6 (2.5)	3 (1.3)	5 (2.1)	236	
		여	291 (98.6)	4 (1.4)	3 (1.0)	0 (0.0)	0 (0.0)	1 (0.3)	295	
		전체	507 (95.5)	24 (4.5)	9 (1.7)	6 (1.1)	3 (0.6)	6 (1.1)	531	
	일반 고	남	225 (91.5)	21 (8.5)	7 (2.8)	9 (3.7)	1 (0.4)	4 (1.6)	246	
		여	204 (94.9)	11 (5.1)	5 (2.3)	3 (1.4)	1 (0.5)	2 (0.9)	215	
		전체	429 (93.1)	32 (6.9)	12 (2.6)	12 (2.6)	2 (0.4)	6 (1.3)	461	
	실업 고	남	84 (94.4)	5 (5.6)	2 (2.2)	2 (2.2)	0	1 (1.1)	89	
		여	36 (92.3)	3 (7.7)	2 (5.1)	0 (0.0)	0	1 (2.6)	39	
		전체	120 (93.8)	8 (6.2)	4 (3.1)	2 (1.6)	0	2 (1.6)	128	
	전체		1056 (94.1)	64 (5.9)	25 (2.5)	20 (1.8)	5 (0.5)	14 (1.3)	1120	
	집단 괴롭 힘/따 돌림	중학 교	남	201 (85.5)	34 (14.5)	16 (6.8)	10 (4.3)	4 (1.7)	4 (1.7)	235
			여	278 (93.9)	18 (6.1)	13 (4.4)	3 (1.0)	1 (0.3)	1 (0.3)	296
전체			479 (90.2)	52 (9.8)	29 (5.5)	13 (2.4)	5 (0.9)	5 (0.9)	531	
일반 고		남	220 (89.8)	25 (10.2)	11 (4.5)	8 (3.3)	3 (1.2)	3 (1.2)	245	
		여	197 (91.2)	19 (8.8)	13 (6.0)	3 (1.4)	1 (0.5)	2 (0.9)	216	
		전체	417 (90.5)	44 (9.5)	24 (5.2)	11 (2.4)	4 (0.9)	5 (1.1)	461	
실업 고		남	81 (91.0)	8 (9.0)	4 (4.5)	2 (2.2)	1 (1.1)	1 (1.1)	89	
		여	37 (94.9)	2 (5.1)	1 (2.6)	0 (0.0)	0 (0.0)	1 (2.6)	39	
		전체	118 (92.2)	10 (7.8)	5 (3.9)	2 (1.6)	1 (0.8)	2 (1.6)	128	
전체			1014 (91.0)	106 (9.0)	58 (4.9)	26 (2.1)	10 (0.9)	12 (1.2)	1120	
환각 성 약물 흡입/ 복용		중학 교	남	222 (94.1)	14 (5.9)	1 (0.4)	7 (3.0)	2 (0.8)	4 (1.7)	236
			여	29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96
	전체		518 (97.4)	14 (2.6)	1 (0.2)	7 (1.3)	2 (0.4)	4 (0.8)	532	
	일반 고	남	228 (92.7)	18 (7.3)	4 (1.6)	7 (2.8)	4 (1.6)	3 (1.2)	246	
		여	207 (95.8)	9 (4.2)	1 (0.5)	5 (2.3)	1 (0.5)	2 (0.9)	216	
		전체	435 (94.2)	27 (5.8)	5 (1.1)	12 (2.6)	5 (1.1)	5 (1.1)	462	
	실업 고	남	88 (96.6)	3 (3.4)	2 (2.2)	1 (1.1)	0	0 (0.0)	91	
		여	38 (97.4)	1 (2.6)	0 (0.0)	0 (0.0)	0	1 (2.6)	39	
		전체	126 (96.9)	4 (3.1)	2 (1.6)	1 (0.8)	0	1 (0.8)	130	
	전체		1079 (96.2)	45 (3.8)	8 (1.0)	20 (1.6)	7 (0.8)	10 (0.9)	1124	
	금품 강탈	중학 교	남	143 (60.6)	93 (39.4)	25 (10.6)	27 (11.4)	16 (6.6)	25 (10.6)	236
			여	230 (77.7)	66 (22.3)	36 (12.2)	21 (7.1)	6 (2.0)	3 (1.0)	296
전체			373 (70.1)	159 (29.9)	61 (11.5)	48 (9.0)	22 (4.1)	28 (5.3)	532	
일반 고		남	153 (62.2)	93 (37.8)	32 (13.0)	23 (9.3)	17 (6.9)	21 (8.5)	246	
		여	169 (78.2)	47 (21.8)	37 (17.1)	6 (2.8)	1 (0.5)	3 (1.4)	216	
		전체	322 (69.7)	140 (30.3)	69 (14.9)	29 (6.3)	18 (3.9)	24 (5.2)	462	
실업 고		남	65 (73.0)	24 (27.0)	6 (6.7)	10 (11.2)	3 (3.4)	5 (5.6)	89	
		여	28 (71.8)	11 (28.2)	8 (20.5)	1 (2.6)	0 (0.0)	2 (5.1)	39	
		전체	93 (72.7)	35 (27.3)	14 (10.9)	11 (8.6)	3 (2.3)	7 (5.5)	128	
전체			788 (70.8)	334 (29.2)	144 (12.4)	88 (8.0)	43 (3.4)	59 (5.3)	1122	

먼저 폭행의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1명 중 84.2%는 지난 1년동안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7.2%, 일반계 고등학생은 86.6%가 경험이 없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78.9%가 폭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의 폭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폭행경험이 있는 경우와 폭행경험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폭행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2) = 6.12, p < .05$). 성별에 따른 폭행 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4) = 42.86, p < .001$). 중학생($\chi^2(1) = 21.73, p < .001$)과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18.97, p < .001$).

폭력비행 중 집단패싸움의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1명 중 90.1%는 지난 1년동안 집단패싸움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3.0%, 일반계 고등학생은 91.5%가 경험이 없는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은 85.9%가 폭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의 집단패싸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별 폭력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 = 6.79, p < .05$). 남학생의 88.9%, 여학생 94.2%가 집단패싸움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집단패싸움 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9.37, p < .01$).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4.43, p < .05$).

금품 강탈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0명 중 94.1%는 지난 1년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5.5%, 일반계 고등학생은 93.1%, 실업계 고등학생은 93.8%가 금품 강탈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품 강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금품강탈 경험이 있는 경우와 금품강탈경험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금품강탈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91.9%, 여학생의 96.7%가 금품강탈의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성별에 따른 금품강탈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chi^2(1) = 11.86, p < .001$).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0명 중 91.0%는 지난 1년동안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0.2%, 일반계 고등학생은 90.5%, 실업계 고등학생은 92.2%가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는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88.1%, 여학생의 92.9%가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의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성별에 따른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7.21, p < .01$).

환각성 약물 흡입 또는 복용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32명 중 96.2%는 지난 1년동안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7.4%, 일반계 고등학생은 94.2%, 실업계 고등학생은 96.9%가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별 환각성 약물 흡입/복용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2) = 6.92, p < .05$), 남학생의 93.8%, 여학생의 98.2%가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성별에 따른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13.56, p < .001$). 특히 중학생의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chi^2(1) = 18.03, p < .001$)

마지막으로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한 욕설 또는 폭언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2명 중 70.8%는 지난 1년동안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0.1%, 일반계 고등학생은 69.7%, 실업계 고등학생은 72.7%가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한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한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 유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급별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한 욕설 또는 폭언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chi^2(2) = 0.43$, ns), 남학생의 63.2%, 여학생의 77.5%가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한 욕설/폭언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27.32$, $p < .001$). 중학생($\chi^2(1) = 18.34$, $p < .001$)과 일반계 고등학생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14.02$, $p < .001$).

3) 재산비행의 실태

재산비행의 각 유형에 대한 실태를 <표 V-4>에 제시하였다.

<표 V-4> 학교급 및 성별 재산비행

유형	학교급	성별	없다	있다					계
				소계	6개월에 1~2	1달에 1~2	1주일에 1~2	1주일에 3~4	
상점 절도	중학 교	남	196 (83.1)	40 (16.9)	24 (10.2)	7 (3.0)	3 (1.3)	6 (2.5)	236
		여	285 (96.3)	11 (3.7)	8 (2.7)	1 (0.3)	1 (0.3)	1 (0.3)	296
		전체	481 (90.4)	51 (9.6)	32 (6.0)	8 (1.5)	4 (0.8)	7 (1.3)	532
	일반 고	남	204 (82.9)	42 (17.1)	24 (9.8)	12 (4.9)	3 (1.2)	3 (1.2)	246
		여	193 (89.4)	23 (10.6)	12 (5.6)	8 (3.7)	1 (0.5)	2 (0.9)	216
		전체	397 (85.9)	65 (14.1)	36 (7.8)	20 (4.3)	4 (0.9)	5 (1.1)	462
	실업 고	남	80 (89.9)	9 (10.1)	7 (7.9)	1 (1.1)	1 (1.1)	0 (0.0)	89
		여	35 (89.7)	4 (10.3)	3 (7.7)	0 (0.0)	0 (0.0)	1 (2.6)	39
		전체	115 (89.8)	13 (10.2)	10 (7.8)	1 (0.8)	1 (0.8)	1 (0.8)	128
전체		993 (88.7)	129 (11.3)	78 (7.2)	29 (2.2)	9 (0.8)	13 (1.1)	1122	
대인 절도	중학 교	남	204 (86.4)	32 (13.6)	21 (8.9)	6 (2.5)	1 (0.4)	4 (1.7)	236
		여	286 (96.6)	10 (3.4)	7 (2.4)	0 (0.0)	2 (0.7)	1 (0.3)	296
		전체	490 (92.1)	42 (7.9)	28 (5.3)	6 (1.1)	3 (0.6)	5 (0.9)	532
	일반 고	남	212 (86.2)	34 (13.8)	20 (8.1)	10 (4.1)	2 (0.8)	2 (0.8)	246
		여	204 (94.4)	12 (5.6)	4 (1.9)	3 (1.4)	3 (1.4)	2 (0.9)	216
		전체	416 (90.0)	46 (10.0)	24 (5.2)	13 (2.8)	5 (1.1)	4 (0.9)	462
	실업 고	남	81 (91.0)	8 (9.0)	5 (5.6)	3 (3.4)	0	0 (0.0)	89
		여	37 (94.9)	2 (5.1)	1 (2.6)	0 (0.0)	0	1 (2.6)	39
		전체	118 (92.2)	10 (7.8)	6 (4.7)	3 (2.3)	0	1 (0.8)	128
전체		1026 (91.4)	96 (8.6)	58 (5.1)	22 (2.1)	8 (0.9)	10 (0.9)	1122	

재산비행 중 상점의 물품 절도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2명 중 88.7%는 지난 1년동안 백화점이나 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0.4%, 일반계 고등학생은 85.9%, 실업계 고등학생은 89.8%가 물품 절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물품절도 경험이 유무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물품 절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84.1%, 여학생의 93.1%가 상점의 물품 절도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이 역시 남학생의 절도경험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상점의 물품 절도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22.52, p < .001$).

대인절도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2명 중 91.4%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2.1%, 일반계 고등학생은 90.0%, 실업계 고등학생은 92.2%가 대인 절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인절도 경험이 유무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대인 절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90.2%, 여학생의 95.6%가 대인 절도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이 역시 남학생의 절도경험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상점의 물품 절도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 = 26.04, p < .001$).

4) 성비행의 실태

학교급 및 성별 성비행의 실태를 표 IV-16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인용 음란물 또는 포르노물 시청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17명 중 54.1%는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을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0.6%가 경험이 없는 반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51.9%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39.8%만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학교급 및 성별 성비행

유형	학교 급	성별	없다	있다					계
				소계	6개월에 1~2	1달에 1~2	1주일에 1~2	1주일에 3~4	
포르 노 시청	중학 교	남	134 (57.0)	101 (43.0)	33 (14.0)	32 (13.6)	16 (6.8)	20 (8.5)	235
		여	240 (81.4)	55 (18.6)	34 (11.5)	15 (5.1)	4 (1.4)	2 (0.7)	295
		전체	374 (70.6)	156 (29.4)	67 (12.6)	47 (8.9)	20 (3.8)	22 (4.2)	530
	일반 교	남	87 (35.5)	158 (64.5)	31 (12.7)	55 (22.4)	43 (17.6)	29 (11.8)	245
		여	151 (70.6)	63 (29.4)	48 (22.4)	13 (6.1)	1 (0.5)	1 (0.5)	214
		전체	238 (51.9)	221 (48.1)	79 (17.2)	68 (14.8)	44 (9.6)	30 (6.5)	459
	실업 교	남	22 (24.7)	67 (75.3)	13 (14.6)	22 (24.7)	15 (16.9)	17 (19.1)	89
		여	29 (74.4)	10 (25.6)	6 (15.4)	2 (5.1)	0 (0.0)	2 (5.1)	39
		전체	51 (39.8)	77 (60.2)	19 (14.8)	24 (18.8)	15 (11.7)	19 (14.3)	128
				663 (54.1)	454 (45.9)	165 (14.9)	139 (14.2)	79 (8.4)	71 (8.3)
이성 친구 와 성관 계	중학 교	남	216 (91.5)	20 (8.5)	9 (3.8)	3 (1.3)	2 (0.8)	6 (2.5)	236
		여	291 (99.0)	3 (1.0)	2 (0.7)	0 (0.0)	0 (0.0)	1 (0.3)	294
		전체	507 (95.7)	23 (4.3)	11 (2.1)	3 (0.6)	2 (0.4)	7 (1.3)	530
	일반 교	남	208 (84.6)	38 (15.4)	16 (6.5)	12 (4.9)	3 (1.2)	7 (2.8)	246
		여	203 (94.0)	13 (6.0)	6 (2.8)	5 (2.3)	1 (0.5)	1 (0.5)	216
		전체	411 (89.0)	51 (11.0)	22 (4.8)	17 (3.7)	4 (0.9)	8 (1.7)	462
	실업 교	남	81 (91.0)	8 (9.0)	3 (3.4)	2 (2.2)	0 (0.0)	3 (3.4)	89
		여	33 (84.6)	6 (15.4)	2 (5.1)	2 (5.1)	1 (2.6)	1 (2.6)	39
		전체	114 (89.1)	14 (10.9)	5 (3.9)	4 (3.1)	1 (0.8)	4 (3.1)	128
				1032 (91.3)	88 (8.7)	38 (3.6)	24 (2.5)	7 (0.7)	19 (2.0)
인터 넷 포르 노 열람	중학 교	남	152 (64.7)	83 (35.3)	32 (13.6)	21 (8.9)	11 (4.7)	19 (8.1)	235
		여	257 (86.8)	39 (13.2)	24 (8.1)	12 (4.1)	2 (0.7)	1 (0.3)	296
		전체	409 (77.0)	122 (23.0)	56 (10.5)	33 (6.2)	13 (2.4)	20 (3.8)	531
	일반 교	남	100 (41.0)	144 (59.0)	41 (16.8)	46 (18.9)	32 (13.1)	25 (10.2)	244
		여	179 (82.9)	37 (17.1)	27 (12.5)	5 (2.3)	3 (1.4)	2 (0.9)	216
		전체	279 (60.7)	181 (39.3)	68 (14.8)	51 (11.1)	35 (7.6)	27 (5.9)	460
	실업 교	남	38 (42.7)	51 (57.3)	18 (20.2)	10 (11.2)	12 (13.5)	11 (12.4)	89
		여	34 (87.2)	5 (12.8)	4 (10.3)	0 (0.0)	0 (0.0)	1 (2.6)	39
		전체	72 (56.3)	56 (43.7)	22 (17.2)	10 (7.8)	12 (9.4)	12 (9.4)	128
				760 (65.0)	359 (35.0)	146 (14.2)	94 (8.4)	60 (6.5)	59 (6.4)
채팅 / 메일 로 음란 한 대화	중학 교	남	208 (88.1)	28 (11.9)	11 (4.7)	5 (2.5)	3 (1.3)	8 (3.4)	236
		여	284 (95.9)	12 (4.1)	6 (2.0)	4 (1.4)	2 (0.7)	0 (0.0)	296
		전체	492 (92.5)	40 (7.5)	17 (3.2)	10 (1.9)	5 (0.9)	8 (1.5)	532
	일반 교	남	208 (84.6)	38 (15.4)	19 (7.7)	9 (3.7)	4 (1.6)	6 (2.4)	246
		여	206 (95.4)	10 (4.6)	1 (0.5)	6 (2.8)	1 (0.5)	2 (0.9)	216
		전체	414 (89.6)	48 (10.4)	20 (4.3)	15 (3.2)	5 (1.1)	8 (1.7)	462
	실업 교	남	78 (87.6)	11 (12.4)	1 (1.1)	6 (6.7)	3 (3.4)	1 (1.1)	89
		여	38 (97.4)	1 (2.6)	0 (0.0)	0 (0.0)	0 (0.0)	1 (2.6)	39
		전체	116 (90.6)	12 (9.4)	1 (0.8)	6 (4.7)	3 (2.3)	2 (1.6)	128
				1022 (90.9)	100 (9.1)	38 (2.8)	31 (3.3)	13 (1.4)	18 (1.6)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경험여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경험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58.52, p<.001$). 실업계 고등학생은 60.2%가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학생의 42.7%, 여학생의 76.6%가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을 시청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이 역시 남학생의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을 시청한 경험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경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133.26, p<.001$). 성인용 음란/포르노물 시청 경험은 모든 학교급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중학생, $\chi^2(1)=37.29, p<.001$; 일반계 고등학생 $\chi^2(1)=56.21, p<.001$; 실업계 고등학생 $\chi^2(1)=27.88, p<.001$).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0명 중 91.3%는 지난 1년 동안 이성친구와 성관계의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5.7%, 일반계 고등학생은 89.0%, 실업계 고등학생은 89.1%가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교급별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17.21, p<.001$). 남학생의 88.4%, 여학생의 96%가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이 역시 남학생의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22.05, p<.001$).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19명 중 65%는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이 없다고 답하여, 35%는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7%, 일반계 고등학생은 60.7%, 실업계 고등학생은 56.3%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은 거의 반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한 결과, 학교급별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39.35, p<.001$). 남학생의 51%, 여학생의 85.3%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이 역시 남학생의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청소년들이 성인용 포르노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포르노물 시청에 따른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150.51, p<.001$).

마지막으로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은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 1,122명 중 90.9%는 지난 1년 동안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 경험 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92.5%, 일반계 고등학생은 89.6%, 실업계 고등학생은 90.6%가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한 결과, 학교급별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8)=12.007, ns$). 남학생의 86.4%, 여학생의 95.8%가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이 역시 남학생의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1)=27.32, p<.001$).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은 모든 학교급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중학생, $\chi^2(1) = 36.30, p < .001$; 일반계 고등학생 $\chi^2(1) = 84.23, p < .001$; 실업계 고등학생 $\chi^2(1) = 21.81, p < .001$).

3. 가정 관련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1)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문제행동

(1) 주관적 가정형편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을 세 수준으로 나누어 각 비행유형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비행유형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저질렀고, 변량분석결과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비행 경험이 많았다. 이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은 지위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낀 자녀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김준호와 김순형(1995) 및 김준호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V-6> 주관적 가정형편에 따른 비행의 차이

	주관적 가정형편			F
	하	중	상	
지위비행	9.41 ^a (4.89)	7.58 ^b (2.73)	7.90 ^b (3.53)	25.43 ^{***}
폭력비행	8.14 ^a (4.16)	7.05 ^b (2.45)	7.46 (3.44)	11.30 ^{***}
재산비행	2.57 ^a (1.47)	2.24 ^b (0.90)	2.35 (1.78)	8.28 ^{***}
성비행	6.90 ^a (3.65)	5.46 ^b (2.50)	5.95 ^b (3.07)	22.51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주택소유여부

주택의 소유여부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자가라고 답한 학생들과 전세 및 월세라고 답한 학생들로 나누었다. t검증을 한 결과, 주관

적 가정형편과는 달리 객관적인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차이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인 가정형편보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이 문제행동과 더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표 V-7> 주택 자가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자가여부		t
	자가	타인	
지위비행	8.00 (0.60)	8.06 (0.57)	-.271
폭력비행	7.28 (0.54)	7.42 (0.51)	-.711
재산비행	2.31 (0.56)	2.35 (0.54)	-.504
성비행	5.92 (0.76)	5.87 (0.75)	.294

(3)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행의 정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위비행과 성비행에서는 비행의 정도가 높았으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는 부친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비행정도가 높았다. 부친의 교육수준에 따라 모든 비행유형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을 한 결과,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행정도가 높은 지위비행과 성비행에서 고졸인 경우와 대졸 이상인 학생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들과 중졸이하인 경우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친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행정도가 더 높은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도 이들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중졸 이하인 경우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비행이 부친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경제적 수준도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결과와는 달리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비행이 많음을 시사한다.

<표 V-8> 부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

	부친 학력			F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지위비행	9.69 ^a (8.90)	8.04 ^b (3.17)	7.80 ^b (3.26)	8.70 ^{***}
폭력비행	8.42 ^a (5.42)	7.13 ^b (2.50)	7.32 ^b (3.10)	4.77 ^{**}
재산비행	2.78 ^a (1.78)	2.22 ^b (0.80)	2.33 ^b (1.09)	7.92 ^{***}
성비행	7.08 ^a (3.81)	5.87 ^b (2.80)	5.76 ^b (2.95)	5.75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행의 정도 역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의 정도가 높았고, 모든 비행유형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을 한 결과, 부친의 교육수준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친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와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과 중졸이하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단,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는 모친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인 경우보다 비행정도가 높았으나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폭력비행인 경우에는 대졸이상인 경우와 중졸이하인 경우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재산비행에서는 대졸이상인 경우와 중졸이하인 경우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9>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

	모친 학력			F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지위비행	9.19 ^a (5.49)	7.96 ^b (3.08)	7.76 ^b (3.26)	6.42 ^{**}
폭력비행	8.24 ^a (5.40)	7.07 ^b (2.33)	7.32 ^b (3.15)	5.48 ^{**}
재산비행	2.65 ^a (1.77)	2.22 ^b (0.78)	2.36 (1.18)	6.60 ^{***}
성비행	7.05 ^a (4.04)	5.85 ^b (2.78)	5.66 ^b (2.85)	8.15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4) 부모와의 동거여부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하였다. 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하여 비행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일

반적인 예상과 달리, 부모 중 어느 쪽하고도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어느 한 쪽하고만 동거를 하는 경우에 비행의 정도는 더 높았다. 변량분석결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비행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성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비행이 다른 유형보다 더 적었다. 사후검증을 한 결과, 지위비행에서는 부모 중 한쪽하고만 동거하는 경우에 부모 모두와 동거하거나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V-10>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부모동거			F
	부모동거	편부모동거	부모비동거	
지위비행	7.83 ^a (3.34)	9.55 ^b (4.37)	8.29 ^a (3.95)	11.28 ^{***}
폭력비행	7.21 ^a (2.93)	7.95 ^b (3.65)	7.87 ^b (4.04)	4.84 ^{**}
재산비행	2.27 ^a (0.99)	2.64 ^b (1.58)	2.47 ^{ab} (1.31)	6.51 ^{**}
성비행	5.87 (2.93)	6.34 (3.23)	5.85 (3.20)	1.24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가족의 기능적 변인과 문제행동

각 변인의 상중하 분류는 상대적인 것으로 지표 점수에 따른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3등분으로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였다.

(1)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모든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모든 비행유형의 경험이 많았다. 이 결과는 가족의 친밀감이 문제행동을 억제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기광도·이희길, 2002; 김윤희·강영자, 1999; 전영실, 2002; 2002; 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Glueck & Glueck, 1950; Rankin & Kern, 1994; Rankin & Wells, 199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V-11>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정서적 친밀도			F
	하	중	상	
지위비행	8.93 ^a (4.53)	7.86 ^b (2.79)	7.55 ^b (3.43)	13.46 ^{***}
폭력비행	7.92 ^a (3.95)	7.20 ^b (2.50)	7.15 ^b (3.25)	6.00 ^{**}
재산비행	2.51 ^a (1.47)	2.29 ^b (0.88)	2.25 ^b (1.01)	5.40 ^{**}
성비행	6.27 ^a (3.15)	5.96 ^a (2.89)	5.44 ^b (2.92)	6.41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른 비행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제 정도가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고, 이 차이는 모든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은 통제정도가 중간정도와 높은 정도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폭력비행은 부모의 통제정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과 중간 수준의 학생들이 많았다.

<표 V-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정도			F
	하	중	상	
지위비행	8.76 ^a (4.08)	8.43 ^a (3.83)	7.32 ^b (2.80)	17.76 ^{***}
폭력비행	7.85 ^a (3.55)	7.60 ^a (3.64)	6.92 ^b (2.42)	9.04 ^{***}
재산비행	2.49 ^a (1.33)	2.43 ^a (1.20)	2.17 ^b (0.85)	9.36 ^{***}
성비행	6.62 ^a (3.23)	6.11 ^a (3.16)	5.25 ^b (2.54)	20.83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3) 가족간의 불신

가족간의 불신 정도에 따른 비행의 정도는 가족간의 불신 정도가 높을수록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의 정도가 높았으나, 변량분석결과, 가족간의 불신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지위비행과 성비행에서만 유의미하였다. 지위비행과 성비행은 가족간의 불신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았다.

<표 V-13> 가족간의 불신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가족간의 불신정도			F
	고	중	하	
지위비행	8.50 ^a (3.84)	8.00 (3.47)	7.73 ^b (3.36)	4.72**
폭력비행	7.63 (3.38)	7.46 (3.21)	7.13 (2.99)	2.61
재산비행	2.45 (1.31)	2.33 (1.00)	2.26 (1.00)	2.99
성비행	6.30 ^a (3.25)	5.82 (2.90)	5.59 ^b (2.78)	5.96**

* $p < .05$, ** $p < .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4) 부모간의 관계

부모 상호간의 관계에 따른 비행은 부모 상호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모든 비행경험이 많았고, 이 차이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비행유형에서 부모 상호간의 관계가 중간정도이거나 좋은 학생들에 비해 나쁜 학생들의 비행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14>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비행의 차이

	부모간의 관계			F
	하	중	상	
지위비행	8.97 ^a (4.32)	7.83 ^b (3.29)	7.65 ^b (3.11)	13.73***
폭력비행	8.25 ^a (4.18)	7.25 ^b (2.77)	6.93 ^b (2.60)	16.16***
재산비행	2.62 ^a (1.59)	2.27 ^b (0.88)	2.21 ^b (0.85)	13.68***
성비행	6.59 ^a (3.37)	5.83 ^b (2.89)	5.47 ^b (2.71)	12.70***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5)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경험에 따른 비행 역시 언어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비행경험이 많았고, 이 차이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은 언어적 학대경험이 낮은 학생들과 많은 학생들간의 차이만 유의미하였고, 재산비행은 언어적 학대경험이 많은 학생들의 비행경험과 낮거나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V-15> 언어적 학대경험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언어학대			F
	하	중	고	
지위비행	7.86 ^a (3.35)	8.30 ^{ab} (3.81)	8.92 ^b (4.30)	5.75 ^{**}
폭력비행	7.23 ^a (2.92)	7.56 ^{ab} (3.63)	8.12 ^b (4.01)	4.90 ^{**}
재산비행	2.28 ^a (0.98)	2.32 ^a (1.11)	2.69 ^b (1.67)	8.15 ^{***}
성비행	5.75 (2.88)	6.23 (3.29)	6.33 (3.24)	3.39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6)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경험에 따른 비행 역시 신체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지위비행 경험만이 많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은 신체적 학대경험이 낮은 학생들과 많은 학생들간의 차이만 유의미하였다.

<표 V-16> 신체적 학대 경험여부에 따른 비행의 차이

	신체학대			F
	하	중	고	
지위비행	7.89 ^a (3.33)	8.02 ^{ab} (3.68)	8.66 ^b (4.15)	3.43 [*]
폭력비행	7.25 (2.97)	7.48 (3.25)	7.73 (3.81)	1.76
재산비행	2.29 (0.97)	2.36 (1.22)	2.50 (1.42)	2.69
성비행	5.80 (2.95)	6.15 (3.14)	5.91 (2.95)	1.26

* $p < .05$,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7)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에 따른 비행 경험은 재산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녀가 말 안 듣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위비행, 폭력비행 및 성비행경험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마다 혼나거나 기분에 따라 혼나거나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성비행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나 기분에 따라 혼나거나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혼난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17>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			F
	잘못할 때마다	기분에 따라	상관안함	
지위비행	7.88 ^a (3.50)	8.08 ^a (3.40)	10.17 ^b (4.80)	3.91*
폭력비행	7.30 ^a (3.06)	7.44 ^a (3.23)	9.67 ^b (5.46)	4.86**
재산비행	2.31 (1.12)	2.37 (1.12)	2.89 (1.68)	2.49
성비행	5.63 ^a (2.87)	6.24 ^b (3.15)	7.61 ^b (3.88)	7.79***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4. 학교 관련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1)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폭력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교사에 대한 인식점수가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정도가 낮은 학생들이나 중간정도의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18>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F
	하	중	상	
지위비행	8.62 ^a (3.66)	8.14 ^{ab} (3.68)	7.49 ^b (3.20)	7.16 ^{**}
폭력비행	7.52 (3.12)	7.52 (3.46)	7.03 (2.67)	2.74
재산비행	2.41 ^a (1.11)	2.40 ^{ab} (1.25)	2.18 ^b (0.81)	4.57 [*]
성비행	6.13 ^a (2.94)	6.06 ^a (3.13)	5.40 ^b (2.69)	5.98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학교친구와의 친밀도

학교에서의 친구변인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지위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친구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은 친구와의 친밀도가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성비행은 친구들과의 친밀도가 낮은 학생들이나 중간정도의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19> 친구와의 친밀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친구와의 친밀도			F
	하	중	상	
지위비행	8.41 (4.01)	7.96 (3.71)	7.89 (3.03)	2.07
폭력비행	7.77 ^a (3.64)	7.36 ^{ab} (3.40)	7.13 ^b (2.55)	3.60 [*]
재산비행	2.47 ^a (1.25)	2.33 ^{ab} (1.20)	2.26 ^b (0.90)	3.39 [*]
성비행	6.33 ^a (3.16)	6.16 ^a (3.32)	5.31 ^b (2.38)	13.0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3)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비행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

록 비행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학생들이 중간정도인 학생들보다 비행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중간정도의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은 낮은 학생들이 중간정도이거나 높은 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20> 학교적합성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학교적합성			F
	하	중	상	
지위비행	9.01 ^a (4.32)	8.04 ^b (3.45)	7.26 ^c (2.65)	22.96 ^{***}
폭력비행	8.02 ^a (3.81)	7.34 ^b (3.25)	6.88 ^b (2.33)	12.16 ^{***}
재산비행	2.59 ^a (1.47)	2.32 ^b (1.10)	2.14 ^b (0.63)	15.49 ^{***}
성비행	6.43 ^a (3.25)	5.81 ^b (3.00)	5.49 ^b (2.65)	9.61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4) 부모의 기대격차와 공부에 대한 부담감

부모의 기대격차에 따라 비행에 차이는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님의 기대격차가 클수록 비행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폭력비행과 재산비행 모두 기대격차가 큰 학생들이 낮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비행경험이 많았다.

<표 V-21> 부모님의 기대격차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부모님의 기대격차			F
	상	중	하	
지위비행	8.32 (3.83)	8.06 (3.57)	7.84 (3.31)	1.68
폭력비행	7.76 ^a (3.89)	7.27 ^{ab} (3.03)	7.17 ^b (2.59)	3.50 [*]
재산비행	2.48 ^a (1.44)	2.35 ^{ab} (1.07)	2.21 ^b (0.77)	5.68 ^{**}
성비행	6.00 (3.23)	5.86 (2.96)	5.82 (2.80)	0.36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5) 학교에 대한 유대감

학교에 대한 유대감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폭력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학교유대감이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은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낮은 학생들이 중간정도인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중간정도인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비행경험이 많았다. 재산비행은 낮거나 중간정도인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많았고, 성비행은 낮은 학생들이 중간정도이거나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많았다.

<표 V-22> 학교에 대한 유대감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학교유대감			F
	하	중	상	
지위비행	9.11 ^a (4.08)	8.02 ^b (3.46)	7.40 ^c (3.17)	16.32 ^{***}
폭력비행	7.72 (3.42)	7.42 (3.36)	7.09 (2.67)	2.82
재산비행	2.50 ^a (1.27)	2.36 ^a (1.20)	2.20 ^b (0.80)	5.00 ^{**}
성비행	6.44 ^a (3.26)	5.85 ^b (2.93)	5.56 ^b (2.84)	6.15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5. 개인 관련 변인과 문제행동의 특성

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사후검증결과 지위비행은 지위비행은 자아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이 중간정도인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많았고, 중간정도인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폭력비행은 자아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많았고, 재산비행은 자아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이 중간정도이거나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성비행은 낮거나 중간정도인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비행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V-23> 자기통제력의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자기통제력 정도			F
	하	중	고	
지위비행	9.40 ^a (4.12)	8.02 ^b (3.53)	7.41 ^c (3.09)	23.38 ^{***}
폭력비행	7.99 ^a (3.36)	7.44 ^{ab} (3.30)	6.99 ^b (2.88)	7.06 ^{***}
재산비행	2.58 ^a (1.38)	2.35 ^b (1.11)	2.20 ^b (0.93)	8.21 ^{***}
성비행	6.29 ^a (3.06)	6.09 ^a (3.09)	5.43 ^b (2.77)	8.13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비행 경험이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높은 학생들보다 많았다.

<표 V-24> 자존감의 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분석

	자존감정도			F
	하	중	상	
지위비행	7.97 ^{ab} (3.14)	8.44 ^a (4.10)	7.75 ^b (3.33)	3.69 [*]
폭력비행	7.49 ^{ab} (2.97)	7.66 ^a (3.81)	6.99 ^b (2.59)	4.43 [*]
재산비행	2.35 (1.03)	2.42 (1.36)	2.24 (0.88)	2.55
성비행	5.90 (2.81)	6.10 (3.34)	5.66 (2.76)	2.06

* $p < .05$.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6. 가정과 학교 및 개인관련 변인에 대한 종합분석

먼저 가정, 학교 및 개인관련 변인들과 각 비행유형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V-25 참조). 상관분석 결과,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가정친밀도가 낮을수록, 가정불신이 낮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정도가 높을수록, 부모 상호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각 유형의 비행은 적었다.

<표 V-25>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가정 친밀	(2) 가정 불신	(3) 부모 통제	(4) 부부 관계	(5) 가정 형편	(5) 부 교육	(6) 모 교육	(7) 학대 경험	(8) 친구	(9) 학교 인식	(10) 부모 부담	(11) 교사	(12) 유 대감	(13) 통 제력	(14) 자 존감
(1)															
(2)	.558***														
(3)	.495***	.282***													
(4)	.534***	.526***	.301***												
(5)	.243***	.177***	.162***	.263***											
(6)	.036	.000	.059	.087**	.230***										
(7)	.046	.007	.047	.093**	.238***	.769***									
(8)	-.379***	-.313***	-.175***	-.342***	-.065*	-.021	-.013								
(9)	.310***	.251***	.252***	.247***	.105**	.038	.027	-.106***							
(10)	.262***	.243***	.205***	.148***	.103**	.014	.008	-.126***	.253***						
(11)	.226***	.167***	.161***	.084**	.032	-.082**	-.065*	-.263***	.046	.211***					
(12)	.313***	.203***	.240***	.131***	.112***	.099**	.105**	-.065**	.190***	.385***	.136***				
(13)	.253***	.157***	.247***	.121***	.103**	.072*	.091**	-.084**	.215***	.484***	.113***	.593***			
(14)	.242***	.205***	.241***	.182***	.091**	-.026	-.072*	-.205***	.006	.241***	.144***	.168***	.175***		
(15)	.385***	.299***	.217***	.244***	.124**	.049	.024	-.249***	.327***	.305***	.282***	.213***	.206***	.164***	
(16)	-.162**	-.135**	-.168**	-.158**	-.146**	-.062*	-.045	.119**	-.050	-.191**	-.056	-.131**	-.162**	-.203**	-.051*
(17)	-.125**	-.111**	-.128**	-.149**	-.084**	.004	.010	.112**	-.078**	-.159**	-.081**	-.068*	-.078**	-.122**	-.072*
(18)	-.146**	-.144**	-.136**	-.164**	-.075*	.000	.020	.123**	-.052	-.164**	-.107**	-.082**	-.104**	-.131**	-.061
(19)	-.120**	-.108**	-.197**	-.141**	-.110**	-.078*	-.087**	.081**	-.115**	-.117**	-.025	-.108**	-.102**	-.111**	-.024**

† 가족간의 불신이 높을수록 점수는 낮음

* $p < .05$, ** $p < 0.01$, *** $p < 0.001$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및 학교관련 변인 중 연속변인을 통합하여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앞에서 살펴본 변량분석과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음에는 이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별로 회귀분석을 하고, 다시 성별로 나누어 여중생·남중생, 일반계 남학생·일반계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남녀학생으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남녀별로 회귀분석을 할 만큼 성별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해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는 성별도 예언변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성별을 포함한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전반적인 모형은 지위비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R^2=.093$, $R^2_{adj}=.088$, $F(5,907)=18.644$, $p<.001$, 지위비행 변량의 9.3%를 설명하였는데, 단지 5개의 변인만이 모형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폭력비행 역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R^2=.074$, $R^2_{adj}=.070$, $F(4,912)=18.328$, $p<.001$, 7.4%를 설명하였다. 재산비행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R^2=.058$, $R^2_{adj}=.054$, $F(4,916)=18.644$, $p<.001$, 단지 재산비행 변량의 5.8%만을 설명하여 낮은 편이었다. 성비행 역시 유의미하였으며, $R^2=.206$, $R^2_{adj}=.201$, $F(6,907)=39.225$, $p<.001$, 설명력은 20.6%로 높은 편이었다. 성비행인 높은 이유는 비록 성별이 모든 비행유형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의 설명력이 다른 비행에 비해 성비행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앞서 각 변인별로 변량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부친의 교육수준, 모친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감독 및 통제, 가정통합도, 부모간의 관계,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학교유대감, 자기통제력, 및 자기존중감에 따라 지위비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변인을 한번에 넣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자기통제력,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인들을 통제하면서 분석한 결과는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기통제력,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만이 지위비행과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다른 비행 역시 변인별로 분석한 변량분석결과와 모든 변인을 모두 고려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후에는 회귀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겠다. 폭력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재산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많았다.

<표 V-26>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전체)

		예언변인	β	R^2	R^2 변화	t값
지위 비행	자기통제력	-0.872	.208			-4.693***
	학교적합도	-0.465	.246	.017		-3.740***
	성별	-0.785	.247	.015		-3.694***
	주관적 가정형편	-0.412	.297	.013		-2.867**
	부모간 관계	-0.341	.305	.005		-2.297*
폭력 비행	성별	-1.077	.036			-5.760***
	학교적합도	-0.400	.058	.022		-3.652***
	부모간 관계	-0.381	.070	.011		-3.009**
	자기통제력	-0.349	.074	.005		-2.148*
재산 비행	학교적합도	-0.161	.025			-4.027***
	성별	-0.250	.041	.016		-3.627***
	부모간 관계	-0.155	.054	.013		-3.370**
	부모기대격차	-0.105	.058	.004		-2.005*
성 비행	성별	-2.235	.410			-13.995***
	교사에 대한 애착	-0.346	.041	.013		-2.941**
	모친교육수준	-0.296	.437	.010		-3.475**
	부모간 관계	-0.308	.445	.007		-2.622**
	자기통제력	-0.347	.449	.004		-2.301*
	성적	-0.200	.454	.004		-2.157*

* $p < .05$, ** $p < .01$, *** $p < .001$.

다시 조사대상자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학교급별 stepwise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우선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지위비행 6.8%, 폭력비행 9.7%, 재산비행 7.7%로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고, 성비행은 18.6%로 낮지 않았다. 성 변인 모든 비행과 관계가 있었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많았고,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성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많았다.

<표 V-27>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중학생)

	예언변인	β	R^2	R^2 변화	t값
지위 비행	학교인식	-.598	.040	.040	-3.306***
	성별	-.770	.059	.019	-2.704**
	부모부담	-.415	.068	.009	-1.988*
폭력 비행	성별	-1.38	.058	.058	-4.900***
	학교인식	-.741	.097	.039	-4.296***
재산 비행	성별	-.449	.043	.043	-4.174***
	학교인식	-.262	.077	.034	-3.971***
성 비행	성별	-1.64	.114	.114	-6.721***
	학교인식	-.465	.145	.031	-3.102**
	성적	-.502	.157	.012	-3.688***
	부모통제	-.317	.173	.016	-2.661**
	주관적 가정형편	-.410	.186	.013	-2.616**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다시 남자중학생과 여자중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남자중학생의 경우,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3.1~4.5%로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고,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다.

<표 V-28>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남자중학생)

	예언변인	β	R ²	R ² 변화	t값
지위비행	부모부담	-1.041	.031	.031	-2.419*
폭력비행	학교인식	-.954	.033	.033	-2.495*
재산비행	학교인식	-.422	.045	.045	-2.928**
성비행	학교인식	-.908	.042	.042	-2.800**

여자중학생의 경우,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6.2~18.4%로 설명력은 성비행(6.2%)를 제외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 먼저 지위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 ‘주관적 가정형편’, ‘부친의 교육수준’, 및 ‘가정에 대한 불신’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을 많이 저질렀다. 폭력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어려서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폭력비행이 많았다. 재산비행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그에 비해 성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많았다.

<표 V-29>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여자중학생)

	예언변인	β	R ²	R ² 변화	t값
지위 비행	학교인식	-.572	.060	.060	-3.493 ^{***}
	부모통제	-.411	.089	.029	-3.117 ^{**}
	주관적 가정형편	-.694	.111	.022	-3.588 ^{***}
	부교육	.355	.137	.026	2.807 ^{**}
	가족불신	.556	.162	.025	2.655 ^{**}
폭력 비행	학교인식	-.522	.094	.094	-4.173 ^{***}
	학대경험	.100	.115	.021	2.077 [*]
	부모부담	.301	.132	.017	2.208 [*]
	부교육	.246	.148	.016	2.614 ^{**}
	주관적 가정형편	-.385	.171	.023	-2.770 ^{**}
	자기통제력	-.320	.184	.014	-1.997 [*]
재산 비행	학대경험	.069	.056	.056	3.481 ^{***}
	학교인식	-.124	.082	.026	-2.683 ^{**}
	부교육	.093	.097	.016	2.516 [*]
	주관적 가정형편	-.186	.119	.021	-3.152 ^{**}
	부부관계	.133	.138	.019	2.294 [*]
성 비행	학교인식	-.224	.044	.044	-2.028 [*]
	성적	-.412	.068	.024	-4.056 ^{***}
	주관적 가정형편	-.385	.109	.041	-2.985 ^{**}
	친구	-.249	.127	.018	-2.136 [*]
	부모통제	-.176	.142	.016	-2.096 [*]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은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지위비행 12.6%, 폭력비행이 8.4%, 지위비행이 9.2%, 재산비행이 8.5%로 설명력이 다소 낮은 편이었고, 성비행은 17.7%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성 변인 재산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과 관계가 있었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부부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고, 폭력비행은 부친과 모친의 부부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재산비행은 부친과 모친의 부부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교의 적

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부부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표 V-30>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일반계고등학생)

	예언변인	β	R ²	R ² 변화	t값
지위 비행	자기통제력	-1.153	.040	.040	-4.183***
	가정친밀도	-.437	.059	.019	-1.714
	교사	-.585	.068	.009	-2.413*
	성별	-.735	.058	.022	-2.330*
	부부관계	-.510	.058	.022	-2.029*
폭력 비행	부부관계	-.581	.034	.034	-3.251***
	성별	-.929	.064	.029	-3.655***
	자기통제력	-.655	.084	.021	-2.965**
재산 비행	부부관계	-.255	.050	.050	-3.857***
	자기통제력	-.249	.074	.024	-2.986**
	학교인식	-.111	.085	.011	-2.145*
성 비행	성별	-2.693	.205	.205	-10.304***
	교사	-.453	.216	.011	-2.292*
	부부관계	-.376	.225	.009	-2.122*

이들 다시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은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성비행이 4.6%, 폭력비행이 5.3%로 낮은 편이었고, 지위비행이 9.2%, 재산비행이 11.8%로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의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많았고,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많았다.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표 V-31>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일반남고생)

	예언변인	β	R^2	R^2 변화	t값
지위	자기통제력	-1.462	.072	.072	-3.636***
비행	가정친밀도	-.708	.092	.020	-2.107*
폭력	자기통제력	-1.056	.053	.053	-3.412***
비행	자기통제력	-.307	.051	.051	-2.766**
재산	학교인식	-.163	.076	.025	-2.266*
비행	부부관계	-.239	.096	.020	-2.538*
	주관적 가정형편	.205	.118	.022	2.275*
성	교사	-.822	.028	.028	-2.367*
비행	모교육	-.448	.046	.018	-1.975*

* $p < .05$, ** $p < .01$, *** $p < .001$,

일반계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성비행이 5.4%로 가장 낮았고, 지위비행이 11.0%, 지위비행이 9.2%, 폭력비행이 11.3%, 재산비행이 10.8%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표 V-32>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일반여고생)

	예언변인	β	R^2	R^2 변화	t값
지위	가정친밀도	-.902	.080	.080	-3.310***
비행	자기통제력	-.893	.108	.028	-2.405*
폭력	부모통제	-.472	.057	.057	-2.674**
비행	부교육	.535	.087	.030	2.628**
	부부관계	-.562	.114	.027	-2.364*
재산	가정친밀도	-.253	.083	.083	-2.463*
비행	부모통제	-.182	.108	.025	-2.306*
성비행	부모통제	-.421	.053	.053	-3.230***

지위비행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많

있고, 폭력비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재산비행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많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지위비행이 16.4%로 가장 낮았고, 폭력비행이 19.8%, 재산비행이 21.0%, 성비행이 24.1% 다른 대상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낮을수록 많았고, 폭력비행은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그리고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재산비행은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부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표 V-33> 개인·가정·학교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실업계고등학생)

	예언변인	β	R^2	R^2 변화	t값
지위 비행	주관적 가정형편	-2.008	.118	.118	-3.511 ^{***}
	학교유대감	-1.508	.164	.046	-2.563 [*]
폭력 비행	성적	-1.350	.202	.038	-2.521 [*]
	자기통제력	-1.592	.238	.036	-2.039 [*]
재산 비행	주관적 가정형편	-1.407	.108	.108	-3.039 ^{**}
	부모부담	-1.557	.161	.054	-2.812 ^{**}
	부교육	-.678	.198	.037	-2.025 [*]
성 비행	학대경험	.111	.111	.111	2.028 [*]
	부교육	-.310	.172	.061	-3.098 ^{**}
성 비행	부모부담	-.366	.210	.038	-2.072 [*]
	성별	-3.025	.143	.143	-4.490 ^{***}
성 비행	모교육	-.982	.241	.098	-3.429 ^{***}

* $p < .05$, ** $p < .01$, *** $p < .001$,

7. 요약 및 시사점

먼저 문제행동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위비행 관련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지난 1년동안 전체 중·고등학생 응답자중 83.2%는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51.2%는 지난 1년동안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78.8%는 지난 1년동안 술집출입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173.7%는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80.3%는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89.7%는 가출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폭력비행은 84.2%는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90.1%는 집단패싸움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94.1%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집단괴롭힘/따돌림경험은 91.0%가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96.2%는 본드/니스/진정제 등 환각성 약물을 흡입하거나 복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70.8%는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재산비행은 88.7%는 지난 1년동안 백화점이나 가게 등 상점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91.4%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성비행은 54.1%가 성인용 음란물이나 포르노물을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91.3%는 이성친구와 성관계의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고, 65%는 인터넷을 통한 성인용 포르노물 열람이 없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은 90.9%가 지난 1년 동안 채팅이나 메일을 통한 음란대화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가정, 학교 및 개인 관련 변인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요약하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이 대부분 비행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정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비행의 정도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

한 가정형편에 따라 모든 비행유형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비행 경험이 많았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은 지위비행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기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느낀 자녀가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뿐만 아니라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에서도 스스로 평가한 가족의 생활형편이 낮을수록 비행정도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의 자가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비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인 가정형편은 문제행동과 관련없는 것임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주택소유여부와 주택가격 또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부친의 교육수준 및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 비행이 유의미하게 많았다는 결과를 고려해보면 후자의 설명이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가정형편도 일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객관적인 가정형편 역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의 비행이 적었다.

가정의 기능적 요인에 따른 비행의 정도는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정도, 및 부모 상호간의 관계에 따른 비행의 차이가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각각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았다. 또한 언어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유형의 비행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언어적 폭력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다는 기존 연구(김준호 등, 1989; 김준호·이동원,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신체적 학대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당한 학생들이 지위비행의 경험만이 많았다. 이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상해 위험이 높은 폭력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들(김준호·이동원, 1996; 민수홍, 1998)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태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에서는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재산비행을 제외한 지위비행, 폭력비행 및 성비행이 많았다.

학교관련 요인에 따른 비행정도는 먼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폭력비행을 제외한 모든 비행에서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비행이 많았다. 학교에서의 친구변인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친구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지위비행을 제외한 폭력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이 많았다. 학교에 대한 적합성에서는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모든 유형의 비행이 많았다. 부모님의 기대격차에 따라 비행에 차이는 부모님의 기대격차가 클수록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유대감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학교유대감이 낮을수록 폭력비행을 제외한 지위비행, 재산비행, 및 성비행 경험이 많았다.

개인관련 요인에 따른 비행정도에서 자기통제력에 따른 차이는 모든 유형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았다. 이는 기존의 사회통제이론의 연구결과(민수홍, 2004, 2005)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이 중간정도인 학생들의 비행 경험이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높은 학생들보다 많았다.

다음은 개인, 가족 및 학교 관련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및 학교관련 변인 중 연속변인을 통합하여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행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주관적으로 가정형편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많았다. 앞서 각 변인별로 변량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부친의 교육수준, 모친의 교육수준,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 부모의 감독 및 통제, 가정통합도, 부모간의 관계,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학교유대감,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에 따라 지위비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변인

을 한번에 넣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자기통제력,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인들을 통제하면서 분석한 결과는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자기통제력,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형편 및 부모간의 관계, 학교관련 변인에서는 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만이 지위비행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다른 비행 역시 변인별로 분석한 변량분석결과와 모든 변인을 모두 고려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이후에는 회귀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겠다. 폭력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많았다. 재산비행은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부모의 기대 및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클수록 많았고, 성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 및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친과 모친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많았다.

중학생 특히 남자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인식이 문제행동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모 상호간의 관계 및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성별로는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은 자기통제력, 일반계 여자고등학생은 가정친밀도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변인이었다. 실업계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주관적 가정형편이 중요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특히 중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함하고,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정친밀도와 더불어 부모의 통제 및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실업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 특히 지위비행과 관련하여 자아통제력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 자아통제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중의 하나는 만족의 지연에 대한 연구이다(Mischel, & Ebbesen, 1970; Mischel, Ebbesen, & Zeiss, 1972; Mischel, 1984; 권준모, 2003

에서 재인용). 만족의 지연이란 자발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미래의 보다 나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취학전의 아동들이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청소년기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Mischel(1984; 권준모, 2003:288에서 재인용)은 취학전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을 12년 동안 추적하여 아동기에 나타난 만족을 지연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반영되는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에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하여 순간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아동(이 연구에서는 만4세)은 더 주의력 있고, 생각을 잘 표현하며, 사리에 맞게 반응하며, 유능하고, 숙련되어 있고, 계획적이며, 미리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더 성숙하게 대처하고 다룰 수 있는 청년(이 연구에서는 만16세)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만족의 지연에 대한 연구결과는 자아통제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Mischel, Ebbesen, 및 Zeiss(1972; 권준모, 2003:290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효과적으로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좌절과 혐오성을 감소시키는 인지적인 주의분산전략 즉 다른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목표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연으로 인한 혐오적인 기간을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지연기간을 보다 긍정적이거나 흥미로운 경험으로 변형시키는 인지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현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 즉 미래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라며 ‘극기’, ‘인내심’, ‘정신력’만을 강조했던 교육방법과는 다르며 기존의 교육방법이 효과없음을 시사한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며 필요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신력과 의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인지적인 전략(예를 들어, 주의분산전략)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I. 가정 · 학교 연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 가정 기능에 대한 실태
2. 학교 기능에 대한 실태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VI. 가정·학교 연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많은 연구에서 주장해 온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학교급별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1. 가정 기능에 대한 실태

1) 부모와의 대화

평소 부모와의 대화는 학교급별로 모두 반 이상이 피상적으로 겉도는 이야기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및 부모와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은 부모와의 대화가 피상적으로 겉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빈도분석결과 부모님과 대화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1> 부모와의 대화 실태

	부모와의 대화			계
	진지하게	피상적	대화없음	
중학교	264 (49.6)	260 (48.9)	8 (1.5)	532 (100)
일반계	204 (44.3)	250 (54.3)	6 (1.3)	460 (100)
실업계	55 (43.3)	70 (55.0)	2 (1.6)	127 (100)
계	523 (46.7)	580 (51.8)	16 (1.4)	1119 (100)

하지만 참고삼아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대화정도에 따른 비행정도의 차이가 모든 비행유형에서 유의미하였다.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학생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피상적으로 겉도는 이야기만 한다’와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례를 합하여 *t*검증을 해 본

결과, 모든 비행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VI-2>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따른 비행의 차이

	부모와의 대화 정도		t
	진지한 대화(n=520)	피상적+대화없음(n=588)	
지위비행	7.74 (3.33)	8.34 (3.74)	-2.798**
폭력비행	7.15 (3.03)	7.59 (3.32)	-2.236*
재산비행	2.25 (1.07)	2.41 (1.19)	-2.510*
성비행	5.51 (2.80)	6.22 (3.11)	-4.005***

* $p < .05$, *** $p < .01$, **** $p < .001$.

물론 부모와의 대화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모와의 대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단,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라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즉, 대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므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1) 대화하지 않는 이유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학생들은 ‘부모님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까봐 불안해서’(3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말이 안통해서’ 24.8%였다. 고등학생들은 일반계와 실업계에 상관없이 모두 ‘부모님과 말은 통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까봐 불안해서’(25.2%)였으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안 되어서’(21.8%)였다. 빈도분석결과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VI-3>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대화하지 않는 이유					계
	말이 안통해	도움이 안돼	관심이없어	무조건반대	기타	
중학교	71 (24.8)	45 (15.7)	10 (3.5)	94 (32.9)	66 (23.1)	286 (100)
일반계	79 (31.6)	47 (18.8)	10 (4.0)	63 (25.2)	51 (20.4)	250 (100)
실업계	20 (25.6)	17 (21.8)	1 (1.3)	16 (20.5)	24 (30.8)	78 (100)
계	170 (27.7)	109 (17.8)	21 (3.4)	173 (28.2)	141 (23.0)	614 (100)

2)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

학생들이 부모님에 가장 원하는 것으로 중학생들은 ‘신뢰와 이해심’(32.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뜻한 관심과 애정’(16.9%)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신뢰와 이해심’(42.1%)을 가장 원했으나,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유’(18.6%)를 꼽았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경제적 여유’(28.0%)를 가장 원했고, 다음이 ‘신뢰와 이해심’(23.2%)이었다. 빈도분석결과,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12) = 59.853, p < .001$, 학교급에 따라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표 VI-4>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

	부모님에게 가장 원하는 것							계
	관심	대화	신뢰	공정	화목	경제력	기타	
중학교	88 (16.9)	41 (7.9)	171 (32.9)	36 (6.9)	66 (12.7)	63 (12.1)	55 (10.6)	520 (100)
일반계	63 (13.8)	27 (5.9)	193 (42.1)	28 (6.1)	29 (6.3)	85 (18.6)	33 (7.2)	458 (100)
실업계	16 (12.8)	14 (11.2)	29 (23.2)	4 (3.2)	22 (17.6)	35 (28.0)	5 (4.0)	125 (100)
계	167 (15.1)	82 (7.4)	393 (35.6)	68 (6.2)	117 (10.6)	183 (16.6)	93 (8.4)	1103 (100)

3) 담임교사 인지 여부

중학생의 13.1%, 일반계 고등학생의 22.7%, 실업계 고등학생의 34.9%는 부모가 자신들의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과 학

교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빈도분석결과 담임교사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2) = 35.922, p < .001$, 학교급에 따라 담임교사를 알고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표 VI-5> 담임교사 인지 여부

	담임 인지 여부		계
	안다	모른다	
중학교	459 (86.9)	69 (13.1)	528 (100.0)
일반계	355 (77.3)	104 (22.7)	459 (100.0)
실업계	82 (65.1)	44 (34.9)	126 (100.0)
계	896 (80.5)	217 (19.5)	1113 (100.0)

4) 담임교사와의 만남

중학생은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는 학생들이 52.7%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무려 73.2%가 학생들의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VI-6> 담임교사와의 만남 실태

	담임교사와의 만남				계
	1번	2-3번	4번이상	만난적 없다	
중학교	113 (21.4)	110 (20.8)	27 (5.1)	279 (52.7)	529 (100)
일반계	111 (24.1)	67 (14.5)	19 (4.1)	264 (57.3)	466 (100)
실업계	18 (14.2)	13 (10.2)	3 (2.4)	93 (73.2)	127 (100)
계	242 (21.7)	190 (17.0)	49 (4.4)	636 (56.9)	1117 (100)

빈도분석결과, 빈도수가 너무 적은(3) 사례가 있어 해석을 주의해야하나, 부모가 담임교사를 만난 정도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6) = 23.538, p < .01$, 학교급에 따라 부모가 담임교사를 만난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이 역시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중요하게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의 부모와 담임교사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부모와 교사간 공식적 만남의 시간

부모와 교사간에 학생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중학생 60.3%, 일반계 고등학생 56%였고, 심지어 실업계 고등학생은 78.6%에 달했다. 빈도분석결과 부모와 교사간 공식적 만남의 시간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2) = 21.147, p < .001$, 학급급에 따라 부모와 담임교사간 공식적인 만남 회수에 차이가 있다. 다른 학교급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에서는 부모와 교사간 공식적 만남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비행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문제행동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표 VI-7> 부모와 교사간 공식적 만남 여부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시행 여부		계
	있다	없다	
중학교	209 (39.7)	317 (60.3)	526 (100.0)
일반계	202 (44.0)	257 (56.0)	459 (100.0)
실업계	27 (21.4)	99 (78.6)	126 (100.0)
계	438 (39.4)	673 (60.6)	1111 (100.0)

6) 대화의 시간 필요성 여부

학교에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은 61.7%, 일반계 고등학생 55.8%, 실업계 고등학생의 44.9%는 부모와 학교 교사간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결과 부모와 학교 교사간 대화 시간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2) = 12.634$, $p < .01$, 학급급에 따라 대화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대화의 시간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고 있다.

<표 VI-8> 대화의 시간 필요성 여부

	대화의 시간 필요성		계
	있다	없다	
중학교	327 (61.7)	203 (38.3)	530 (100.0)
일반계	256 (55.8)	203 (44.2)	459 (100.0)
실업계	57 (44.9)	70 (55.1)	127 (100.0)
계	640 (57.3)	476 (42.7)	1116 (100.0)

6-1) 대화의 시간이 필요없는 이유

부모와 학교 교사간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중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 상관없이 그 이유를 ‘대화를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I-9> 대화의 시간이 필요없는 이유

	대화의 시간 필요없는 이유							계
	1	2	3	4	5	6	7	
중학교	92 (46.0)	46 (23.0)	7 (3.5)	4 (2.0)	3 (1.5)	12 (6.0)	36 (18.0)	200 (100)
일반계	117 (57.9)	32 (15.8)	8 (4.0)	5 (2.5)	0 (0.0)	18 (8.9)	22 (10.9)	202 (100)
실업계	28 (41.2)	9 (13.2)	2 (2.9)	4 (5.9)	0 (0.0)	7 (10.3)	18 (26.5)	68 (100.)
계	237 (50.4)	87 (18.5)	17 (3.6)	13 (2.8)	3 (0.6)	37 (7.9)	76 (16.2)	470 (100)

이 결과를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행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부모와 교사간의 만남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장 적게 만나고 있으며 만날 필요성도 가장 적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대화를 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와 부모의 신뢰와 이해심을 가장 원하므로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 여부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10%내외에 그쳤다. 빈도분석결과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2) = 14.53, p < .01$, 학급급에 따라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을 적게 인식하고 있다. 이 역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해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표 VI-10>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 여부

	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여부		계
	있다	없다	
중학교	49 (10.3)	428 (89.7)	477 (100.0)
일반계	70 (17.4)	333 (82.6)	403 (100.0)
실업계	8 (7.8)	94 (92.2)	102 (100.0)
계	127 (12.9)	855 (87.1)	982 (100.0)

8)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학생들은 5점 만점에 3.6을 넘었고 특히,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4.19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급을 불문하고 학생들은 모두 ‘효

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 방법'에 필요성을 가장 높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이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급별 변량분석 결과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학교급에 상관없이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보면, 학생들이 부모들과 갈등이 많다는 것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학교에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와의 갈등을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며, 부모와의 대화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잘 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와 가정의 적절한 연계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VI-11>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평가

	중학교	일반계	실업계	전체
올바른 양육방법	3.71 (1.13)	3.74 (1.21)	3.78 (1.09)	3.73 (1.15)
자녀발달과정이해	3.88 (1.10)	3.79 (1.07)	3.84 (1.10)	3.84 (1.09)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기술	4.00 (1.02)	4.09 (1.05)	4.09 (1.05)	4.05 (1.03)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	4.24 (0.95)	4.14 (1.01)	4.15 (1.07)	4.19 (0.99)
부부갈등해결방법	3.68 (1.25)	3.63 (1.25)	3.70 (1.17)	3.66 (1.24)
분노조절프로그램	3.83 (1.20)	3.77 (1.21)	3.86 (1.28)	3.81 (1.21)
청소년문제 예방/대처방법	3.79 (1.14)	3.68 (1.12)	3.74 (1.12)	3.74 (1.13)

9)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들 중에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중학생은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이 21.6%, 다

음이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19.5%) 그리고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18.8%)순이었고, 일반계 고등학생은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2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24.3%)이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과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방법(26.9%)이 가장 많았다. 빈도분석결과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12) = 23.217, p < .05$, 학교급에 따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와 앞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학생들이 부모와 갈등이 있으며 이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싶어하며, 대화하고 싶어하고 부모들이 자신들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VI-12>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평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계
	1	2	3	4	5	6	7	
중학교	67 (14.3)	91 (19.5)	88 (18.8)	101 (21.6)	32 (6.9)	58 (12.4)	30 (6.4)	467 (100)
일반계	59 (14.4)	60 (14.6)	110 (26.8)	100 (24.3)	23 (5.6)	42 (10.2)	17 (4.1)	411 (100)
실업계	14 (13.5)	8 (7.7)	28 (26.9)	28 (26.9)	11 (10.6)	11 (10.6)	4 (3.8)	104 (100)
계	140 (14.3)	159 (16.2)	226 (23.0)	229 (23.3)	66 (6.7)	111 (11.3)	51 (5.2)	982 (100)

- | | |
|-----------------------|----------------------|
| 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양육방법 | ②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
| ③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 | ④ 효과적인 부모자녀간 갈등해결 방법 |
| ⑤ 효과적인 부부갈등해결 방법 | ⑥ 분노(화)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
| ⑦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 | |

2. 학교 기능에 대한 실태

1)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라고 선택한 것은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은 역시 ‘학교성적문제’ 그리고 ‘진로문제’ 순이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진로문제’, ‘학교성적문제’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49.9%가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라고 학교성적 문제라고 했고, 진로문제(16.2%), 학교친구와의 갈등(11.7%), 학교의 교칙에 대한 부적응문제(7.2%) 순이었다. 일반계 고등학생 역시 47.3%가 학교성적문제라고 했고, 다음은 진로문제(29.6%),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6.9%) 순이었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진로문제(28.8%)가 가장 많았고, 학교성적문제(25.4%), 학교의 교칙에 대한 부적응문제(18.6%)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13.6%)순이었다.

<표 VI-13>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학교생활 중 가장 큰 문제 또는 스트레스								계
	1	2	3	4	5	6	7	8	
중학교	30 (5.8)	19 (3.7)	83 (16.2)	60 (11.7)	14 (2.7)	256 (49.9)	37 (7.2)	14 (2.7)	513 (100)
일반계	31 (6.9)	19 (4.2)	134 (29.6)	21 (4.6)	3 (0.7)	214 (47.3)	17 (3.8)	13 (2.9)	452 (100)
실업계	16 (13.6)	1 (0.8)	34 (28.8)	9 (7.6)	3 (2.5)	30 (25.4)	22 (18.6)	3 (2.5)	118 (100)
계	77 (7.1)	39 (3.6)	251 (23.2)	90 (8.3)	20 (1.8)	500 (46.2)	76 (7.0)	30 (2.8)	1083 (100)

- | | | |
|------------------------|--------------|----------|
| 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 | ② 학교선생님과의 갈등 | ③ 진로문제 |
| ④ 학교친구(동성 및 이성포함)와의 갈등 | ⑤ 학교폭력문제 | ⑥ 학교성적문제 |
| ⑦ 학교의 교칙에 대한 부적응문제 | ⑧ 기타 | |

2) 학교생활 중 문제나 고민 해결 노력 여부

학교에서 느끼는 문제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는가를 알아보는 문항에 대해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은 학교생활 중 겪게 되는 문제 또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56%, 일반계 고등학생의 60.6%,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56.4%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도분석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학교급에 상관없

이 학교생활에 많은 문제나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학교생활 중 문제나 고민 해결 노력 여부

	학교 생활 중 고민 해결노력여부		계
	있다	없다	
중학교	229 (44.0)	291 (56.0)	520 (100.0)
일반계	177 (39.4)	272 (60.6)	449 (100.0)
실업계	51 (43.6)	66 (56.4)	117 (100.0)
계	457 (42.1)	629 (57.9)	1086 (100.0)

학교생활에서 많은 문제나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 본 결과, 전체의 23.2%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18.8%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의 23.2%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라고 답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19.5%), 점차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18.5%) 순이었고, 일반계 고등학생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라고 답한 학생이 22.5%로 가장 많았고, 점차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18.5%),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19.5%) 순이었으며,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서라고 답한 학생도 13.9%에 이르렀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가 28.2%로 가장 많았고, 좋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므로(21.8%),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서(15.4%)의 순이었다. 빈도분석결과 학교생활 중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12) = 29.91, p < .05$, 학교급에 따라 고민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표 VI-15> 학교생활 중 고민해결 노력 않는 이유

	고민해결 노력 않는 이유							계
	1	2	3	4	5	6	7	
중학교	53 (17.5)	81 (26.8)	59 (19.5)	56 (18.5)	16 (5.3)	17 (5.6)	20 (6.6)	302 (100)
일반계	56 (20.0)	63 (22.5)	43 (15.4)	45 (16.1)	20 (7.1)	39 (13.9)	14 (5.0)	280 (100)
실업계	17 (21.8)	9 (11.5)	22 (28.2)	7 (9.0)	5 (6.4)	12 (15.4)	6 (7.7)	78 (100)
계	126 (19.1)	153 (23.2)	124 (18.8)	108 (16.4)	41 (6.2)	68 (10.3)	40 (6.1)	660 (100)

- | |
|--|
| ① 좋은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므로 ②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③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④ 점차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⑤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⑥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⑦ 기타 |
|--|

학생들은 학교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전체의 30.3%는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라고 답했고, 27.1%는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학생도 전체의 12.1%에 달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26.8%가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라고 답했고, 26.6%는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36.3%가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라고 답했고, 26.3%는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32.6%는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고, 22.1%는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학교 상담실을 회피하는 이유로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상담실을 이용해봤자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해, 학교상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편하게 만들고, 상담실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I-16> 학교상담실을 통한 상담회피 이유

	학교상담실을 통한 상담회피 이유							계
	1	2	3	4	5	6	7	
중학교	52 (12.9)	16 (4.0)	21 (5.2)	25 (6.2)	107 (26.6)	108 (26.8)	74 (18.4)	403 (100)
일반계	43 (11.7)	11 (3.0)	42 (11.4)	5 (1.4)	97 (26.3)	134 (36.3)	37 (10.0)	369 (100)
실업계	10 (10.5)	4 (4.2)	11 (11.6)	4 (4.2)	31 (32.6)	21 (22.1)	14 (14.7)	95 (100.0)
계	105 (12.1)	31 (3.6)	74 (8.5)	34 (3.9)	235 (27.1)	263 (30.3)	12m (14.4)	867 (100)

- | | |
|---------------------------|----------------------|
| ①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 ② 문제학생이라고 낙인찍힐 것 같아서 |
| ③ 학교에 상담전문가가 없어서 | ④ 담임선생님에게 알릴 것 같아서 |
| ⑤ 문제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⑥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
| ⑦ 기타 | |

3) 학교상담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상담실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은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36%), ‘일단 한 번씩은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받아 봐야 한다’(22.1%), ‘상담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하다’(18.9%)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중학생과 비슷하게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일단 한 번씩은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받아 봐야 한다’(27.2%),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21.9%), ‘상담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하다’(20.8%)의 순으로 선택하였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일단 한 번씩은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받아 봐야 한다’(30.1%), ‘상담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하다’(21.1%),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20.3%)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도분석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상담실

활성화방안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12)=45.625$, $p<.001$, 학교급에 따라 학교상담실 활성화 방안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학생들은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일단 한 번씩은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받아보아야 한다’, ‘상담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VI-17> 학교상담실 활성화 방안

	학교 상담실 활성화 방안							
	1	2	3	4	5	6	7	
중학교	191 (36.0)	100 (18.9)	51 (9.6)	117 (22.1)	16 (3.0)	37 (7.0)	18 (3.4)	530
일반계	100 (21.9)	95 (20.8)	90 (19.7)	124 (27.2)	12 (2.6)	22 (4.8)	13 (2.9)	456
실업계	25 (20.3)	226 (21.1)	17 (13.8)	37 (30.1)	5 (4.1)	8 (6.5)	5 (4.1)	123
계	316 (28.5)	221 (19.9)	158 (14.2)	278 (25.1)	33 (3.0)	67 (6.0)	36 (3.2)	110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② 상담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③ 상담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④ 일단 한 번씩은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받아보아야 한다 ⑤ 상담실이 학교밖에 위치해야 한다 ⑥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⑦ 기타 |
|---|

4) 학교에서 문제나 고민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학생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장래의 진로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36.5%)하였고, 그 다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20%)을 선택하였다. 학교급별로도 이 순위에 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은 역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8> 학교에서 문제나 고민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문제나 고민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계
	1	2	3	4	5	6	7	8	9	10	
중학교	83 (15.8)	103 (19.6)	172 (32.7)	24 (4.6)	12 (2.3)	26 (4.9)	13 (2.5)	16 (3.0)	73 (13.9)	4 (0.8)	526
일반계	48 (10.6)	96 (21.1)	181 (39.9)	50 (11.0)	10 (2.2)	14 (3.1)	9 (2.0)	7 (1.5)	34 (7.5)	5 (1.1)	454
실업계	21 (17.1)	22 (17.9)	50 (40.7)	6 (4.9)	7 (5.7)	2 (1.6)	4 (3.3)	4 (3.3)	5 (4.1)	2 (1.6)	123
계	152 (13.8)	221 (20.0)	403 (36.5)	80 (7.3)	29 (2.6)	42 (3.8)	26 (2.4)	27 (2.4)	112 (10.2)	11 (1.0)	110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사소통,의사결정,대화방법 등) ②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③ 장래의 진로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④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아정체감 확립 프로그램 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⑥ 비슷한 문제를 가진 또래친구와의 집단상담 ⑦ 온라인상담실 개설 ⑧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⑩ 기타 |
|--|

5) 정규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수강여부

인생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정규프로그램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자기통제력, 갈등해결방법, 자기효능감, 효과적 의사소통방법, 효과적 문제해결방법, 효과적 의사결정방법, 공감능력 증진방안, 및 스트레스대처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에 상관없이 80%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8.2%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지 범죄에 대한 법 교육만이 전체 평균 37%정도가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이를 교육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교육’에 대해 전체 학생의 77.4%,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6.6%, 일반계 고등학생의 78.3%, 실업계 고등학생의 78%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눈앞의 만족을 참을 수 있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2.3%,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8.9%, 일반계 고등학생의 85.2%, 실업계 고등학생의 85.8%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5.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3.4%, 일반계 고등학생의 87.6%, 실업계 고등학생의 82.7%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77.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7.3%, 일반계 고등학생의 76.5%, 실업계 고등학생의 82.7%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0.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9.6%, 일반계 고등학생의 80.4%, 실업계 고등학생의 85.0%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1.9%,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9.0%, 일반계 고등학생의 85.9%, 실업계 고등학생의 79.5%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다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79.6%,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78.3%, 일반계 고등학생의 80.2%, 실업계 고등학생의 82.7%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범죄란 무엇인가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63.0%,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60.2%, 일반계 고등학생의 65.4%, 실업계 고등학생의 66.1%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 증진방안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5.9%,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4.2%, 일반계

고등학생의 89.3%, 실업계 고등학생의 80.3%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88.2%,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86.3%, 일반계 고등학생의 91.1%, 실업계 고등학생의 85.8%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빈도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급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은 학과 공부이외에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학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3점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엄격한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엄격한 학교교칙,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학교상담실, 진로교육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엄격한 학교교칙, 학생인권보장, 학생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활동별로 살펴보면, 입시위주학교교육, 폭력서클처리방법, 학교상담실, 경쟁적 인간관계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학교급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간에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엄격한 학교교칙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면 중학생의 만족도가 유의미하였다. 특기/적성교육, 학생인권보장, 진로교육 및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

생,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간의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VI-19> 학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

	학교활동에 대한 만족도			계	F
	중학교	일반계	실업계		
입시위주학교교육	2.52 ^a (1.02)	2.27 ^b (1.08)	2.51 ^{ab} (0.95)	2.42(1.05)	7.927***
엄격한 학교교칙	2.16 ^a (1.03)	2.09 ^{ab} (0.98)	1.89 ^b (0.99)	2.10(1.01)	3.859*
폭력서클처리방법	2.85 ^a (1.13)	2.66 ^b (0.95)	2.72 ^{ab} (1.03)	2.76(1.05)	4.064*
특기/적성교육	3.18 ^a (1.08)	2.67 ^b (1.05)	2.91 ^b (1.09)	2.94(1.09)	27.877***
학교상담실	2.87 ^a (0.99)	2.47 ^b (0.89)	2.69 ^{ab} (1.00)	2.69(0.97)	22.100***
경쟁적 인간관계	2.80 ^a (1.04)	2.46 ^b (0.95)	2.63 ^{ab} (0.94)	2.64(1.01)	15.012***
학생자치활동	3.25 ^a (1.16)	2.97 ^b (1.04)	2.60 ^c (1.21)	3.06(1.14)	20.114***
학생인권보장	3.05 ^a (1.20)	2.61 ^b (1.08)	2.48 ^b (1.16)	2.80(1.17)	23.069***
인성교육	3.06 ^a (1.04)	2.67 ^b (0.94)	2.65 ^b (0.96)	2.85(1.01)	21.031***
진로교육	3.15 ^a (1.10)	2.57 ^b (1.01)	2.63 ^b (1.16)	2.85(1.10)	37.765***
학급당 학생 수	3.10 ^a (1.06)	2.92 ^b (1.06)	3.05 ^{ab} (1.03)	3.02(1.06)	3.636*
사회참여프로그램	2.87 ^a (1.01)	2.58 ^b (0.90)	2.60 ^b (0.97)	2.72(0.97)	11.822***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7) 즐거운 학교생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18.9%), ‘선생님의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17.0%),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13.4%)순으로 응답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27.7%),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14.3%),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13.2%)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18.0%) 및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16.4%),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15.6%)를 들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서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입시위주교육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20> 즐거운 학교생활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즐거운 학교생활											계
	1	2	3	4	5	6	7	8	9	10	11	
중학교	100 (18.9)	90 (17.0)	51 (9.6)	71 (13.4)	39 (7.4)	10 (1.9)	68 (12.9)	61 (11.5)	14 (2.6)	18 (3.4)	7 (1.3)	529 (100)
일반계	60 (13.2)	48 (10.5)	65 (14.3)	126 (27.7)	45 (9.9)	7 (1.5)	40 (8.8)	31 (6.8)	13 (2.9)	7 (1.5)	13 (2.9)	455 (100)
실업계	19 (15.6)	13 (10.7)	20 (16.4)	22 (18.0)	19 (15.6)	3 (2.5)	3 (2.5)	15 (12.3)	1 (0.8)	2 (1.6)	5 (4.1)	122 (100)
계	179 (16.2)	151 (13.7)	136 (12.3)	219 (19.8)	103 (9.3)	20 (1.8)	111 (10.0)	107 (9.7)	28 (2.5)	27 (2.4)	25 (2.3)	1106 (100)

- ①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 ② 선생님의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 ③ 특기 / 적성 교육의 활성화
 ④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 ⑤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학교교직의 개정 ⑥ 학교상담실의 활성화
 ⑦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친밀감 증진 ⑧ 학생자치,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⑨ 협동학습의 활성화
 ⑩ 선후배간의 후견인제도 활성화 ⑪ 기타

8) 교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가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Liket형의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몇 가지 역할에 대한 중학생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3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알도로 도와주는 역할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생들 평가 평균은 2.45,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2.47 그리고 중학생들은 2.74점으로 나타나 매우 낮았다. 특히 각 역할에 대한 차이검증을 해 본 결과 모든 역할에 대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VI-21> 교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중학생	일반계	실업계	전체	F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	2.74 ^a (1.08)	2.47 ^b (0.98)	2.45 ^b (1.01)	2.60 (1.05)	9.80, ^{***}
경쟁보다는 협력하도록 격려하는 것	2.88 ^a (1.06)	2.55 ^b (0.93)	2.63 ^b (1.00)	2.71 (1.01)	14.00, ^{**} *
학생들 서로서로 결속력을 키워주는 것	2.96 ^a (1.06)	2.69 ^b (0.94)	2.64 ^b (1.02)	2.81 (1.02)	10.83, ^{**} *
학교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	3.07 ^a (1.11)	2.82 ^b (0.97)	2.72 ^b (1.01)	2.93 (1.05)	9.68, ^{***}
교실에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	3.12 ^a (1.13)	2.83 ^b (1.00)	2.72 ^b (1.08)	2.96 (1.08)	12.69, ^{**} *
학생들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	2.93 ^a (1.08)	2.71 ^b (0.99)	2.61 ^b (0.97)	2.80 (1.04)	8.08, ^{***}
학생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	3.00 ^a (1.11)	2.72 ^b (1.00)	2.68 ^b (0.93)	2.84 (1.05)	10.43, ^{**} *
학생들의 고민을 친절히 상담해 주는 것	2.89 ^a (1.19)	2.51 ^b (1.01)	2.57 ^b (0.98)	2.70 (1.11)	16.11, ^{**} *
남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	2.91 ^a (1.10)	2.55 ^b (1.00)	2.52 ^b (0.95)	2.71 (1.06)	16.91, ^{**} *
특별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	2.98 ^a (1.13)	2.72 ^b (1.06)	2.59 ^b (1.04)	2.83 (1.10)	10.76, ^{**} *

* $p < .05$, ** $p < .01$, *** $p < .001$,

† 첨자가 다른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이 결과는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과목위주의 지도만할 뿐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9) 학교에서 부모참여프로그램 시행 여부

학교에서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학교급을 불문하고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빈도분석결과, 학교급별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VI-22> 학교에서 부모참여프로그램 시행 여부

	부모참여프로그램 시행여부		계
	시행	무시행	
중학교	39 (7.5)	484 (92.5)	523 (100)
일반계	20 (4.4)	436 (95.6)	456 (100)
실업계	5 (4.3)	111 (95.7)	116 (100)
계	64 (5.8)	1031 (94.2)	1095 (100)

10) 반별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별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와 부모간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교 홈페이지 및 반별 홈페이지가 있으나 이를 교사와 부모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이용하는 학교는 드물었다. 빈도분석결과 반별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chi^2(2) = 13.477$, $p < .01$,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았다.

<표 VI-23> 반별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

	반별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		계
	예	아니오	
중학교	57 (11.3)	447 (88.7)	504 (100)
일반계	26 (5.8)	421 (94.2)	447 (100)
실업계	4 (3.4)	113 (96.6)	117 (100)
계	87 (8.1)	981 (91.9)	1068 (100)

학생들은 반별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간의 상담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중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서’(24.7%)와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만을 이용해서’(24.5%)라는 순이었으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만을 이용해서(24.7%)’와 ‘교사들이 관심이 없어서’(16.5%)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28.9%)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이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서’(20.7%)를 들었다. 빈도분석결과 반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10) = 43.432$ $p < .001$.

<표 VI-24> 반별 홈페이지 비활성화 이유

	반별 홈페이지 비활성화 이유						계
	부모무관심	부모컴맹	홈 몰라	교사무관심	가정통신문	기타	
중학교	115 (24.7)	61 (13.1)	64 (13.8)	48 (10.3)	114 (24.5)	63 (13.5)	465 (100)
일반계	66 (15.8)	58 (13.7)	49 (11.8)	69 (16.5)	103 (24.7)	73 (17.5)	417 (100)
실업계	25 (20.7)	35 (28.9)	10 (8.3)	12 (9.94)	16 (13.2)	23 (19.0)	121 (100)
계	206 (20.5)	153 (15.3)	123 (12.3)	129 (12.9)	233 (23.2)	159 (15.9)	1003 (100)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및 개인 관련 요인들을 밝히고 이들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 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가족의 정서적 지지 등 지지적 가정분위기,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통제 및 감독, 그리고 학교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 학교를 공부만을 강요하는 불쾌한 장소가 아닌 청소년기를 유익하고 폭넓게 보내며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쾌한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가정 내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처전략 훈련이나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 등을 제시하였고, 정책적으로는 사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과 지원, 청소년업무의 소관부처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가정과 학교의 상호 접촉 또는 연계교육 그리고 학교상담 등을 비롯한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과과목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즉 부모와 교사간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프로그램이나, 자아정체감, 자기통제력, 갈등해결방법, 자기효능감, 효과적 의사소통방법, 효과적 문제해결방법, 효과적 의사결정방법, 공감능력증진방안 및 스트레스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뿐 조사결과, 실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역시 학교급을 불문하고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사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중요한지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방법을 알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정과 학교에 연계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VII. 가정·학교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 현황

1. 국내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2. 외국의 주요 정책동향과 사례분석
3. 정책 시사점

VII. 가정·학교중심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 현황

1. 국내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1) 국가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 개관

(1)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18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각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는 <표 VII-1>과 같다. 이중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구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활동복지단과 청소년보호단, 그리고 각 시도 청소년과가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 문제행동을 규율하거나 예방적 개입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가 다원화되어 있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각 부처마다 청소년관련 소관법률 속에 분산·규정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 법률로는 법무부 소관법률인 『소년법』을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의 4대 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다. 이 밖에 법률적용 대상 일부가 청소년에 관련된 『평생교육법』, 『고용정책기본법』, 『산업인력관리공단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서도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특별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점적 개입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청소년(주로 빈곤청소년), ② 범죄 또는 문제행동을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비행, 가출, 약물, 학교부적응 등), ③ 폭력

이나 학대, 방임 등의 피해청소년(성폭력 및 성매매 포함) 등이다.

<표 VII-1> 행정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부 처	업 무 내 용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 총괄 및 조정, 청소년 참여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청소년건전화의 육성·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심의 및 단속 등
통 일 부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 통일교육시범학교 지원
과학기술부	청소년과학 경진대회, 과학동산, 과학캠프 등
외교통상부	한일대학생 교류, 한일청소년 네트워크 포럼, 한·아세안 청소년교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등
재정경제부	청소년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법 무 부	비행·보호관찰대상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여성가족부	여학생 과학친화 프로그램 시범교육, 성매매 관련 여자청소년 지원 사업
국 방 부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생활지도, 교류·교환 학습, 도·농 교류 체험학습, 학교 성교육 활성화 등
산업자원부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지정 지원
정보통신부	PC통신, 인터넷상의 공개정보 모니터링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사업, 건전한 정보유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환 경 부	청소년 환경교육·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장 지원, 시설보호아동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노 동 부	근로청소년문화생활 지원,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등
경 찰 청	청소년선도단체 지도 감독,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대책 등
농촌진흥청	농촌청소년조직 육성(4-H), 농촌청소년(4-H)수련활동
산 림 청	녹색수업, 푸른숲선도원 선발 육성

출처: 2005 청소년 정책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표 VII-2> 위기청소년 지원관련 부처별 세부사업

부처	대상	목적	지원업무명	업무 내용	관련기관 및 단체	관련 법령
국가청소년위원회	위기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 쉼터지원	가출청소년 보호환경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시도 16개 쉼터, YMCA 쉼터, 그 외 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공부방지원	빈곤지역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공부방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운영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보호법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특기적성교육, 생활지도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방과후 활동을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지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상담/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위기가능청소년의 예방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해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유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청소년대상 one-stop 서비스 제공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24시간 긴급상담전화 및 긴급구조 업무 - 지역별 위기청소년지원협의회 운영 예정 - 유관지원서비스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자체 드랍인센터 운영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및 시군구상담센터	청소년 기본법
보건복지부	결손 가정 및 보호 청소년	복지증진	지역아동 센터사업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비용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월200만원씩	
			아동학대 예방사업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검사, 현장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전국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 복지법
			공동생활 가정지원	가정 없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제공 및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 가정에 일정 비용 제공	58세대(약400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빈곤문화의 세습화를 방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전국 청소년 자활지원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대안학교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특성화 고교에 인건, 운영, 시설비 등 제공	특성화고등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	초·중등 교육법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당 인력, 사업, 시설비 지원	6개 광역시 15개 지역교육기관내 유관아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및 지원	학력필요자에게 학력취득기회 제공해주기 위해 관련학교에 교육비, 교사인건비 등 지원	43개 학교	평생 교육법
노동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용촉진 및 근로보호	고용안정 센터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및 직업지도와 상담을 통한 고용촉진을 위해 인턴채용기업에게 비용지원하고, 연수참여 청소년에게 수당지급	인턴채용기업 4,509개소	
		직업전문 학교지원	취업희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기간산업기능사 양성을 위해 직업전문학교에게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등 지원	직업전문학교	
여성가족부	성매매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성매매피해 여자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18세 미만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지원시설 17개소에 운영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지원	청소년지원시설	
법무부	범 죄 청소년 교정선도	소년분류 심사원	비행원인 진단을 통한 비행 감소를 위해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내에서 활동	4개 분류심사원 및 7개 소년원내 대행소	소년법 소년원법
		소년원 학교	비행청소년의 특성화 교육을 통한 재비행방지를 위해 소년원학교 운영	15개 소년원 학교	보호 관찰법
		중간처우시설	소년원학생 및 퇴원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 운영	중간처우시설 중 한국갱생 보호공단	
		보호관찰소	보호관찰활동을 위해 보호관찰소 및 전국지소 35개소 운영	보호관찰소 12개소, 전국지소 23개소 운영	

출처: 2005 국제심포지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국제적 동향 및 정책적 과제 자료

최근, 정부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을 위협받고 나아가 문제행동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가능)청소년(youth at-risk)”⁸⁾이라고 칭하고,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개발 및 보호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업무와 개입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위기(가능)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노동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이 있으며, 각 부처의 고유기능에 따라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부처별 세부사업은 <표 VII-2>와 같다(청소년위원회, 2005:31-33). 주요 정책내용을 보면, 범죄청소년 교정 및 선도재활을 위한 처우방법 및 보호관찰제도의 확충, 빈곤 및 유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보육·가정지원정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구축, 그리고 가정 및 학교에서 이탈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가출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마련,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해밀 센터 및 대안학교, 고용안정 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설립 등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통해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의 현실과 한계

전반적으로 볼 때,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파편화되면서, 정작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체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청소년 정책과 연관된 국가 행정시스템은 매우 광범위하게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 법

8) 최근 “위기청소년”이란 용어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83)가 증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현재는 파괴적 이탈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심리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가능)청소년이라 한다(구본용, 2005).

체계 및 대응정책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시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분히 짜집기식 또는 대중요법식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에 기인한 바 크다.

첫째,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철학과 패러다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본철학의 부재는 여러 영역 및 기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입법적 방향(a clear legislative direction)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원칙의 명확성 부족은 국가책임의 중요성, 청소년 보호와 육성,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 및 권리 등 다양한 관점과 원칙들이 상충할 경우, 우선성의 관점에서 실질적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최근 “학교폭력대책”을 둘러싼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 상충 및 접근방식의 상이성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행정부처의 기능과 업무성격에 따라 정책목표가 각기 재해석되고, 관련 입법들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와 원칙들 간에 순위가 없음으로 인하여, 때론 각 부처간 관련정책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인 양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을 둘러싼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관련 NGO등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방안을 보면, 시각차이가 너무 커서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다기관간 실무규약(protocols)]조차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기본철학 부재의 논리적 귀결로서, 통합적인 행정조직체계 및 업무전문성의 미비가 정책추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기구의 분리, 잦은 조직개편 등으로 18개 부처에 산재한 아동·청소년 정책추진체간의 유기적 연계협력 및 체계적 정책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통합적인 행정조직체계의 부재는 다기관 협력 및 연계체계의 구축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업무가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동시에 전문직 간 업무협조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지방차원에서는 전담부서의 미비 및 집행체계와의 불일치, 특히 지방의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타 분야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수행을 떠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 등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할 조직이나 실무인력을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참여가 결여된 정책결정과정 및 프로그램 성격상의 한계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책결정자의 중심으로 단편적·시혜적 성격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둔 보호·지원프로그램은 가정 및 학교 등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시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가정 및 학교 중심의 정책방안 또는 각 영역 간 연계체계 구축방안은 상대적으로 덜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주된 이유로는 ① 가정과 학교라는 생활영역은 각기 전통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일차적 사회화기관으로서 그 내재적 기능성과 고유한 책무 때문에, 두 영역은 이미 개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다루는 핵심기관이라는 선형적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② 통합적인 법체계 및 조직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관련정책 개발이 단위행정기구(국가청소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가정’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리고 ‘학교’관련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목적사업과 고유기능에 비추어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은 다소 주변적 사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가 예전만큼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가정과 학교 등 일차적 생활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만들기” 운동이 새로운 정책적 아젠더가 되었고, 또한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관한법률] 및 2005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5개년계획수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가정과 학교는 국가정책의 대상이자 실천의 주체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 가정 중심의 관련 정책 현황

(1) 부모교육 및 가정상담 관련 정책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가정이다. 그러나 가정이 그 일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와 사회가 가정을 지원하여 그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본용 등(2005)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연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부모가 요구하는 지원내용은 경제적 지지보다는 “조언이나 정보제공 혹은 심리상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가들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지원과는 별도로, 모든 가정에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각종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정중심 정책으로서 “부모교육” 및 가정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시행실태는 어떠한가?

가) 청소년상담원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기본 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생활태도, 건전한 가치관 등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것은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과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관광부는 1993년부터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통하여 전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계 원로들에 의한 부모교

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전국적으로 약 500명의 부모교육 교수요원을 양성·위촉하였으며, 현재 5종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전국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1993년-2003년까지 약 23만5천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청소년 백서, 2004:418-421).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실과 학교 등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단행본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를 2003년에는 [1분이면 마음이 열립니다]를 제작·배포하였다(청소년 백서, 2004:419).

나) 보호관찰소를 통한 범죄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89년 7월 서울보호관찰소를 개청하게 되면서 정식 보호관찰 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년범, 사회보호법상 기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의 가족 혹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는 청소년상담, 가정폭력상담, 약물상담, 성폭력상담, 성매매상담 등이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로부터 심층적인 상담을 받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 성향을 교정하고자 보호관찰(지)소내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가족상담

1956년 8월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창립하여 1966년 8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에는 국내에 3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도 6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법률구조활동을 비롯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가족 혹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별거·이혼가정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녀동반 일일캠프(별거 및 이혼가정 여성들의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법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문제를 전문교육강좌와 캠프라는 공통의 장에서 이해·지지를 모색하는 프로그램), ②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한 워크숍(결혼에 대해 바로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 강좌), ③ 가정폭력행위자와 배우자를 위한 “행복찾기 부부캠프”(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 및 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 위탁된 행위자에 대하여 6개월 상담프로그램 중의 한 단계로서 부부관계 회복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된 부부캠프) 등이 있다.

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피해청소년 부모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 하는 여성들이 모여 개소하였다. 성폭력 피해여성들과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모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하여 위기자녀를 돕고 더 이상의 문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폭력 피해청소년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마) 부모교육 현실과 한계 : 정책시사점

위기가정의 기능적 특성을 기초로 할 때, 무엇보다도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훈육방법과 의사소통방법, 문제관리 능력의 신장 및 부부갈등의 해소와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포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부모교육은 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고위험군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위기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부모교육이 시급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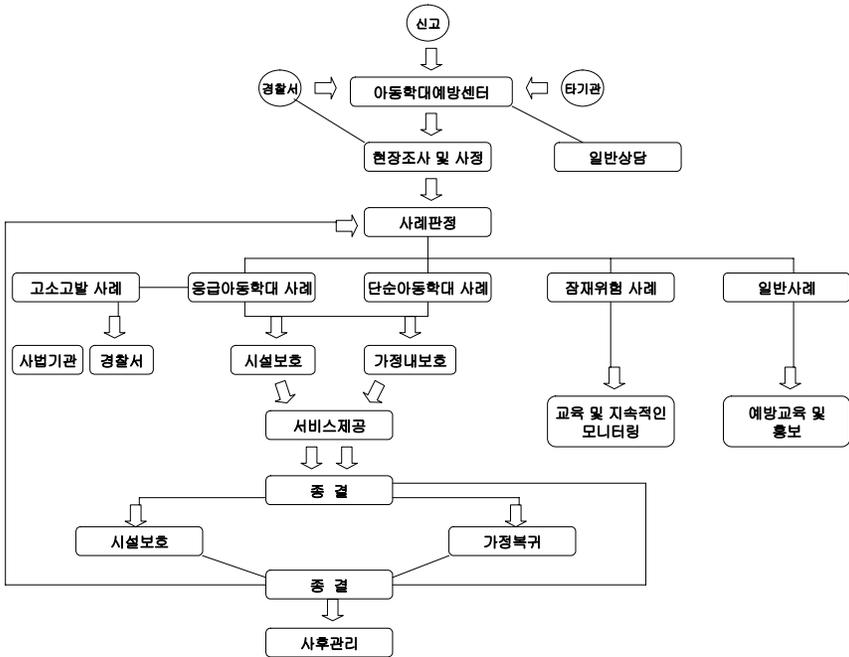
요구되는 비행 및 문제청소년의 부모들은 현재 열악한 경제상황 또는 자신도 학대의 대상이었거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여, 부모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의 동기부여가 어려운 부모들을 어떻게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최근 영미권의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 제도를 통해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해 볼 수 있다.

(2)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정책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된 2001년도 아동학대의 발생실태를 보면, 총 2,105건 중에서 단일학대가 70.4%였고, 중복학대가 29.6%였다. 단일학대 중 방임이 67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476건(22.6%), 정서적 학대가 114(5.4%), 성학대 86건(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외, 2002:31-37). 최근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증가는 가정내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을 불러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해체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보지 않은 방임·유기율은 20%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가정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체벌허용도가 높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외면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점차 인권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발달상 문제를 겪는 율이 높고, 폭력의 학습으로 비행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아동인권보호와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의 관점에서 아동학대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 1월 한국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에 정책적 개입기초를 마련하였다.

가) 아동학대예방 개입서비스를 통한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이 프로그램의 법적 기초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의 [그림 VII-1]과 같다.



[그림 VII-1] 아동학대예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아동학대예방사업 목적은 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②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③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 제공, ④ 피해아동의 위기가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개입서비스 내용은 첫째, 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에 대한 개입으로서 집중적인 가족보존 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학대예방교육, 가

족상담, 소아과·소아정신과 진료,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알코올 및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상담·지지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둘째, 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로서 심리검사, 개별치료(Individual Therapy), 놀이치료(Play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집단치료(Group Therapy), 교육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차원의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정책제언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1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서 아동양육의 어려움과 학대의 위험이 높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십대 예비부모와 미혼모,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등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인식증진 프로그램, ② 태도개선 프로그램(사회적응기술훈련, 자긍심 강화, 소속감 강화, 상담 등), ③ 행동개선 프로그램(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 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훈련 등), ④ 환경개선 프로그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와 후원자발굴을 통한 소득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서비스 연계 등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⑤ 가정방문서비스(outreach) (일종의 출장서비스로서 가정에 필요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양면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지역사회의 영양사와의 팀 접근법으로 실시) 등이 있다. 이밖에 상담프로그램으로서, ① 학대부모 대상 개인 및 집단치료, ② 알코올·약물남용문제 상담, ③ 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다) 아동학대 개입정책의 한계 : 정책시사점

제도적 상징성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위기

개입 실천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정책은 주로 이미 노출된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사전예방적 대책에는 소홀하며, UN아동권리협약과 기준에 배치되는 국내법규들의 개정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광범위한 발생율과 아내구타와 아동학대간의 중복현상에 시선을 돌려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다루는 현행 법제도(가정폭력관련법과 아동복지법)는 매우 행정편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 가정폭력의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복현상의 규모가 50-6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중층성을 감안할 때, 아내구타 사건이 신고 되었을 때, 또 다른 유형의 학대(아동학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는 개입전략과 실천과정들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 법률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형사실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가정에서 학대, 방임 또는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유로 인하여, 친권이 제한되어야 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일시 격리되어야 함이 필요할 때, 이를 신속하게 강제할 규정이 없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법원에 친권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시급하게 청소년과 그 가족을 일시 격리하여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법원의 선고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43-48).

(3) 새로운 가족문화형성 정책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부)

건강가정기본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 2006년 8월 현재 전국에 3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

강가정사를 배치하여 아동양육, 노인부양, 부부관계, 의식주생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및 부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나)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 문화조성(계획)

2006년 6월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제시된 가족정책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중요한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가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표명하였다. 그 주된 방향은 (1)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완화 지원정책, (2)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 문화의 조성, (3) 방과후 아카데미(공부방) 등 일과 가정 양립의 환경조성에 있다. 전반적으로 그 방향은 ‘가정’의 약화된 보호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가족단위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친밀한 가족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가족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문제 유형별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인력 양성, 서비스 연계구축

○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 다양한 가족형 여가 프로그램 개발
- 가족형 관광 인프라 구축
- 문화예술체험, 생태체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여가 활성화 지원
- 한 부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취약가족의 복지관광 지원

○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 지역의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을 부모와 자녀, 이웃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가족친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가족친화 마을 인증체계 마련 및 홍보강화

3) 학교 중심의 관련 정책 현황

(1) 학교폭력 종합대책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학교폭력관련 민간단체가 설립된 1995년부터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 요구되었고, 특히 학교와 일선교사들의 높은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5년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 왔지만, 학교폭력 발생은 2002년까지 뚜렷이 줄어들지 않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4.1.29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제반정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수행할 토대가 마련되었다.⁹⁾

정부의 학교폭력의 기본 방침은 과거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무조건 감추려는 경향을 반성과 함께 문제를 노출시켜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목표는 안전하고 활기찬 배움의 공동체 구현에 두고, 그 방향은 첫째, 폭력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둘째, 인성교육의 강화와 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으로 근본적 해결을 강구하며, 셋째, 폭력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자율역할 강화에 두고 있다고 한다(김학일, 2005: 56).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사회 속의 학교(schools in community)’에서 ‘학교 속의 지역사회(community in schools)’-지역사회의 열린 기반으로서

9) 김학일 (2005. 12),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과 정부의 역할”,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참조.

의 학교-관점에서의 전환과 더불어 참여와 자치의 원리를 기조로 삼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은 1995년부터이다. 국무조정실의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한 것은 1997년부터였다. 그 간에 추진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앞서의 <표 VII-3>과 같다.

<표 VII-3> 행정부처별 학교폭력 관련 추진내용

<p>□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추진·평가('9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학교폭력 추방 추진체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본부(교육부),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반(교육청), 학교폭력 추방위원회(학교) ○ 행정자치부 :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 및 지도 강화 ○ 문화관광부 : 청소년 육성관련 법정비 및 영상물 등급 심사와 청소년 상담체제 강화 ○ 정보통신부 : 사이버 유해환경 정화 노력 ○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보호관련 법정비 및 다양한 계도 추진 ○ 대검찰청 : 학교담당 검사제 및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 운영 ○ 경찰청 : 학교담당경찰관제 시행, 어머니경찰대 및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주변 순찰 강화 등 <p>※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지역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 검찰청 및 경찰청(서)·청소년단체 등이 참가하는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 구성·운영('03.8)</p>
--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2005년 3월 28일자 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의 [4대폭력추방종합대책], 2005년 2월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및 관련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 2006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성과 및 '06년도 중점추진계획(안)] 등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학교폭력을 매년 5%씩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존 학교 중심적 접근방법이 아닌 학교-교육청-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유기적 연계체계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 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성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일진회 등 불량씨클의 실태파악 및 해체방안을 마련, 2005년 9월 29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회를 통하여, 확인사항을 토대로 2005년 10.14-28일까지 불량씨클 45개를 해체시켰다(표 IV-10 참조).

②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시민단체, 의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면서, 상담자원봉사자의 지원을 통한 교내순찰, 상담실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③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폭력신고 및 상담망 구축을 위하여, 1588-7179(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 184개 지역교육청별 관리) 및 16개 시·도교육청별 HOT-LINE 관리하고, 학교별 전화 및 사이버 신고상담망 구축, 사이버경찰청의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및 전국 경찰서·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신고센터(247개) 운영,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긴급전화 1388 등의 재편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④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원특별연수(10,379명)를 실시('02)하였고, 일선학교의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 업무 및 교육 매뉴얼로 활용가능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03~, 초·중·고용), 학교폭력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03, 교사용·학생용·학부모용), ‘폭력을 피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수칙’ 등 108종 개발·보급('02)을 추진하였다.

⑤ 그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현황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은 다음의 <표 VII-6> <표 VIII-7>과 같다.

<표 VII-5>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와 교육 현황

조치 및 교육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교내 봉사	7518명	6895명	4588명	5167명	4627명
사회 봉사	2755	2961명	1754명	1807명	1628명
특별 교육	985명	1169명	786명	705명	692명

<표 VII-6>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04. 8.15-12.15:4개월)

심리상담 및 조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조치
4,158건	111건	85건	10건	119건	227건

⑥ 다음의 <표 VII-8>은 학교폭력 5개년기본계획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5개영역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예방교육 및 연수강화, 피해자 구제, 가해자 선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전 교원의 상담 및 생활지도 요원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선학교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모든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설치비율: '05 100%)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선임 및 승진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예방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2005. 9. 1.부터)하여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담당센터 등과 유기적 연계 및 사이버 상담체계를 갖추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김학일, 2005:58-59).

<표 VII-7>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업무별 주관부처 및 추진일정

주요 추진 과제	과제 번호	세부 추진 과제	주관 부처 (협조)	추진 일정					
				'05	'06	'07	'08	'09	'10이후
1. 학교 폭력 예방 · 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1-1	법정부 차원의 『학교 폭력 대책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교육부 (관계부처단체, 전문가 등)	■	■	■	■	■	■
	1-2	지역단위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 운영 활성화	교육청 (관계기관 등)	■	■	■	■	■	■
	1-3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전담부서 설치·운영	교육청	■	■	■	■	■	■
	1-4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	■	■	■	■	■
	1-5	경찰주관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내실화	경찰청	■	■	■	■	■	■
	1-6	지역 사회내 폭력예방 협력망 운영	청보위	■	■	■	■	■	■
2. 학교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2-1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체험중심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문광부, 교육청, 학교	■	■	■	■	■	■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경찰청, 교육청, 학교	■	■	■	■	■	■
	"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여성부, 교육청, 학교	■	■	■	■	■	■
	"	첨단 정보통신의 건전한 이용 교육 강화	교육부, 정통부, 교육청, 학교	■	■	■	■	■	■
	"	학부모 교육 실시	교육부, 문광부, 청보위, 교육청, 학교, 민간단체	■	■	■	■	■	■
	2-2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정비	교육부, 문광부, 여성부, 청보위, 경찰청, 교육청, 학교	■	■	■			
	"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교육부, 문광부, 검찰청)	■	■	■	■	■	■

주요 추진 과제	과제 번호	세부 추진 과제	주관 부처 (협조)	추진 일정						
				'05	'06	'07	'08	'09	'10이후	
2.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2-3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상담의 입체적 지원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풀(Pool) 구성·활용	교육청	■	■					
	"	상담전문가 지원 등을 통한 상담 활성화	교육부, 문광부 교육청	■	■	■	■	■	■	■
	"	학교별 상담실 운영 내실화	교육청, 학교	■	■	■	■	■	■	■
	"	관련 전문 연구단(회) 구성·운영	교육부 (관계부처 등)	■	■	■	■	■		
	"	현장 교원 중심의 연구회 구성·운영	교육청, 학교	■	■	■	■	■	■	■
	2-4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	학교폭력 예방·근절 시범학교 운영	교육청 (학교)	■	■	■	■	■	■	■
	"	YP(Youth Patrol) 시범학교 운영 활성화 추진	청보위 (교육청, 학교)	■	■					
	2-5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교육부, 경찰청 (관계부처, 학교 등)	■	■	■	■	■	■	■
	2-6	추진상황 평가의 내실화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평가	교육부	■	■	■	■	■	■	■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 점검단 주관 기관 평가	청보위		■		■				
"	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	교육청	■	■	■	■	■	■	■	
3.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전문 능력 제고	3-1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강화								
	"	교원연수 강화	교육부, 교육청, 학교	■	■	■	■	■	■	■
	3-2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교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	학교 폭력책임교사에 대한 표창 및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교육부, 교육청	■	■	■	■	■	■	■
	"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교육부 (교육청)	■		■		■		

주요 추진 과제	과제 번호	세부 추진 과제	주관 부처 (협조)	추진 일정						
				'05	'06	'07	'08	'09	'10이후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4-1	피해학생 치료·재활 지원								
	"	피해자 치료·재활 방안 강구	교육부 (관계부처단체전문가, 교육청, 학교)							
	4-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	비행·일탈·학교부적응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보위, 교육청, 학교							
	"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대검찰청							
"	청소년 상담·선도시설 설치 확대	문광부								
5.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5-1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 조성								
	"	학생(간)의 인권존중 및 책임중시 풍토 조성	교육청, 학교							
	5-2	학교·학생 공동 주관 자율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시민단체 등)							
	"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경찰청							
	5-3	ON-OFF LINE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정화	지자체, 문광부, 경찰, 청보위 (교육청, 학교, 민간 단체 등)							
	"	사이버 유해환경 파악 및 단속	정통부, 청보위, 경찰청 (교육청, 관련단체 등)							
	"	포털사업자 모니터링 및 우수 커뮤니티 확산	정통부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마련	정통부								
"	영상물 심의강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문광부)								

주요 추진 과제	과제 번호	세부 추진 과제	주관 부처 (협조 부처)	추진 일정					
				'05	'06	'07	'08	'09	'10이후
5 법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5-4	학교 내외의 학생 보호 활동 강화							
	"	학교 내외의 안전구역화 (Safety Zone) 추진	경찰청, 학교 (지자체, 문광부, 교육청, 민간단체 등)						
	"	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교육부, 경찰청, 교육청, 학교						
	5-5	계도·공모전 등 전개							
	"	전문단체 등과 연계한 계도활동 전개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정통부, 여성부, 정보위, 경찰청, 시민단체, 교육청						
	"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디어 공모전 추진	정보위						
	"	민·관 합동 각종 회의 개최	교육부, 정보위, 교육청, 민간단체						
	5-6	청소년·학생 복지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지원	교육부, 문광부, 교육청, 학교						
	5-7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	대안교육 내실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새로이 마련된 학교폭력법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률로서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내외에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폭력에 국한하며, 둘째,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준용해야 하고,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폭력 신고의무규정이 있어서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라도 학교폭력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김학일, 2005:57).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교육청에는 전담부서를,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과 상호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구에는 모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자치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으면 가·피해학생을 조사하여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합의)¹⁰⁾,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조치¹¹⁾ 등을 하게 된다.

현재, 법령의 내용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현재 몇몇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일부 및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출석 등 인정, 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 위원의 확충(10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관계국장,

-
- 10) 이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없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교감 등이 사안조사나 합의 및 상담활동 등을 하여서는 안됨(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 거부 중지 및 종료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1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이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교과생 경우) 등이 있다.

교원대표, 시민대표 등의 참가), 가해학생이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피해학생을 치료해 준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정부차원의 공공의료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학일, 2005:58).

다) 학교폭력 정책의 현실과 한계 : 정책 시사점

하지만, 새로운 법제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폭력 문제의 실체나 대응방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¹²⁾

①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사건처리보다는 학교의 이미지를 걱정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폭력책임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직함뿐이며, 기존의 학생 선도업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문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법 시행이후 2004년도에 학생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 통계(교육인적자원부 국회자료 통계)를 보면, 총 7,488건이 발생하였는데,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건수는 6,374건이고, 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 건수는 1,114건이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시행한 건수는 224건(조정성공 199건, 실패 27건)에 불과했다.

② 또한 새로운 법에 의해 마련된 자치위원회 역시 제대로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거나 폭력사고 뒷수습 위주로 운영되어 그 효과성이 의심스럽다. 학교별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권이 교장에게 있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교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위원선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가급적 지역사회로의 열린 자치이념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학생대표의 참

12) 현행 학교폭력 대응정책에 관한 주요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4),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 워크샵 자료집;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및 국회좋은교육연구회(2005),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자료집;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2005),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100인 토론회 자료집;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2005), 학교폭력 위기관리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구축방안 연구보고서; 박효정(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5),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 자료집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여 및 지역사회 전문가 개입이 실질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③ 예방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현행법에는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규교과와 같이 연령별 또는 교급 별로 그 수업시수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고, 전교생을 한 강당에 모아놓고 반기에 한번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종례시간에 TV모니터를 통한 교장선생님의 훈화나 지역경찰관의 1시간짜리 교육으로 실시한 사례가 많다. 2004년 하반기 전국의 학교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 현황(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회의 예방교육만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학교가 경기도(국정감사시 불법적 징계를 비롯한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지역)의 경우가 1,768학교 중 827개(46.8%)나 되고, 서울은 1,210개 학교 중 526(43.4%)를 비롯하여 전국 10,580개 중 4,952개(46.8%)가 일회성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④ 경찰의 대처에 있어서도 피해자 신변안전 보장없이 훈방조치하거나 또는 무리한 기획수사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등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는 등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⑤ 사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법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기대하고 수사착수를 미뤘다가 누장대응 혹은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당초 사실관계는 사소한 사건이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면서, 커다란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증거나 증언이 분명치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폭력’으로 사법처리 되기도 하고,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엔 가해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사건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의 성격상 왕따나 집단괴롭힘과 같이 장기지속적 속성 때문에 사실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당해사건 중심의 사법과정에서는 특징화된 외상(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다소 경미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보복위험 등 신변안전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 이르기도 한다.

⑥ 현행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연계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할 각 부처들이 각기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과 이해방식이 달라, 청소년인권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협조와 공동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과정에 문제의 시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한 한국청소년상담원(2005)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 연계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첫째, 관련정부부처만도 8개 부처가 있지만, 활동내용과 목표가 상이하며 산발적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안처리에 불필요한 중복과정을 발생시키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학교폭력 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각 차이는 예방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각 부모,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교장, 교육청 장학사, 상담자, 시민단체 등 각자의 입장에서 매우 다른 접근을 보였으며, 때로는 참여하게 대립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조사부분에서 참여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었다. 사건발생시 학교와 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지게 되어 있는 현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간극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폭력대책법에 의해, 사안처리를 위한 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기획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곳은 각 지역사회이다. 실제 정책수행과정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학교폭력은 신체적 문제, 심리적 문제, 환경문제, 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계

가 시급하지만, 현재 각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차이,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 때문에 연계가 미약하며, 연계기관 간에 정보교류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셋째, 설사 연계되었다고 해도, 연계관련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이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 형식적 연계에 그치기 일쑤이다. 각 기관들은 연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연계방법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에서 예산과 인력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에서 연계하여 일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⑦ 현행 학교폭력 대응과정에서 실효적 조치를 가로막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바로 『학교폭력법』에 내재한 입법구조상의 딜레마와 한계에 기인한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입법구조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원칙과 패러다임의 불명확성과 혼란이다. 학교폭력의 문제영역은 단순한 사법모델이나 교육모델 또는 복지모델 중 어느 하나로 선택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쟁점들이 얽혀 있는 쟁점이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예전과는 달리 교육과 사법, 그리고 복지행정의 다차원적인 연계협력망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새로운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다기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막연한 공감대만 있었을 뿐,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철학과 입법원칙(패러다임)을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하여, 새로이 마련된 법은 여러 영역 및 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입법방향(a clear legislative direction)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원칙의 명확성 부족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 특별한 요구 및 권리 등 다양한 관점과 원칙들이 상충할 경우, 우선성의 관점에서 실질적 안내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선진 각국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community)로의 열린 기반으로서의 “학교”라는 공론의 장에서 지역민들 및 학생들(이해관련자들)의 “참여와 자치의 원리”로 접근하도록 법제도적 바탕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현행 법 및 시행령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치”라는 대원칙들은

사라지고, 각급 교육행정 기관장들의 책무만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마치 기존에 사법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는 폭력사안들을 잠시 유예, 먼저 학교교육의 영역에서 해결해보도록 학교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절차화되면서, 오히려 사법모델과 교육모델간의 긴장과 딜레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¹³⁾

둘째, 입법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부재이다. 학교폭력 입법목적은 제1조에 제시되어 있듯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제1조)” 하는 것이다. 즉 이 법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i) 피해자 보호, ii) 가해학생 선도교육, iii)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인권보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패러다임 부재, 그리고 관련 시행령 및 유효수단 결여 등으로 시행단계에서는 본 법이 실제적인 힘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i) 피해학생 보호의 목표에서 볼 때, 학교폭력법에는 피해학생을 유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행령에 단 한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하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실제 2004년 하반기

13) 어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교육영역의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내용은 조병인 외(200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이나 학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칙에 따라서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학교에 부여된 책임을 다 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됨으로써 교육당국과 일선학교들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교육당국과 일선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늘어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당국의 영역확장이 형사정책이나 사법기관의 관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차원에서 처리하더라도 사법권(국가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정책으로 다루더라도 “폭력행위”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폭력으로 규정된 포함된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입건 및 처리의무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 처리과정에서 만일 학교폭력법 및 소년사법이 이중적으로 다루게 될 경우, 복잡한 법률적·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기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현황을 보면, 심리상담조언이 4,158건, 일시보호, 111건, 치료요양 85건, 학급교체 10건, 전학권고 119건, 기타조치 227건 등으로 나타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국회요구자료). 이 가운데, “전학”이 가해자조치라기 보다는 피해자보호조치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정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왜 피해자가 환경변화 및 새로운 적응의 부담을 져야 하는가? 또한 현행 법 및 시행령의 규정으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의 조치는 유명무실한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다. 이 이유는 현재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비의 확보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¹⁴⁾ 따라서 바람직한 방안으로서 일단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추후 가해학생 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규정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일시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보호시설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박병식, 2005:4-5).

ii)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목표에서 볼 때, 앞서 피해학생 보호목표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시행절차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으며, 이와 더불어 법에 제시된 조치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선도 및 교육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 최근, 기본계획은 일부 지방검찰에서 실시 중인 [소년분류심사원 특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 조건부 선고유예제도]의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교육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제공기관와의 실질적 연계협력체계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어서, 학교중심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인권 보호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분쟁조정을 이끄는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규정들이 과연 학생인권 보호라는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일단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이

14) 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거덜난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학교에 비용부담 책임이 넘어갈 경우, 학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치료요양’ 프로그램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말도록 규정된 것도 어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정(대안적 분쟁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담당하기에 현행 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도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자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의 기본원칙과 절차매뉴얼 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선부른 조정이나 개입은 오히려 문제양상을 더욱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헌법적인 쟁점을 배태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권(국가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정책으로 다루더라도 “폭력행위”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상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법에 학교폭력으로 규정된 포함된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입건 및 처리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우선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여러 조항들을 비롯하여,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년법상의 여러 규정들로 접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의무교육자는 제외)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규정들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간주하면, 이들과 학교폭력대책법 제15조 9(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현행법에는 중앙과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기획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중앙과 개별 단위학교 및 단위학교들 사이를 매개하거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없다. 학교폭력은 단지 가정과 학교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및 사법체계가 공동으로 대응협력이 가능하기 위한 연계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행법에는 전문기관의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시행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기획위원회나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사법실무가 들의 참여를 명문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 장치가 미약하고 지역단체의 책임이 없어, 실효성 있는 개입이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대응하기 위한 연계체계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열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갖추으로써, 지역사회와 학생의 참여와 자치 패러다임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¹⁵⁾

(2) 학교 상담제도

가) 우리나라 학교상담제도의 도입과 좌절

교육현장에 학교상담제도가 도입된 지 약 50년이 되었다. 상담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개선에 따라 교육정책 입안자나 학교운영책임자들은 상담의 필

15) 이 방안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 시장 및 도시자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지우고 있으며, 여성부장관의 권한을 상담부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과의 연계 및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구성에 교육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관련 청소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위원장에는 교육감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주호, 2005:24).

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학교상담 역사의 시작점인 1950년대 후반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교도교사제도가 학교상담제도로 발전되지 못하고, 1997년 IMF위기에 직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이유를 연문희(2003)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교도교사 연수에 추천되는 교사들의 적성과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교도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천되는 교사들은 진급에 관련된 50대중후반의 나이 많은 교사들이거나, 적성에 관계없이 추천받은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둘째, 교도교사 연수교육과정의 문제점이다. 240시간 연수 중에서 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180시간이었는데, 연수내용은 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단편적 교과목의 나열이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 상담교사가 양성되지 못하였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시행하는 연수과정에 우수한 강사자원 확보가 어려웠다. 넷째, 학교행정책임자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주지주의 교육,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점수경쟁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점수에만 집중하여 학생들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조장하는 생활지도와 상담에는 소홀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아중심으로 생활지도와 상담을 해왔으므로, 교도교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훈육지도에 그치는 예가 많았다(황순길 외, 2005:45-46재인용; 연문희, 2003).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중심 상담망 구축사업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비등해지면서, 학교상담제도의 활성화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상 [학교중심 상담망 구축]은 중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지역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각급 학교에 상

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의거, 2005년 현재 182개 지역교육청에 308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두 충원하지 못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 201명과 기간제 교사 107명으로 충원되었다.¹⁶⁾ 또한 임용되더라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담당해야 할 학교 수가 평균 40개가량 되는 상황 이어서, 전문적인 학교상담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학교폭력 5개년 기본계획을 보면, 상담인력으로 전문순회상담교사 이외에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학교순회 청소년상담사 활용과 더불어 청소년 또래 상담의 활성화까지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다양한 지역자들이 학교상담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 차원의 한계를 인식한 일각에서는 외부의 상담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하려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1991년 제정후 2004년 2월에 대폭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2005년 2월부터 시행될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은 청소년상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청소년관련 시설에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4조에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청소년상담사들이 학교 및 청소년 상담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각급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의 의무화’하여 학교상담사를 채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청소년상담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근거한 전문상담순회교사와는 차이점이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담당지역의 학교를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에 비해, 학교청소년상담사는 단일학교에만 배속되

16)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06년도 중점추진 계획안(2006.1, 교육인적자원부)

어 있어 해당학교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용이하고 학생의 인성계발과 문제예방이라는 폭넓은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학교청소년상담사제도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제도를 보완하고, 학교현장에 상담전문가인 청소년상담사를 배치, 활용하되 학교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교사(진로상담부장, 학생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및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황순길외, 2005: 13).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8년 전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학교에 상담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는 16개 시·도에 초·중·고교 1개교씩 48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98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5).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개발한 [학교청소년상담사 활동모형]을 토대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에 걸쳐 [학교청소년상담사 시범운영사업]은 전국 5개지역 10개 중학교에서 시행된 바 있다. 이 활동모형이 개발된 배경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업중단, 자살 등 청소년 문제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의 학교상담 틀로는 학생 문제행동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학교상담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학교상담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다) 반성과 시사점

① 상담 전문인력의 확충 : 외국의 경우에는 교사지도 교사와 학생지도 담당자의 업무가 구분되어 상담전문인력이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교과담당교사가 담임교사도 겸하며, 교과지도와 더불어 학생지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상담전문인력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부실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상담인력이 학생지도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지속적인 학생관리체제의 구축 : 미국의 경우 1학년 때 담당 상담자가 3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을 담당하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생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년별로 상담자가 담당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정보와 지도권한을 담임에게 부탁해서 얻는 수준이 아니라, 교사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학교상담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학교폭력 및 부등교 예방을 위해 스쿨카운슬러 연구위탁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스쿨카운슬러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가에서는 연구사업이 종료된 2001년 이후에도 스쿨카운슬러 사업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가 학생상담활동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으로 스쿨카운슬러 제도가 확대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보다는 학교밖(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학교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청소년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인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의 성공적 제도 정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비용보조를 통해, 학교상담정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학교상담활동의 체계적 기준마련 : 스쿨카운슬러의 실제 활동에 있어서 교사, 학생, 보호자 뿐만 아니라 타기관 및 지역자원에 대해 신뢰관계 형성에서부터 위기개입에 이르기까지 각 활동별 요강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한 스쿨카운슬러 부임이전으로부터 협의단계, 부임초기, 안정기, 발전기 등의 모든 활동단계별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학교상담이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학교에서의 상담전문가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학교 안에서의 전문적 활동 또한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매우 가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기준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3) 교칙 및 규율체계와 학생인권정책

가) 관련정책 현황

현재 학생인권의 주요 쟁점들은 학생체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습자율결정권 등이 있다. 학생의 학교운영참여 및 정치활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N등 국내외적 비판이 잇따르자, 2003년 2월 교육부는 ‘인권 존중, 자율, 책임 풍토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계획’, ‘2004 공교육 내실화 대책’ 등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일선학교의 교칙이 청소년인권기준에 맞게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들 인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도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234-236).

학교폭력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 중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중 인권침해가능 부분 등에 대한 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인권침해 가능부분을 민주적으로 개정한 학교는 2003년 54.8%, 2004년에는 67.3%, 그리고 2005년에는 전체학교의 90%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나, 실제 교칙개정이 학생인권 신장에 얼마나 개선효과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반성과 시사점

여기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은 체벌을 하나의 징계수단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항(“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라는 유보단서를 근거로 체벌 인정)과 그에 따라 교칙 및 학생생활지도규칙에 합법적 체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규율체계이다. 1998년 8월 초중등교육법 제정당시 한국의 입법 및 행정적 입장은 「체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제정하였고, 체벌의 정당성 문제를 ‘적정절차’ 논쟁으로 귀결시켰다. 이러한 타협적 결론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체벌을 처벌(징계)의 한 범주로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고, 다른 하나는 그 정당화 기초를 사실적 준거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회윤리적 척도에 근거함으로써, 인권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치환시켰다. ‘체벌 불가피론’에는 교육상 ‘필요악’ 또는 ‘교권존중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여기에서 ‘교권’은 ‘교사의 권위’ 또는 ‘교사의 권한’ 또는 ‘교사의 권리’ 등 매우 다양한 함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체벌불가피론 전면에 드러난 ‘교권’의 쟁점은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교사 권위의 실추”였다. 교사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적어도 학생들에게 권위존중을 위한 궁극적인 위협요소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권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체벌권이었다는 비(반)교육적 역설이 성립된다. 결국 권위의 원천을 너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¹⁷⁾

체벌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보장’, ‘의사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체벌은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이 보장하고 있는 제반 권리, 즉 차별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조),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제12조),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6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착취를 당하지 않을 권리(제19조),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

17) 1998년 8월 초중등교육법 제정당시 한국의 입법 및 행정적 입장은 「체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을 제정하였고, 체벌의 정당성 문제를 ‘적정절차’ 논쟁으로 귀결시켰다. 이러한 타협적 결론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체벌을 처벌(징계)의 한 범주로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고, 다른 하나는 그 정당화 기초를 사실적 준거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사회윤리적 척도에 근거함으로써, 인권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치환시켰다.

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8조 2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의 정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29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7조)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는 “교육”의 이름 아래에서 은폐되거나 조작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체벌 불가피론’에는 교육상 ‘필요악’ 또는 ‘교권 존중론’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여기에서 ‘교권’은 ‘교사의 권위’ 또는 ‘교사의 권한’ 또는 ‘교사의 권리’ 등 매우 다양한 함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체벌불가피론 전면에 드러난 ‘교권’의 쟁점은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교사 권위의 실추”였다. 교사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적어도 학생들에게 권위존중을 위한 궁극적인 위협요소로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권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체벌권이었다는 비(반)교육적 역설이 성립된다. 결국 권위의 원천을 너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체벌을 여전히 “교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또 다른 한편에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잘못된 대립구도에서 비롯된다. 체벌을 교사와 학생간의 권리상충 또는 권리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권한을 교사의 권리 또는 특권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 즉, 체벌불가피성을 교권수호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위험적 발상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마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반인권적 사고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사회제도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평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현실은 학교규모의 거대화, 교실의 과밀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등 제 변수간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학교라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을 주입식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체벌은 불가피하고 효과적인 교육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통념”은 스스로 한국의 비인권적, 비인간적

교육현실을 인정하는 역설에 빠진다. 명목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적인 교육내용(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이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상호작용 및 제도운영 등 교육형식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조영달, 1998 참조), 학교현장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폭력이 일상화되는 반인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현상의 심층실태를 보면, ‘교사체벌’ 가장 핵심적인 발생기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현장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체벌의 실체는 근대법의 기초를 흔드는 화약이다.

체벌의 일차적인 목적은 ‘교육’보다는 ‘통제’에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체벌은 오늘날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은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으로 간주된다(김은경, 2000). 오늘날 체벌의 실상은 결코 허용여부의 원리적 쟁점에서 보아서도 안 되고, 더욱이 ‘교권 논쟁’과 연결시켜서도 안 된다. 또한 체벌의 실체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전통’의 문제도 아니며 또한 교사 집단의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자들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교육자는 국민으로부터 교육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것이다. 이제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즉 “교육자의 때릴 권한”보다 “아동의 안 맞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진 각국의 노력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자치법』의 제정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자치법이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2006년 3월 8일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명칭으로 ‘초·중·고등교육법’의 인권·자치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다. 학생인권·자치법의 법제화는 학생들이 인권과 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학생

회법제화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부당함을 알리고, 학생인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자치법』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2006년 8월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2006년 9월 18일자 한겨레신문).

2. 외국의 주요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1) 미국의 정책 동향

(1) 소년사법체계의 동향

가) 새로운 소년사법 모델을 위한 원칙과 철학

최근 미국 법무부의 OJJDP(1999)는 이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변화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 새로운 소년사법모델을 위한 통일적 원칙과 철학을 제공하기 위하여 “균형적·회복적 사법(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개념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균형적·회복적 사법이란 “균형잡힌 접근계획(Bazemore, 1992)”과 “회복적 사법(Umbreit, 1985, 1994, 2001; Van Ness, 1990; Zehr, 1990)”철학에 근거하여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community supervision)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모델이다. 일종의 통합모델(integrated model)로서 회복적 사법철학(restorative justice)과 지역사회 사법원칙(community justice)을 결합¹⁸⁾, 그 가치를 소년사법 체계에 침투시키려는 작업 틀이다. 균형적·회복적 접근에 기초한 소년사법 체계는 “능력개발, 책임성, 지역사회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체계와는 다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년사법모델은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간의 상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프로그램과 감독실행(supervision practices)을 통해서, 삼자간 이해관계의 화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가해자의 능력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와 책임성 목표를 함께 증진시

18) Restorative Justice 및 Community Justice 두 개념은 공통적 전제, 즉 지역주민이 범죄대응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강해진다는 데 근거하며, 두 개념 모두 피해자, 지역사회 및 가해자의 선호와 필요에 맞추어진 대응방법을 그리고 있다(Kurki, 1999).

킨다(Bazemore, 1992).

이 접근방법은 소년사법의 전문담당자만으로 기능할 수 없는 지역사회 조직체들에 대한 압목적 내용 및 그 지원에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에 도달하는 것은 학교, 사업주 및 변호사, 청소년육성 관련그룹과 같은 사회화기관의 핵심적 역할을 담고 있다.19)

<표 VII-8> 균형적·회복적 접근방법의 수행목표와 새로운 역할들

<p>책임성(accountability) - 범죄가 일어나면, 부채도 발생한다. 사법은 피해자에게 야기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해야 한다.</p>		
<p>소년사법체계의 역할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고, 시스템의 최우선성으로서 다른 적절한 회복적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 자원을 관리통제하는 것</p> <p><의도된 성과> 효과적이고, 공정한, 의미있는 회복적 사법 실천; 피해자 필요에 대한 대응성 증진</p>	<p>가해자의 역할 : 피해자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작업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참여</p> <p><의도된 성과> 범죄행위 결과에 대한 이해; 공감의 증진; 사법과정에서의 공정감</p>	<p>지역사회의 역할 : 가해자에게 보상기회를 제공, 지역사회봉사프로젝트의 발전을 돕고, 피해자의식교육을 원조함으로써 과정을 지원</p> <p><의도된 성과> 소년사법체계에 보다 증가된 참여와 지원; 피해자가 우선적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p>
<p>능력개발(competency development) - 가해자는 사법체계에 들어갈 때보다 일반사회에 보다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떠나와야 한다.</p>		
<p>소년사법체계의 역할 : 청소년의 장점과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장점이 능력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검토; 이러한 활동에 청소년을 가담시키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고용주, 교육자 및 다른 기관과의 생산적 파트너십을 통해 예방잠재력을 구축</p> <p><의도된 성과> 청소년 능력개발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회제공; 개선된 소년사법이미지; 능력 강화</p>	<p>가해자의 역할 : 삶의 역량(life skills)을 키우는 동안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을 활용하면서 교육적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감</p> <p><의도된 성과> 향상된 효능감 및 자존감; 긍정적인 성인역할모델과의 접촉과 상호작용; 개선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p>	<p>지역사회의 역할 : 소년사법체계와 파트너가 되어, 청소년이 긍정적인 시민적 가치들을 배우는 한편, 지역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전시킴</p> <p><의도된 성과> 비행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가;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태도; 지역사회의 개선된 삶의 질</p>
<p>지역사회보호(community protection) - 시민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소년사법체계는 지역사회내에서 범죄자를 발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p>		
<p>소년사법체계의 역할 : 범죄자가 지역사회내 영역에서 담당자에 의해 주의깊게 감독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가해자일정이 구조화되도록 이끌어냄; 일련의 감독기능의 제한적 옵션 및 위반에 대한 대안적 대응법, 발전적 방안을 발전시킴</p> <p><의도된 성과> 지역사회 감독에 대한 대중적 지원활동의 증가</p>	<p>가해자의 역할 : 능력개발 및 회복적 활동에 가담하고, 향후 범죄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함</p> <p><의도된 성과> 감독기간동안 범죄에 가담하지 않음; 감독기간이 완료될 경우에도, 감소된 재범율</p>	<p>지역사회의 역할 : 공공안전에 대한 관심을 소년사법체계에 투입함; 범죄자 통제와 재통합에 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함.</p> <p><의도된 성과> 지역사회의 안전감의 향상; 소년의 지역사회 감독에 대한 증가된 신뢰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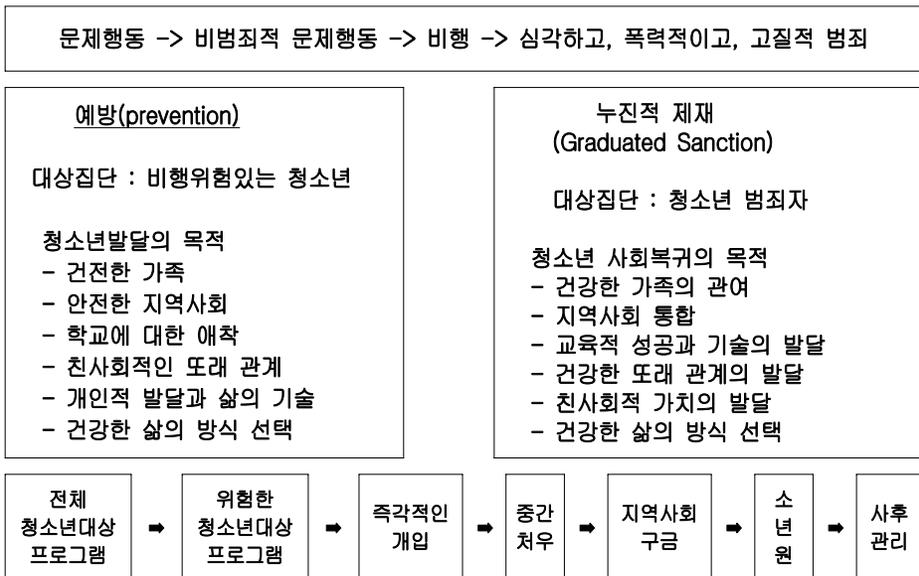
◇ 자료 : OJJDP(1999),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4쪽.

19)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경(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균형적·회복적 사법모델은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이것은 지역사회기관들이 자체적인 비행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소년사법체계가 지역사회지원체계와 구성적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균형적·회복적 사법모델은 새로운 수행목표에 대한 합의 및 각 대상을 지향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원의 균형적 할당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통제와 처우간의 전통적·비생산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나)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사무국(OJJDP)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종합전략
 OJJDP는 1993년 ‘심각하고 폭력적이고, 고질적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 프로그램 요약(Wilson and Howell, 1993)’을 발행하면서,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종합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OJJDP가 1995년에 발행한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 시행지침(Krisberg, B. et al., 1995)’에 근거하여, 미국의 종합전략의 핵심적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VII-9> 미국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종합전략 모델



OJDP의 종합전략은 다음의 5가지 일반원칙에 기초한다.

- ① 가족에 대한 강화: 어린이에게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어린이를 지원,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이를 강화한다.
- ② 핵심적 사회기관에 대한 지원: 학교·종교기관·지역사회는 청소년이 가능성 있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발달하도록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이들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 ③ 비행예방의 강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접근은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다.
- ④ 비행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고질적·심각한 범죄자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심각하고 폭력적·고질적인 소년범죄자 확인과 통제 : 심각한 범죄청소년들에게는 초기개입이 실패하였으므로, 엄격한 시설내처우 혹은 소년사법체계에서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포함한다(최영신, 2001:115 재인용).

OJDP 종합적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개입전략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ed sanction)로 나누어진다.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진다(최영신, 2001:116). 즉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종합 전략은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prevention)으로부터 소년사법체계로 들어온 청소년들에 대한 누진적 제재(graded sanction)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정책은 위험요인(risk factors)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위험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Reno et al. 1998; 김지선, 2002:60 재인용). 종합전략은 청소년을 비행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영향과 요소에 접근하고, 유효한 자료를 결정하고, 종합전략 속에서 확인된 19개의 위험요소(risk factors)를 감소시키거나 청소년을 그러한 요

소의 영향으로부터 완충시키는 보호요소를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즉, 기존 청소년문제행동 예방/치료/교정 중심의 사후관리적 복지정책이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진단 하에 ‘긍정적 청소년 발달’이라는 테제로 강조점이 이행하였다. 특히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제도기반 마련 및 단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이행생활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찾아가는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2002년에 제정된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e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Act)은 OJJDP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법은 불필요한 청소년의 구금을 줄이고,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우를 위해 주정부가 행하는 각종사업에 연방정부의 보조가 주어지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예방 및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청소년들을 성인감옥으로부터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부모 및 가정기능강화를 위한 개입체계와 프로그램

가) 부모책임법제²⁰⁾

부모는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감독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다는 전제는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 자녀의 비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부모책임법제의 형성이며, 다른 하나는 소년처리절차 및 처분집행과정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자녀의 비행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다양한 방식 중 특히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해롭게 등장하여 광

20)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선(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새로운 부모책임법이다. 새로이 만들어진 부모책임법은 이전의 부모책임법제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법에 포함된 애매한 규정들과 대조적으로 일정 정도를 넘어선 불충분한 양육방식을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불충분한 양육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부모의 유죄 인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고의(mens rea)의 요건을 포기하고, 대신에 부모에게 엄격한 형사책임(strict liability)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처벌의 수준과 다이버전의 채택방식은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멕시코 주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대신에, 뉴멕시코 법원은 부모에게 상담에 참여하거나, 청소년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소년의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명령한다. 오리건 주에서는 1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부모, 법적인 보호자 혹은 법적으로 아동의 보호감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동이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아동에 대한 감독 실패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제재를 가한다. 부모는 초범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 범죄인 경우에는 부모교육과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불법적인 행동을 적절한 관계기관에 고지하였고,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기소를 면할 수도 있다. 클레어 쇼어에서는 합당한 자녀에 대한 감독에 실패한 부모에게 벌금이나 구금 등을 통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는 부모교육강과(parenting classes; 콜로라도, 뉴멕시코, 플로리다 등), 아동의 범죄에 대한 신고(오리건주),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사회봉사명령 책임 등과 같이 법적인 책임(liability)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모교육강좌에의 참여이다(김지선, 2005).

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이 법을 통해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

런되었고,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법에 따라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립되어 연구, 훈련, 자료선택,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뿐만 아니라, 주정부 아동보호서비스의 혁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and Support(CBFRS)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CBFRS 프로그램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다) 기타 주요한 부모·가정지원 프로그램

①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Bridge Over Troubled Water, Inc.):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는 보스턴 지역의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거리로 나서며 그들에게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서 위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위기센터에서는 가족개입, 조정, 긴급 일시보호소 운영, 상담,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과 욕구를 집중 조사하여 가족과 재결합을 시도한다. 만일 가족과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 대안서비스로 주거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모색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능력을 강화시킨다. 가족, 부모를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 서비스로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여 자녀가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이전을 위한 거주 프로그램으로서 편부모 하우스, 협력아파트 등의 거주시설을 연결, 지원한다. 특히 ‘편부모 하우스’는 젊은 싱글맘과 아동에게 거주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특정프로그램(안전한 아동 관리, ‘부모되기’ 워크샵 등)을 제공한다.

② 크로스 윈즈 유스 서비스(Crosswinds Youth Service, Inc.): 플로리다주 브래버드 카운티의 청소년을 위한 긴급쉼터로 1974년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이 기관은 가정강화를 위해 계획되어진 포괄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성공하는데 요구되는 자원, 기술, 그

리고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 부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가정폭력범에게 분노조절,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가족기능요법(Functional Family Therapy) : 11-18세의 부적응 행동과 그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④ CINS/FINS 프로그램 : 가족의 동일성과 완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숙박 및 거주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⑤ 태아영아 가정방문 간호프로그램(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ation by Nurse Program) : 저소득이며 위험에 처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칭한다.

(3)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사례 및 지원프로그램²¹⁾

가) No Child left Behind Act(2001)

미국의 학교폭력 정책은 No Child left Behind Act(2001)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학교 선택권(Unsafe School Choice Option:USCO-1965년 초중등 교육법안 제9532조,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법안에 의해 수정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USCO는 연방정부로부터 초중등교육법안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주는 ‘지속적으로 위험한’ 공립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학생들이 안전한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주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각주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입증해야 한다.

○ 각 주별로 안전하지 않은 학교 선택권(USCO) 정책 수립

21)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은 최지영(2005), “미국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 자료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보호위원회(200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매뉴얼에 소개된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의 확인
- 폭력범죄로 간주되는 비행 유형의 규정
- 안전한 공립학교선택권 제공
- USCO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

이에 따라 각 주의 교육당국은 지역교육청과 협력,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가령, 폭력범죄비율, 총기류휴대료 사법기관에 넘겨진 사건수, 학교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사건에 대한 학생인터뷰 결과, 폭력씨클의 존재, 살인사건의 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은 각 주에서 초중등학교 교육법안에서 제시하는 표준정보관리 및 보고시스템(Uniform management information and report system:UMIRS)의 조건에 맞게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데이터 지표를 보면, 무단결석 비율, 폭력관련 범죄, 마약관련 범죄의 빈도와 심각성 및 그로 인한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자료,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SDFSCA)”로부터의 재정지원, 지역교육청, 주교육당국, 주행정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서비스의 종류, 마약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건강상 위험에 대한 인식, 시작시기, 빈도 및 보급정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자료 등이다.

나)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연방정부)

이 프로그램은 교내 그리고 학교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방지하고, 술, 담배, 그리고 약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령 전 아동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연령에 적합하고 그들의 발달 정도에 기초를 둔 약물방지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이 가져다 줄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각성시키며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또래 압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② 약물방지, 광범위한 건강교육, 조기관여,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도우미(mentor) 정해주기, 재활활동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약물방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약물방지를 위해서 교직원, 부모, 학생, 법률담당 공직원, 행정직원, 건강담당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 등이 교육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조기에 관여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담당 관련자들을 육성한다.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알코올과 약물의 남용과 관련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실행시킨다. 여기에는 가족상담, 가족에서의 탈선을 방지하고, 학교 성취를 촉진시키며, 학교와 가족간의 연대를 조장시켜주는 초기 개입 활동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을 증진시켜주는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③ 학령 전 아동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연령에 적합하고 발달 정도에 기초를 둔 약물방지 뿐만 아니라 성적희롱, 성폭행을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성폭력, 일탈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각성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 없이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④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갈등 해결책, 또래 중재, 범죄예방 전략의 토의 및 계발하기 등을 위한 다양한 반범죄 청소년 모임이 마련된다. 또한 지역사회, 부모 및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포괄적인 약물 및 폭력 방지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계발 및 실행한다. 이외에도 불법적인 갱활

동들을 방지 혹은 줄이기 위한 광범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여러 전략들을 포함한다.

⑤ 약물과 총기류가 없는 학교지역(Drug and Weapon Free School Zones) 관련 법률 집행 및 인근 지역 감시 강화와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안전 지역형성(safe zone of passage)를 지원해준다. 또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요원들을 고용한다.

⑥ 역사적으로 참을성, 증오심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폭력과 이에 대한 대안들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양성한다.

다) 뉴욕시의 the Safe Schools Against Violence in Education Act 학교 안전과 폭력 예방의 문제에 대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 관한 교육법(the Safe Schools Against Violence in Education Act ; SAVE)이 2002년 7월 24일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1세기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October, 1999)라는 보고서에서,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상황에서 학교가 어떻게 대응 할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SAVE의 주요한 요소는 학교 안전계획을 교육청 (district) 수준이나 학교 수준에서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들은 모두 각 교육청마다 그리고 교육청내 학교 수준에서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법과 예방이나 처방, 응급상황 대처, 그리고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재앙의 극복 요령에 대해 다루고 있다. SAVE 프로젝트는 학교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교육청과 학교수준에서 학교 안전팀을 구성하였으며 학교 학생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데 학교와 공동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증된 모형이다.

교육청 수준의 학교 안전계획은 학교 교육청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만한 학습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적절한 전략들을 찾아내고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교육청 수준의 학교 안전 팀에 의해 개발된 교육청 계획은 교육청내에 속해있는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개발하고 그 지침을 마련해 주었다. 교육청 수준의 계획이 광범위한 범위의 활동들, 예를 들면 폭력 예방, 처방과 대처를 다룬다면, 학교수준의 계획은 보다 직접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과 성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취해야할 조치들에 초점을 둔다. 교육청 수준의 학교안전 계획은 교육청내의 장학관이 교육청 수준의 학교 안전 팀을 지정하고 그들은 교육위원회 학교 안전계획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수준의 학교안전팀을 임명하게 되는데, 주로 학교 위원회,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단체, 학교 안전 책임자 그리고 다른 학교 인사들이 포함된다. 교육위원회 수준의 학교안전 계획은 개별 학교수준의 응급 대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교육위원회 수준의 학교 안전계획에 의해 반영된 프로토콜은 개인 학교 수준의 응급대처 계획의 개발과 실시를 유도한다.

교육위원회 수준의 계획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조치들,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의 참여나 계획의 주요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할지가 정해진다. 학급 수준의 응급대처 팀은 응급상황이나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별 학교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어떤 절차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학교 응급 대처 팀이 활성화되자마자, 곧 학교의 장학관과 관련 담당자들이 알게 되며, 지역 응급담당 공무원 또한 통보받게 된다. 또한 카운티나 주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보완한다.

라) 일리노이주의 Safe at School Planing

1995년 12월 주 교육위원회는 일리노이주 학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일리노이주 계획안 A State Plan for Assuring Safety and Order in Illinois Schools을 채택했는데 이는 주 전체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이 계획안은 주 교육위원회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사항을 할당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학교 내의 폭력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다. 특별히 일리노

이주 교육위원회 계획안은 각 지역에 있는 학교로 하여금 학교의 안전 정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인식된 문제들과 관련된 학교안전 계획안을 개발시키도록 명하고 있다.

1996년 봄, 일리노이주 총회(General Assembly)는 학교 안전 계획안을 강화시켰다. 첫째, 부모-교사 자문 위원회(parent-teacher advisory committee)와 더불어 학교자문 위원회는 학생들을 지도할 정책안과 이에 대한 실행 및 학교,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씩 평가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둘째, 비록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School Safety and Educational Improvement Block Grant Program을 통해 학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해놓고, 이를 일리노이주에 있는 각 공립 및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동의하고 있다. 학생 자문(감독) 위원회는 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각 학교 구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훈련지원, 재정지원,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생 자문 위원회(The Student Advisory Council)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문 위원회는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 학교안전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도하에 각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안전에 대한 감사와 이에 대한 계획안 개발과정에 대한 논의를 보고한다. 둘째, 주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주도하에 행해지고 있는 학교안전계획을 통해서 학교학습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리더십에 대한 가치와 학교안전 감사 개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셋째, 학교안전 감사는 대상 집단 토론을 통해서 학교안전에 관한 학생 감사관련 초안사항을 다루고, 이 감사는 이후에 더 정교화되고, 가을에 파일럿 테스트가 실시되며 그 다음 해 학교가 시작되는 동안 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되어있다. 넷째, 학생들은 집단 활동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학교안전감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 보고하며 이듬해를 위한 계획과 파일럿 테스트로부터 얻고자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주 교육위원회

는 학생들의 학교안전 감사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이 학교폭력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감사는 주 전체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최될 미팅에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고한다.

마) Minnesota의 Unlearning Violence Plan

학교폭력 탈학습 계획(Unlearning Violence Plan)은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물리적인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심리적인 폭력 또한 일생에 거쳐 치료해야 할만큼 깊은 감정적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가정은 폭력은 학습된 행동이라는 것이며, 특히 가정의 부정적인 역할 모델로부터의 영향을 중시한다.

학교 폭력 탈학습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추구해야 하는 특성을 개발시키기(promotion)이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점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장점이나 보호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폭력보다는 긍정적인 행위를 강화하고 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절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둘째, 폭력예방기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폭력을 수용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갈등이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다양한 교과과정 속에 친사회적이고 폭력 예방적인 기술들을 통합시켜야 한다. 셋째,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더 나아가 교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점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면 건전하고 긍정적인 학교분위기를 유지하거나 폭력행동과 폭력적인 태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버스카메라나 금속탐지기 설치 등을 강화한다. 넷째, 학교와 부모/보호자와 교육적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책임과 리더십 역할을 인식시켜 주고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예방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건전하고 긍정적 분위기, 환경,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분위기를 개발하는데 초점 맞추는 데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키워주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 폭력 탈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 자체가 긍정적이고 건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하여 폭력행동을 줄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들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일곱째,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에 대한 수용 가능한 방법들을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게 된다.

바) 미국학교의 Chapter 19 【학생비행을 다루는 지침서】

하와이 주의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비행, 규율, 학교 조사와 체포, 위반행위 보고, 경찰조사와 체포, 반달리즘과 negligence에 대한 배상(restitution)에 관한 19장(chapter 19: 2002, 6.)]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의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문제행동을 다루는 상세한 절차와 방법을 살펴 볼 수 있다.

Chapter 19, §8-19-1(b)에 따르면, 만일 학생이 국가 및 형법에서 설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합법적 지도에 불응할 경우, Chapter 19에 따라서 적절한 규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school personnel)의 책임과 한계, 그리고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윤곽짓고 있다.

Chapter 19는 철학과 학교 규율이 요구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금지행위의 등급-A급 위반(심각한 범죄), B급위반(범죄), C급(교육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D급위반(학교에서 규정한 금지행위)까지 분류-과 그에 상응한 규율조치 및 권한²²⁾, 학교 조사와 압류체포 정책²³⁾, 범죄

22) §8-19-11 (d)규율조치는 다른 A급과 B급 범죄를 저지른 7학년-12학년에게 §8-19-5에 규정된 권한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결정된다. (1) 견책과 경고, (2) 부모 회합, (3) 대안적 교육프로그램 위탁(회부), (4) 구류(detention), (5) 긴급 정학, (6) 10일 이내 정학, (7) 11일 이상 정학, (8) 징계전학, (9) 퇴학. /f) 유치원생부터 6학년생들의 A급에서 D급 위반에 대해서는 §8-19-5에 규정된 권한자에 의해 앞의 (e)부분에 제공된 options 내에서, 이 장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g) (c)(d)(e)부분에서 취하는 규율조치와 더불어 학생은 상담을 받아야 한다.

23) § 8-19-14. 학교 조사와 압류체포 정책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부에 의해 이끌어지는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사생활보호의 기대를 지닌다. 학교관리자는

행위 발생의 보고²⁴⁾, 학교관련 범죄 및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그리고 학생에 대한 체포절차와 협력관계를 절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⁵⁾

학생들의 사생활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 한편, 학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합법적인 필요(요구)를 지닌다. 이러한 합법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교관리자는 조사 및 압류체포를 종종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정책으로서, 이와 같은 조사와 압류체포활동은 오로지 만일 학교관리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이나 개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해질 때만 허용될 수 있다. 학교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와 압류체포활동은 이 장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 24) § 8-19-19 A급- B급범죄의 보고 (a) A급 또는 b급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학생, 교사, 관리자 및 교육부관계자 대해서 범해졌거나 범해질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교사, 관리자 및 교육부의 관계자들은 즉시 사건을 교장이나 권한있는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b) A급 및 B급 범죄발생 보고를 받을 경우, 교장은 해당 행위가 경찰개입을 직접 요청할 사안인지를 또는 학교교칙과 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신문을 수행해야 한다. 교장이나 권한있는 자는 학교스텝에 의해 다룰 수 없는 행위이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개입을 요청해야 한다.(c) A급 및 B급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장은 5일 이내에 관할교육청장에게 학교사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 교장은 보고한 교사,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 (c)항에 따라 사건을 보고한 이후 5일 이내에 A급 및 B급 범죄행위에 대해 취해진 문제해결과 방향조치를 문서로서, 고지시켜야 한다. (e) 교사, 관리자 및 관계자가 만일 보고된 범죄에 대한 문제처분조치에 실망하였을 경우, 또는 보고후 10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지역 교육청장에게 보고한 사람이 문서로서, 적절한 처분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다. (f) e 항에서 제공된 것처럼 이의제기를 접수할 5일 이내에, 관할지역청장은 보고된 위반행위에 취해진 해결조치를 이의 제기자에게 문서로서 고지시켜야 한다.

- 25) §8-19-22. 학교관련 범죄에 대한 학교에서의 경찰 조사(탐문) : (a) 경찰은 학생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학교에 출두할 수 있다. 학교에 도착하면, 경찰은 학생과의 면담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교장의 지도(규제)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인터뷰가 허락되면, 교장은 경찰인터뷰에 관하여 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뷰가 수행되는 동안 동석권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교장이 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거나 또는 부모에게 고지했지만, 출석을 거부하였을 경우, 고지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는 수행될 수 있다. (b) 만일 학생이 체포될 경우, 교장은 § 8-19-24의 절차규정에 따라야 한다.

§8-19-23.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 (a) 경찰은 학교와 연락해야 하고, 교장 등에게 방문의 성격과 조건에 관해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학교에 도착하면, 경찰은 학생과의 면담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교장의 지도(규제)에 따라야 한다. (b) 면담에 앞서, 교장은 경찰인터뷰에 관하여 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뷰가 수행되는 동안 동석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인터뷰는 허용될 수 없다. 이 하위 조항의 고지와 동의 요건은 만일, 인터뷰의 성질이 아동학대 또는 해당학생이 부모나 혹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피해받은 사건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충족될 필요가 없다. (c) 인터뷰 요청이 허가되었지만, 부모가

2) 영국의 정책동향

(1) 소년사법체계의 개혁동향

영국은 지난 8년 전부터 소년사법체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UK Home Office, 2003). 회복적 소년사법 실행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근거는 1998년에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CDA)]이다.²⁶⁾ 새로운 법을 통해 회복적 사법은 소년사법체계의 중심부분이 되었다. 피해자와의 접촉 및 피해회복은 Final Warning, Referral order, Reparation order, Action plan order and Supervision order 등을 통해서 모든 소년사법 처분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영국의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회복적 사법모델은 특히 지역사회 체재(sentence of the community)와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를 지방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다기관 청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YOT)²⁷⁾이 창설되었고, Youth Justice Board(YJB)는 YOT 작업을 국가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지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영국 소년사법체계 개혁의 핵심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균형적 통합모델”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회복적 사법(RJ) 철학과 지역사회 사법(CJ) 원칙을 결합, 그 가치를 소년사법체계에 침투시키는 데 있다.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모 및 학생의 요청에 의해 교장은 인터뷰에 옮겨버로 동석할 수 있다. (d) 교장은 학생의 이름, 날짜, 인터뷰 개시와 종결시간, 동석한 학교관계자 이름 및 경찰관 이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e) 학생이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경우, 교장은 § 8-19-24의 절차규정에 따라야 한다.

§8-19-24. 학교에서의 경찰체포 : 경찰은 학교장의 규제(지도)에 따라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학생은 경찰이 체포를 할 때까지는, 교장실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학생이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경우, 교장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26) 이 법은 지역사회의 치안질서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지방정부, 보호관찰국 및 보건복지국, 자발적 민간조직 및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발전·수행하는데 이들 간의 공조체계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 이 법은 일종의 균형적·회복적 지역사회사법(Community Justice)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27) 2003년 현재 잉글랜드 & 웨일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YOT는 약 156개 팀이 있다.

가) 범죄 및 무질서 대응법(Crime & Disorder Act 1998)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Crime & Disorder Act 1998)은 영국 정부가 청소년 범죄사법체계에 있어서 범죄예방을 기본원칙으로 수립하고, 그 목적을 고려해서 청소년사법체계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지역사회와 소년사법 관련기관들의 청소년 범죄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개입과 처벌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에 반사회적인 행동에 개입하고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조항 중에서 아동규칙계획(Local Child Curfew),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s), 무단결석아동 조치(Removal of truants to Designated Premises)의 규정은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범죄의 조기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장 범죄와 무질서 예방의 ‘아동규칙계획(Local Child Curfew)’ 14조 2항은 “10세 이하의 아동이 오후 9시와 오전 6시 사이에 정해진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을 금지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한 아동에 대한 조치로서 ‘규칙위반 통보’ 15조 3항은 “경찰은 아동을 현재 아동의 거주 장소가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한 아동의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은 무단결석에 대한 법적인 조항 규정으로 경찰이 위기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접근체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의 제16조에 따르면 경찰은 길거리에서 아동이나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학교를 무단결석하면 지정된 장소로 아동을 이동시킬 수 있다. 범죄와 무질서법에는 ‘아동규칙’ 이외에 위기의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체계로 진입하게 되는 또 다른 조항이 있다. 11조 ‘아동안전명령(Child Safety Orders)’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있는 10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10세 이하의 아동이 아동규칙을 위반했거나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할 만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명령이라 함은 범죄의 위기로 갈 수 있는 아동을 ‘청소년범죄 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의 구성원이나 사회복지사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에서는 공공의 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사적인 가정의 영역도 보호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모교육명령(Parenting Orders)’ 규정은 10~17세 아동이 범죄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동이 무단결석 하게 된 혐의가 있을 때, 1주일에 한번 3개월 동안 부모는 상담과 지도교육에 참여하고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다기관 협력체계로서 청소년범죄 대응팀(Youth Offender Team)

청소년범죄대응팀(YOT)은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성공열쇠가 되고 있다.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the Crime and Disorder Act)으로 인하여 청소년범죄 예방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1998년에 조직되었고, 2001년까지 범죄율 10%를 감소시켰다. 모든 지역사회기관에 YOT가 있다. YOT는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목표로 문제청소년의 특별한 요구에 대응하려는 프로그램이다. YOT의 구성은 경찰, 보호관찰국, 사회보전, 건강, 교육, 약물과 알코올 남용, 주택문제 등의 공무원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다. 각 YOT는 소년사법서비스의 업무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YOT 매니저에 의하여 관리된다. YOT가 다양한 범위의 공공단체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문제청소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YOT는 국가적 평가기준으로 청소년들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확인하며,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나타내는 위험성을 측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특정한 위험요소들도 다룬다.

YOT는 학교 및 법원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가 YOT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원은 YOT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길거리 범죄와 학교에서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길거리 범죄가 많은 지역의 선택된 학교에 100여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경찰은 폭넓은 자원을 공급하고 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업무를 담당한다.

다. 경찰은 희생자·범죄자·반 학교행동 최소화, 피해와 가해의 위험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발견, 청소년범죄자의 완전교육 보장, 취약한 청소년 보호, 안전한 환경 보장을 확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사이의 협조가 길거리와 학교 범죄 예방에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2) 부모 및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개입체계와 프로그램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me)

이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아이들을 범죄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부모/후견인에게 아이의 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 등과 같은 1대1 조언을 제공한다. 청소년 사법체계에 처우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서 자발적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험있는 부모/후견인이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Parenting Order] 또한 YOT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영국에서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처분은 ‘자녀양육협약’(parenting contract)과 ‘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이 있다. ‘자녀양육협약’은 YOT 직원과 비행청소년의 부모(후견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으로서 이 협약 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부모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부모 혹은 후견인이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협약동시에 실패한다면, YOT 담당자들은 독립적인 ‘자녀양육명령’을 신청하겠다고거나 법원처분 시 이러한 ‘자녀양육협약’ 체결 거부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할 수 있다. ‘자녀양육명령’은 a) 아동안전명령이 부과될 때, b)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명령, 혹은 성범죄자명령이 부과될 때, c) 아동이나 청소년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 d) 위탁명령이 발해될 때나 청소년 범죄자패널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자패널에 의해서 부모가 다시 법원으로 위탁되었을 때 비행소년의 부모에게 내려질 수 있다. 만약 합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표준등급으로 level 3이하의 벌금(1000파운드)이 부과된다. 그리고 법원은 비구금형 위반에 선고할 수 있는 모든 형을 부과할 수 있다. 1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조건부/무조건부 석방, 외출금지명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김지선, 2005 참조).

나) 아동학대방지정책

영국의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복지법으로서, 국가와 부모의 책임, 국가의 지원, 아동학대 및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동양육과 아동의 복지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접촉명령, 금지조치명령, 거주명령, 특정이슈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그 이외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수당 지급 및 서비스 등을 담고 있으며, 아동 관리, 아동의 지원과 상담, 아동이 적당히 교육받지 못할 때 내려지는 교육관리 명령,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법은 고통 받는 아동 조사 및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아동의 거주이동명령 및 경찰 보호권 발동, 고통 받는 아동가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시설, 자원봉사 시설 등과 관련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인 '제5장 아동보호'를 보면,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한 명령과 아동조사 명령을 내림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가정에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 제5장 44조 1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의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고통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심각한 해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법적으로 아동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친부모로부터 박탈해서 지방정부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부모의 권한을 줌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로서 제5장 46조 1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심각한 해와 고통 하에 있을 때는 경찰의 보호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위협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강한 공권력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국가가 고통 받는 아동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해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쉼터의 제공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현재 가출청소년 쉼터가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2000년에 아동법의 일부가 개정된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은 지방정부에게 아동보호에 있어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16세에서 17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18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접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교육, 훈련, 강력 계획,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해야 하고 청소년 상담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18세 이상 21세 이하의 청소년의 취업을 위하여 지원해야 하고 21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사례 및 지원프로그램

가) Schools Standards and Framework Act(1998)

이 법은 지방정부가 학교정책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제61조는 학교장의 정책이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예방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해서 1999년 이래로 모든 학교는 인종폭력을 포함

해서 학교폭력 예방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게 되었다.

나)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을 다루는 회복적 사법 실천방안

영국의 많은 학교들은 이미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접근법들은 교육적 성과를 지원하고 행위개선을 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Peer Monitoring 및 Mediation은 괴롭힘(bullying), 무단결석 및 따돌림 등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알도록 관여시키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학급의 'Circle Time'은 단순한 규칙(가령, 주의깊게 듣기, 차례로 돌기, 타인의 견해를 관용, 존중하기 등)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느낌과 생각들을 표명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YJB(Youth Justice Board)은 9개 지역의 학교에서 회복적 사법 예비실험을 지원하고 있다(UK Home Office, 2003:22). 현재, 내무성, YJB 및 교육훈련부(DfES)는 “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한 파트너십(Safer School Partnerships)”과정을 위해, 담당경찰관과 학교스텝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조(Safer School Partnership)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조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을 향상시키고 거리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서 현재 거리범죄가 빈발하는 지역 학교에 1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술부(DfES), 소년 사법위원회, 그리고 경찰서장협회(ACPO)간의 선도적인 협력 작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 담당경찰은 기본적으로 교사역할을 했던 학교에 참여한 전직 경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효율적이며, 학교와 사회간의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와 사회에서 피해자·범죄·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 '총체적 학교(whole school)'적 접근에 따라 학교와 협력하고,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위험에 있는 청소년을 다루고, ○ 문제청소년에게 전 시간 교육을 가능케 하고,

○ 학령기 이행기간 동안 유혹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 청소년에게 더욱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과 학교, 그리고 다른 지역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라) Sheffield Anti-Bullying Project²⁸⁾

영국에서 사용되어 오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프로그램으로서,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학교폭력 행동을 줄여가고 있다. 각각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과정에 기반한 전략으로 교과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활동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역할놀이 등을 활용한다. 둘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자기주장 훈련, 또래상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운동장과 점심시간의 감독강화를 포함하고 학교환경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① 교육과정 활동을 통한 회복적 사법실천 전략 :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며 폭력 행동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고, 희생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고, 학교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교육과정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Quality circles은 정기적으로 5명에서 12명의 학생들의 함께 모여 자신이 속한 학급이나 학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사회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집단이다. 둘째, 드라마와 역할놀이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학교 폭력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드라마와 역할놀이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 가해자의 동기이해, 폭력행동의 결과, 괴롭힘을 당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 방관자, 교사에게 학교 폭력 행동이 미치는 영향, 학교 폭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독서, 토론활동, 글짓기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서, 토론활동, 글짓기 등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

28)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200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매뉴얼에 소개된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임.

락에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도록 한다.

② 상담기법을 활용한 전략 : 상담기법을 활용한 방법은 특히 한 집단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을 괴롭힐 때 적절한 방법이며, 이 방법의 목적은 같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본규칙을 세우게 하는 데 있다. 이 방법의 기본 가정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학교폭력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개별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때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발견하거나 비난을 해야 되는 상황을 회피한다. 이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점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난하지 않기”와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운동장이나 점심시간 감독하기 : 대부분의 영국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감독관이 있으며 이들은 학교폭력 감독을 위한 특별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감독관에게 학교폭력 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 감독관에게 아동의 행동을 다루는데 있어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학교 폭력의 의미도 이해하도록 한다.

3. 정책 시사점

1) 회복적 소년사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1세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년사법체계의 철학적 배경은 응보적인 형사사법(punitive criminal justice)으로부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으로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다. 소년사법의 역사를 볼 때,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보호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는 ‘소년사법’이 등장

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소년사법체계”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 ‘복지모델(welfare model)’²⁹⁾과 ‘사법모델(justice model)’³⁰⁾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은 기본적으로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의 종합·절충, 소위 “복지-사법균형(welfare-justice balance)”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Walgrave, 1998:3).³¹⁾

오늘날 선진 각국은 ‘회복적 사법’ 이념이 제시한 새로운 대응모델에서 ‘복지-사법 균형’의 딜레마로부터 탈출가능성을 모색하는 추세이다. 많은 범죄학 연구결과 및 미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형벌의 양과 강도를 늘려서 범죄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비효과적이다. 최근 등장한 “회복적 사법”모델은 전통적 제재 그 자체에 비해 처벌목적 및 피해자 요구에 더 잘 부응하는 “제3의 길”로서 제시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처벌모델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

29) 일반형사제도와 구분되는 소년사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관점이 바로 ‘복지모델’로서, “청소년보호”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성년자의 특성을 감안,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에 초점을 둬으로써 청소년범죄자들을 교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한 접근모델에서는 응보적(처벌적) 성격은 사라져 버리고, 도구주의적인 재활적 접근이 우세하게 된다.

30) ‘사법모델’의 기본 관점은 소년범죄자들을 처우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모델’은 첫째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다룸에 있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따르지 않으므로써 오히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범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31) 사실상 두 가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타협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벌’은 과거의 사실(범죄)에 관련된 것이며, 범죄란 개입과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근거이고, 합법성과 비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육적 ‘처우’란 미래의 대상, 즉 독립적이고 동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처우는 위반행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needs)에 연결되며, 이것은 법률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일반적으로 형법과 교육적 원칙간의 조합은 두 시스템의 단점만을 혼합한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교육적 결과 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세기동안 이와 같은 비판들은 “처우와 처벌” 선택에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민주적 헌법국가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복지적 이익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www.afk.dk/eng98/juvenile.htm 참조).

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지역사회제재(community punishment)”,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 각종 “씨클(circles)” 등이 그것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등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제도적 실천방향과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공통적인 주요 특징과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작동기반으로서 지역사회 “위탁(referral)”중심으로 제도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교정철학으로 등장한 치료법리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한 단순하고 획일적 treatmen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needs에 맞게 적절한 처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소년범죄자 처우의 원칙과 철학을 내세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treatment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감독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결망 속에서 해당문제 해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에게 비행일탈청소년을 위탁, 재활치료를 전담케 하는 지역사회 다이버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도화는 추세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행청소년들을 주로 보안중심으로 단순감독이나 수용처우로 접근하고 있는 현행 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개혁된 선진 각국의 소년사법정책은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청소년 범죄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명료화하고, 서비

스전달 능력향상을 위한 체계

셋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은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예방전략”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가정요인을 강조하지만, 직접 개입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요인, 학업, 또래요인 등 일상적 삶의 연결망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중시하여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존중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소수집단의 결손을 보완하고 상황적 위험요소의 제거해 주는 지원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각국은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종합전략을 구성, 각 개인의 문제행동 정도와 필요(needs)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처우가 개발되고 있다. 종합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그리고 사후관리(After Care)를 목표로 구조화되어 있다. 즉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적 복지 지원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비행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누진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부모책임법제”의 등장

서구에서는 최근 학교총기난사사건 등 청소년 문제행동 양상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 그리고 새로운 개입전략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을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입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론 및 경험연구결과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비행과 가족(특히 부적절한 양육)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모책임법은 자녀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심리과정에 부모의 의무적 참여, 심리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 피해배상을 위한 금전적 책임, 처우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 및 기타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부모의 의무적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의 의무적 참여, 사회봉사명령, 벌금이나 구금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부모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 흔히 “부모교육(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다. 부모교육명령은 비행청소년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에 참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일종의 사법명령이다.

미국은 가장 포괄적인 영역에서 부모책임법을 시행하는 국가로서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소년법원에서 소년사건처리절차 및 처분집행과정에 의무적인 부모참여를 규정하는 법제가 있다.

영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부모책임이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을 통해서이다. 새로 제정된 ‘범죄 및 질서위반법’ 중 직접적으로 비행청소년의 부모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자녀양육협약(parenting contract)’와 ‘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은 비행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무현장에서도 강제적인 부모교육명령의 법제화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4년 7월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소년가정보호분과에서는 새로운 보호처분유형으로서 “부모교육명령”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비록 부모교육명령이 좋은 의도와 목표를 지향한다고 해도, 강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그 좋은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고, 부모책임법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론적, 법리적,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³²⁾ 따라서 부모를 위한 양육프로그

램은 기본적으로 예방적 성격으로 ‘의무’가 아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제도도입의 형식과 절차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3) 부모·가정 상담 및 교육지원의 강화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과 관련하여 가정 및 학교요인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처방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특히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청소년 비행 또는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도덕적·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효율적인 선도와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도 사회사업적 개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중심프로그램이나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범죄에 대한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위기청소년 관련지원책을 보면 위기결과 단계에 있는 범죄,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3차적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시켜 가고, 가출과 같은 위기행동 수준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건전한 생활습관 길들이기 프로그램, 취업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이 심각한 문제와 범죄로 들어가기 전에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생활기술, 가치관 함양 등을 도모함으로써

-
- 32) 법리적으로 볼 때, 부모책임법제는 자녀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개별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자녀의 비행 자체를 부모의 유죄인정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되며, 광범위한 법규정은 자의적 또는 차별적 범시행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비관론자들은 이 법제들이 복지예산이 감축되면서 범죄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상징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써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4) 학교폭력 대응정책 및 방안의 시사점

각국(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대처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박효정, 2006). 첫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후의 처리보다 사전예방활동 및 예방교육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준이 명확하고, 다기관 연계를 위한 실무지침과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회복적 사법실천(가령 FGC 혹은 피해자-가해자조정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활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VIII. 정책 제언

VIII. 정책 제언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통제이라는 정책목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 환경의 조성,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의 지원체계구성 등을 통하여 적절한 개입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가정 및 학교 중심의 문제행동 예방과 억제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향과 개선방안들을 정리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소년사법에 대한 기본 철학의 확립

범국가적 차원에서 소년사법의 기본철학과 패러다임을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정책은 국가의 “소년사법(juvenile justice)”의 원칙과 목표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정하는 일과 직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대응모델이 상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법모델(justice model)”과 “복지모델(welfare model)”, 그리고 “교육모델(educational model)” 간의 대립이다. 각 모델 모두 “소년보호이념”이란 개념 자체는 공유하고 있지만, 각 행정영역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보호”의 원칙과 목표는 전혀 달리 해석되고 있다. 그 결과, “소년보호이념”하에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청소년의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와 지원을 강조하지만, 실제 처분의 교육적 질이나 지원개입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필요에 대응하는지도 의심스럽다. 최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다기관 연계체계 형성의 어려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복지모델과 사법모델간의 긴장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가이념과 철학을 세우고, 우선성의 관점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각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입법적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우리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모델 속에서 비행청소년 재화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주요 원칙들의 상징적인 재통합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21세

기이후 선진 각국은 소년사법체계내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 특히 「사법외적 조치들(Extrajudicial Measures)」³³⁾를 중요한 ‘소년사법’ 절차과정으로 제도화시키는 개혁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³⁴⁾ 선진 각국들의 경험은 「사법외적 조치들」이 덜 심각한 청소년 범죄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로운 소년사법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는 덜 심각한 청소년 비행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비사법적 대응(non-court response)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s)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다양한 다이버전 조치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대안적 조치의 적절한 이용, 유형(type) 및 각각의 적절한 대상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각 영역별로 다양한 조직과 시설들이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다루는 데 활동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기관이 수행주체가 되어,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법적 근거 하에 어떠한 방식(강제적 처우 또는 임의적 지원)으로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구체화된 입법지침이 없다. 외국의 경험들에 따르면, 만일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이 사법절차 밖에서 이루어질 때는, 보다 강력한 입법적 지침(stronger legislative direction)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가정 및 학교에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관련법·제도의 개선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개입을 위해서는 부모역할 및 가정기능, 학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개입이 적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33) “사법외적 조치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① 피해자 및 공동체에게 야기된 해악의 회복, ② 피해자에게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③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한 조치 ④ 가족,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다른 성원들의 참여 등 ‘회복적 사법’이라는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부각시키고 있다.

34)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

및 복지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소년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과 관련된 근거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통합법률 또는 유기적인 법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수혜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 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정책 및 평가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단위에서 청소년보호 및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①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 :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입법원칙과 가치우선성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사법 실행을 위한 이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요구된다.³⁵⁾ 새로운 소년사법모델을 위한 통일적 원칙과 철학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균형적·회복적 사법(the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개념들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은 소년사법담당자만으로 기능할 수 없고,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지원체계와의 파트너십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요구한다. 회복적 가치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학교, 기업 및 변호사, 청소년육성관련그룹과 같은 사회화기관에게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⁶⁾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필요성 : 이 법률은 이미 위기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발달 경로로 들어선 비행청소년 보다는 위기전조나 위기표식 단계

35) 현행법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토대일 뿐이다. 현행 법규정 하에서 회복적 실천은 내재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화해중재’해결책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처벌(처우)의 기능에 중속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적 사법철학이 형사사법담당자에게 잘못 전달될 위험성도 높다. 즉 현행법 하에서 회복적 실천은 마치 형사사법담당자들을 위한 ‘도구’처럼 인지하도록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6)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소년법의 주요 개정방향 소년사법 기본방향으로서 균형·회복적 사법 도입 전제하고 있다. 균형회복적(the balanced and restorative) 사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사회내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간청소년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의 법제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및 위험행동을 하고 있는 위기청소년(“특별청소년”)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일종의 예방적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의 필요에 대응한 지원이 주로 상담, 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수행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 단체가 위탁받아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세부조항이 없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6조)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제15조 “교육적 선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소년사법체제와 청소년복지체제간의 연결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위탁(referral)” 신청³⁷⁾을 통하여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 및 민간참여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제5장 “교육적 선도”의 전면개정이 요구된다. 청소년 인권과 복지가 강조되는 21세기 정책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 선도”라는 용어규정은 새로운 시대적 이념을 남아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안적 용어(개념)을 개발할 필요가 있기 있다.³⁸⁾ 그

37) “위탁(referral)”이란 사법기관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가령 캐나다 소년사법(YCJA) 제6조 제1항 사법경찰은 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년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됨. 위탁은 오락프로그램, 상담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경찰조사단계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강제된 위탁동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을 이용하기 전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38) “교육적 선도”는 기본적으로 어의상 동어반복적이다. 또한 “선도(先導)”란 용어는 오늘날 어느 법령이나 규칙에서도 그 개념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관행적으로 실무에서 통용된 용어에 불과하다. 즉 선도조건부 다이버전 혹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어원이 일제시대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잔재로서 인식됨에 따라, 지난 90년대 중반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선도위원”이란 제도의 명칭을 바꾸어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바 있다.

대안으로서 21세기 소년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염두에 두어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과의 연관성을 담아 “회복적 보호지원”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복적 보호지원”의 장은 바로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전환처우 또는 중간처우를 위한 실행 인프라(infra)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는 12세미만의 아동범죄자 및 조발 비행자를 적절하게 처우할 수 없는 현행 소년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행 소년범 처우시스템이 소위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교정시설 수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처우의 차별화와 누진적 제재의 원칙하에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게 제도적인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아동복지법의 개정 : 아동학대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현재 친권이 제한되어야 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일시 격리되어야 함이 필요할 때, 이를 신속하게 강제할 규정이 없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법원에 친권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시급하게 청소년과 그 가족을 일시 격리하여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할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법원의 선고 없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분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 학생인권 원칙에 부응하여 최소한 직접적 체벌(물리적 체벌)의 금지원칙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개성되어야 한다. 근대적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체벌(때리는 행위)을 정당한 교육행위로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리적 차원에서 볼 때,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교사의 폭행이나 상해는 허용될 수 없다(이재상, 1999: 272; 김일수, 1998:328). 다시 말해, 체벌불가피성은 ‘사회적 통념’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불확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체벌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교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 장이다. 따라서 학교의 규율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비합리적 규율 및 재량권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판례들은 ‘학교가 학생권리를 제한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규율의 내용이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에 주목한다.³⁹⁾ 학교라고 해서 전체주의의 아성이 될 수 없으며, 학생도 헌법상의 권리주체임을 확인하는 법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훈계와 벌, 지도와 징계 등을 통한 규율과정은 필수적이다. 훈육과 학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며, 규율의 형식과 내용은 시대정신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벌 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대적·헌법적 인간의 형성에 있다면, 교사의 징계방법도 역시 근대적 교육목적과 가치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학생인권·자치법』 제정 필요성: 『학생인권·자치법』 제정이 지니는 의미는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과 폐쇄성을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39) 즉 “① 교문 앞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 특히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보호권, 자의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유보할 수 없으며, ②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학습분위기와 다른 학생들의 안정을 방해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하에서만 가능하다. ‘Massie v. Henry(1972)’, ‘Ferrell v. Dahas Independent School’, ‘People v. Bowers(1973)’, ‘New Jersey v. T.L.O(1985)’, ‘Tinker v. Desminon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1969)’ 등이 학생권리와 규율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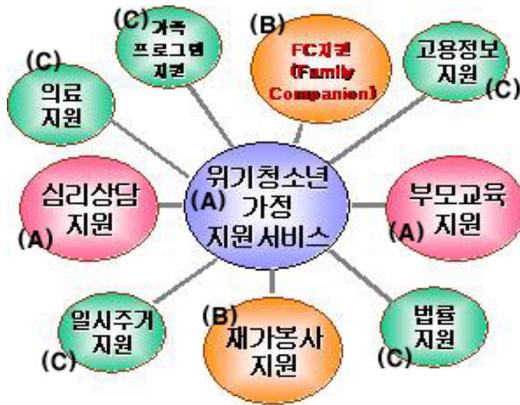
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학급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 학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학교자치의 기초단위로서의 학급 자치가 안정되면 학생들이 자치와 협동의 원리를 익히면서 민주적 시민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이 공개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길은 학급에서부터 학년(학급간)-학교로 이어지는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다. 체벌문제나, 학교폭력, 금전비리, 파행적 입시교육 등 교육문화나 정책, 체제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 안에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도 갖게 된다. 이것은 헌법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러 가지 권고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구조를 비판하고 법률이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구조화된 입시체제를 해체하고 진정한 교육권을 실현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과 교사의 진정한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 학교 밖의 청소년 복지 등 제도·정책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진정한 의미의 인권교육이 학교에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인권교육은 개정 법률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실질적 인권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복지·학교환경과 입시환경의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3) 부모·가정에 대한 개입방향과 전달체계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가족 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원내용의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이혼이나 경제적 갈등에 의한 가정

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 부적절한 양육방식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을 위기에 몰아넣는 데 기여하는 가정적 요인들이다. 이러한 가정적 요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지원이 바로 가정·부모중심의 지원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약화된 가정기능을 회복시키는 지원, 어려운 가정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의 자문과 지원, 부모들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교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상담과 같은 지원들이 포함된다. 즉 심리·정서적 지지와 심리상담, 부모교육, 경제적 지원 및 가사도우미 등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의 종류

(A)와 (B)에 그려진 지원들은 가정에서 우선 요구되는 지원들이고 (C)는 2차적 지원에 속한다. (B)는 지역의 상담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가정동반자와 재가자원봉사자 지원은 지역의 사회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구분용 외, 2005참조).

①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 문제청소년 가정의 부모는 우선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들은 현재의 열악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자신도 어릴 때 부터 학대의 대상이거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 다시 말해

서 효율적이고 건강한, 생산적인 부모역할을 관찰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들에게 인간의 심리적 특성, 발달 특성을 비롯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서적 교류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은 각각이 해결해야할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응집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 학교폭력 문제해결방안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부모들에게만 정보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가정기능을 정상화하고 청소년 문제행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 부모들의 교육기회 및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등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나 경제적 빈곤이 주요인이라기보다는 가정의 무관심,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방식 및 폭력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 예방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연1회라도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부모들이 관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 부모교육은 의사소통 훈련, 훈육 및 부모-자녀 관계개선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제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 부모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및 사법기관(경찰, 법원 및 보호관찰소) 등의 연계망 속에서 지역관련기관이 찾아가는 부모교육 또는 호출하여 상담실에서 개별적,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부모교육명령”과 같은 제도를 우리의 법제도속에서 어떻게 절차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별 부모교육에는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 개선교육, 이혼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이 있고,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따라 가출 청소년 가정, 인터넷 중독 청소년 가정, 폭력 청소년 가정, 따돌림 청소년 가정 부모교육,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등이 포함된다.

② 가정동반자(FC: family Companion) 지원: 가정지원을 할 때에는 가족 안의 중심인물을 찾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부의 위기 청소년

년 가정은 가정이 해체되어 있거나 가정이 유지되더라도 갈등적이고 응집력이 부족하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원조차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더 자주, 더 집중적으로 심리적 지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림을 하는 도우미의 손길도 더 필요하다. 민감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민감한 관찰과 지원은 가정의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바로 가정 동반자이다.

③ 경제적 자문 및 지원: 청소년을 위기로 몰아넣는 변인 중 가장 분명한 변인이 가정의 빈곤이다. 빈곤의 문제는 청소년 분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최소한의 발달,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그래서 청소년의 가정이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고용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교육 지원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④ 의료적 자문 및 지원 :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알코올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집중입원 치료가 요망되는 문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조손가정이 많아진다. 이는 젊은 부부는 도회지로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고 조부모가 어린 자녀를 맡아 양육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손가족의 어려움 중 하나는 조부모의 노환에 의한 건강 문제이다. 혹은 치매로 인하여 맡겨진 아이가 양육은커녕 학대와 방임되기 일쑤이다. 앞에서 언급한 FC에 의해 이러한 가정이 발견되었을 때 의료지원은 필수적이다. 한편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학대와 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문제 가족을 입원치료 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미리 다양한 연계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법률적 자문 및 지원 : 위기청소년의 경우, 도박, 폭력, 가출 등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문제가 어떤 법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모를 때, 합리적 해결이나 생산적 해결이 어렵게 된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당황한 나머지 청소년 자녀를 바르게 안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나가 법률적 정보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법률 지원방법으로는 가정 폭력법, 아동복지법 등을 대조하여 법률적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한다. 이혼, 별거, 사별, 가출 등의 가족구조의 변경 시 법적 처리과정을 확인한다. 이혼 시 친권, 양육권, 면접권 등의 결정사항과 이행수준을 확인한다. 가정의 소송 문건의 유무와 청소년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부모에게 전달한다.

⑥ 재가 자원봉사 지원: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 정서적 지지와 휴식이다. 위기 가정의 특징은 가난이나 가족의 갈등에 의해 휴식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생물학적 욕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재가 자원봉사지원이다. 지원방법은 가정의 일반적 생활을 점검(빨래, 청소, 식사와 반찬, 옷이나 이불, 난방 등)하여 필요한 재가봉사 내용을 결정한다. 활용연계기관으로는 지역의 재가자원봉사단이나 일반 주부가정봉사단을 연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한국노인복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여성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재가 자원봉사단과 연계한다.

⑦ 여가 및 문화 지원 : 가족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캠프와 주말 집단 프로그램 등을 가족이 활용하게 하는 지원이다. 열악한 환경과 황폐되어 있는 가정의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등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다. 활용연계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에 마련된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관 및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시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부모·가족 지원체계 안에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위기(가능)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상태에 따른 지원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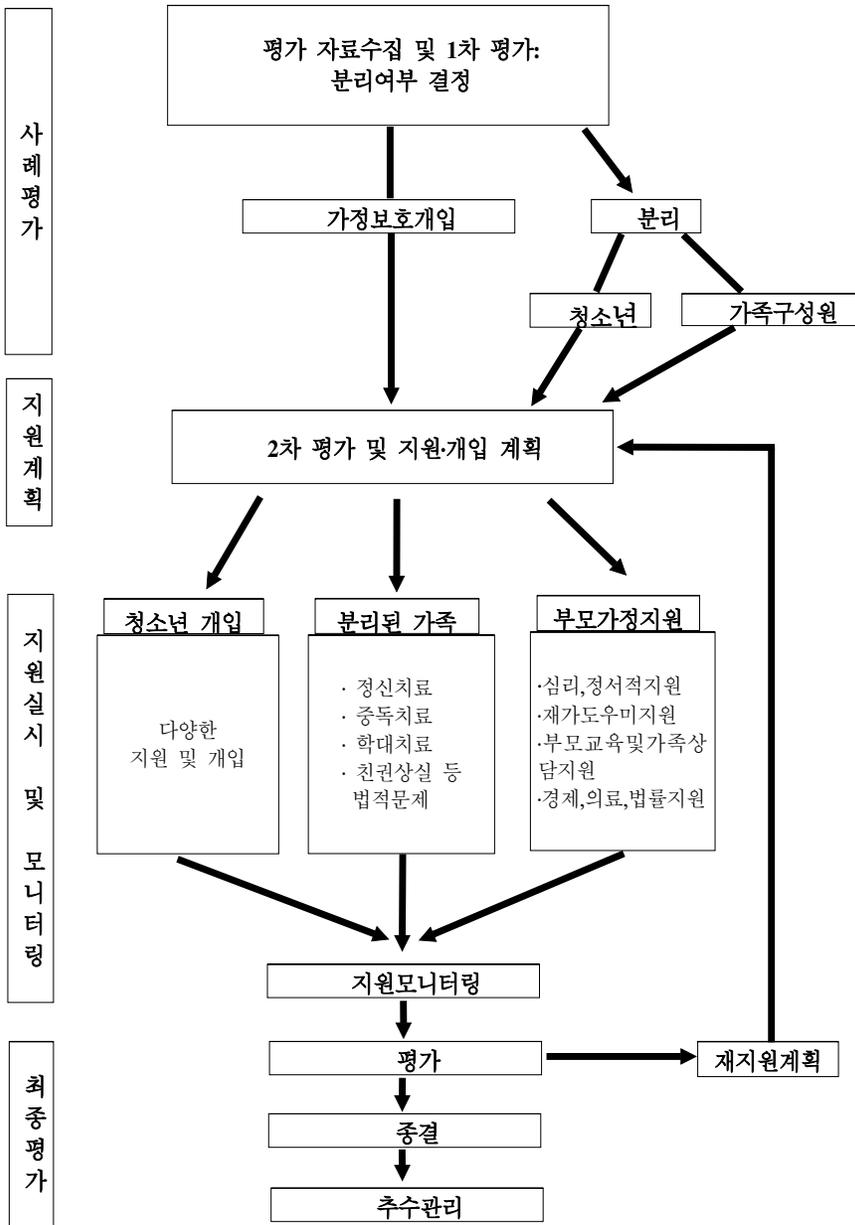
지기관이나 자원봉사기관, 산업체 혹은 상담기관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여 대상 가정이나 부모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을 위한 평가는 가정방문 등의 현장성과 청소년과 가족이 동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동의성 등의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원칙의 내용들이다.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을 위한 평가의 원칙

- **현장성:** 평가는 가정 및 직장 방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체성:** 평가는 청소년 외의 가족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동의성:** 평가는 의뢰 청소년의 동의와 가족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자료 수집 - 1차 평가를 통한 분리 지원 여부 결정 - 2차 평가를 통한 지원 계획 수립 - 지원 실시 - 지원 모니터링 - 종결 평가 - 추수 평가 및 재 지원으로 전달된다.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정방문과 직장방문 등 현장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가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계획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하나는 청소년과 가정 혹은 지원핵심 가족구성원을 분리해서 개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함께 가정을 유지한 채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나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개의 경우 위기 청소년의 가정을 위한 지원들은 대개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원이 요구된다. <그림Ⅷ-2 >은 이러한 과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 VIII-2] 부모가정 중심의 지원 전달체계

4)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의 개선

①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다기관간 실무규약(protocols)] 마련 : 관련대응기관간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청, 경찰·검찰, 법원, 민간청소년단체 및 의료기관 등 상호간의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간의 통합적·협력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그리고 전문 서비스기관의 특성화·전문성 강화, 각급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DB체계와 실무협의회의 정례화, 기관연계를 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이고 기관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 있으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외부의 개입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사건조사나 처리과정에 좀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려면,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이들이 좀더 외부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경우, 학부모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여 학교에 입학 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같이 오리엔테이션 시키며, 학교폭력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에게 벌금과 양육명령(parenting order)과 제도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간에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②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 : 앞서 제시한 미국 【교육부의 Chapter 19】와 같이 [학생비행에 대한 학교처리절차규정] 등을 마련하여, 위반의 심각성 등급에 따라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사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 교사, 교장, 교육감 및 교육 각급기관의 담당자들의 책무와 면책권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입법원칙과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세우고,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관련 법제간의 관계 및 법조항간의 관계가 상충될 때, 구체적인 입법적 지침과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법처분이 내려진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다시 징계처분을 행하거나(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 가해학생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는 상황(무죄추정의 원칙)을 법리적 복잡한 쟁점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④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라는 정책목표에 합당하도록 세부적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치료비 구상권 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가해학생 처분조치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그리고 “자치위원회”성격과 임무 등이 과연 헌법적 권리와 적법절차라는 대원칙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민사조정이나 아닌 범죄문제와 관련된 “분쟁조정”이란 일반적으로 고도의 ADR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⑤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실천모델의 도입 : 우리의 소년법이 강제적·처벌지향적 모델로부터 참여적·예방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바로 갈등을 다루는 새로운 영역(회복적 사법실천)의 발전과 연관된다. 회복적 사법은 본질상 입법적 변화 자체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없다. 각국에서 비-입법적 요인들(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증가, 대중적 및 전문적 교육, 다기관 파트너십, 지방정부의 적절한 이행조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폭넓은 범정부적 접근전략을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견고하고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발전시키는 국가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지역사회 사법센터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ARD)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역시 새로운 회복적 사법 실천의 하나로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제3의 조정센터⁴⁰⁾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또는 화해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은 학교 또는 경찰에서 사건의 “위탁(referral)”하여, 회복적 실천기술을 훈련받은 전문조정자(facilitator)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미권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학교들은 이미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접근법들은 교육적 성과를 지원하고 행위 개선을 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방법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형태로는 Peer Monitoring, Mediation, Circle Time 등을 참조해 볼 수 있다.

⑥ 학교 전문상담제도의 확립 : 외국의 경우에는 교사지도 교사와 학생지도 담당자의 업무가 구분되어 상담전문인력이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학생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상담인력이 학생지도 및 상담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체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성공적 제도 정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비용보조를 통해, 학교상담정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상담활동의 국가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학교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자살, 우울, 불안,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청소년 비행이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기능적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다양한 정서장애를 지니기 쉽다. 하지만, 정신적 문제에 대한 부모 및 교사들의 이해부족과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마땅히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전문적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은 매우 중요

40) 우리의 경우에도, 입법적 개혁조치와 더불어 지역사회연결망과 다기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대안적 분쟁해결센터(가령, 미국식의 Community Justice Centre나 영국의 Mediation Center, 네덜란드의 Real Justice, 프랑스의 Maisons de Justice 등)와 같은 기관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법체계 외부에서, 회복적 개입을 위한 접근문턱이 보다 낮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사회 분쟁해결문화가 형사 사법체계를 대체할 수도, 대체해서도 안 되지만, 대안적인 분쟁해결(ADR)의 수평적 체계는 실제 자기조직화된 시민영역의 규율기제와 질적 및 양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사법체계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하다. 하지만, 학교보건교육에서는 정신건강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각종 정신건강서비스와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거점 구실을 해야 한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에 66.5%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충남, 전남 등 농어촌 지역에선 보건교사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정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역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학교 신체검사는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학교보건차원에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경준 외, 2005:190-192).

⑧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태도교육은 상당시간을 요하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시행 시기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대처능력 증진 및 심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시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⑨ 대안학교 설립 등 가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데 비해 중학교는 의무교육제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간에 학교폭력이 확산되는 기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의 확대가 필요하다.

⑩ 학교폭력은 아동인권침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은 불가능하여, 이를 위해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학생교육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그 자체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권교육과 학생들의 평화적인 감수성 및 갈등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가령 “책임있는 시민권 형성 프로그램 (Responsible Citizenship Program)-호주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10시간짜리 프로그램-”과 같은 회복적 사법이념(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에 근거한 체계적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세현(1995). 청소년 비행의 '비공식적' 통제와 낙인의 효과: 가정·학교·사법 기관에서의 통제 경험의 관계. 한국사회학, 29:147-170.
- 강영자·김윤희(1999). 비행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충북가정학회지). 8(2):245-254.
- 강영철(2002).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교정연구, 15, 69-98.
-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06년도 중점추진계획(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6). 「Safe School」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교감·학생부장·상담부장 연수회
- 교육인적자원부 외 관련부처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편람.
- 구본용 (1992).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학생생활연구, 제10호, 61-8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구본용 외(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구자경(200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 학교관련변인을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11(2), 217-239.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 및 분석연구.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 (2005), 4대폭력 추방 종합 대책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2004), 학교폭력대책 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전문가 Workshop(심화).
- 권준모(2003). 심리학과 교육. 서울: 학지사.
-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금명자·오혜영 외(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

- 안, 한국청소년상담원.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자녀양육 및 비행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12(3):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기광도·이희길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7:7-28.
- 김경준 외 (2005).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 외(2005),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대일 (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심상달 편, 취약계층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KDI 연구보고서.
- 김문조 (1992).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분과 심포지움 발표문.
- 김성곤(2005). 비행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8:165-217.
- 김성일 (2001).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친사회적 발달을 위한 사회화 방법. 청소년학연구, 12(3):193-222.
- 김영삼 (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현황,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 김영지 (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은경 (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2000), '체벌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제34집 봄호.
-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이동원 (2003).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의철·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99-142.
- 김일수 (1998).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

- 김정란(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1(5), 171-180.
- 김정옥·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95-115.
- 김준호 (1996). 법의식과 청소년 비행간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4,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준호·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25: 109-41.
- 김준호·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 (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 (1993).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청목출판사.
- 김준호·안호용·김선애·김선엽(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김준호·이동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2),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화 외(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학지사.
- 김학일 (200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과 정부의 역할,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성호(1993).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성호(2005).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16(3):295-330.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역 (1999). 청소년비행의 이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선화 (2002), 소년소녀가정세대와 아동복지법, 한국의 아동복지법, 서울: 소화.
- 문은식·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219-249.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2004,
- 민수홍 (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 (200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과 피해경험, 한국청소년패널 조사Ⅱ(데이터활용논문집).한국청소년개발원,333-362.
- 민수홍 (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박병식 (200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자료집.
-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정선 (2003).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 다수준 접근의 적용. 형사정책 15(2):11-154.
- 박창남·도중수 (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박현선·이상균 (1998). 청소년기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 램 개발 -학교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8): 205-229.
- 박효정 (2005),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외(2006),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배문조·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가족·학교환경·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23-35.
- 보건복지부 (2005), 2005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
- 신군자 (2004). 청소년 위기와 학교의 구조적 혁신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14(3): 133-155.
- 신나나·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학회지 18(3):99-113
- 연문희 (2003), 한국학교상담의 현재와 미래, 한국학교상담학회 2003년 학술대회 자료집.
- 오경자·김은이·도레미·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53-71.
- 오성삼(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 출판부.
- 우정자·김문섭·최종혁(2003), 선진 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유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유성경·안희정·이소래·오익수(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성경·이소래·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홍준·정은경 (1999). 학교생활요인과 학교청소년 비행. 사회과학, 38(1):123-150.
- 윤여각 외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동원 (1997).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의 확장: 주요통제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73-102

- 이동원 (2001). 청소년비행의 주요요인간 상호작용효과, 교정연구, 13(1):363-392.
- 이명숙·김영미 (1993). 가족구조와 부모물화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2): 201-216.
- 이민희 외 (200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임지연·안지선(2004). 외국의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상현 (1995). 학교교육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 71-108.
- 이성식 (2001). 가정에서의 체벌과 청소년폭력비행. 교정연구 12:235-61.
- 이성식 (2003). 가정과 청소년비행:주요 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1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전신현 (1993). 구조적 상호작용이론을 통한 청소년비행이론의 통합 모색. 형사정책연구, 16:153-82.
- 이수성 (1984).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법학 제 25권, 2-3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 이은아·정혜정 (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 한국가족복지학, 5(2):69-86.
- 이은주 (200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7(1):149-168.
- 이장현·우룡·조혜경 (2004). 청소년 범죄의 동향과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재상 (1999).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 이주호 (2005). '한국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 나남출판.
- 이혜영 (2003). 빈곤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전명희, 오익수, 김진희(1995). 청소년 비행화 과정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3: 91-113.

- 전영실 (2002). 부모의 훈육과 비행의 관계 연구, 형사정책연구, 49: 89-122.
- 정기선·민수홍·이희길 (2001). 가족과 청소년비행.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정현희·이시형·김은정·박현선·신현아·강신옥 (1998).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학교정신보건사업의 현황과 미래. 42-70.
- 조영달 (1998), '한국청소년의 인권과 교육',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나남출판.
- 지승희·이은경·이지은·최수미·정찬석·이소영 (2002).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중단연구 II.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개발원 (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 청소년개발원 (2004), 전국 청소년생활실태 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가출청소년 조기발견방안 및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매뉴얼.
- 청소년위원회 (2005),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 정책과제.
-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5),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
- 최영신 (2001), 청소년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 (2005). 여자 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강석구·김혜경 (2005), 청소년유해환경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지영 (2005), 미국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 세미나 자료집.
- 폭력없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2005), 학교

- 폭력 위기관리 매뉴얼.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2004),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위 크샵 자료집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2005), 학교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100인 토론회.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국회좋은교육연구회 (2005),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학교폭력과 성비행의 관계.
- 학교폭력실태조사기획위원회 학교정책실(2005),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한국청소년복지학회(2005),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개치를 위한 연계체계구축방안 연구보고서
- 한기혜, 박영선 (2004).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형사정책연구. 13(1):95-109.
- 황순길 외 (2005), 학교청소년상담사 학교상담 활동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47-87.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Eadsworth.
- Barnes, G.M. and M.P. Farrell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763-76.
- Blum, R.W., & Libbey, H.P. (2004). Executive Summary. *Journal of School Health*, 74(7):231-232.
- Blum, R.W., McNeely, C. A., & Rinehart, P.M. (2002). *The Untapped Power of Schools to Improve the Health of Teens*. Minneapolis, MN: Center for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Univ. of Minnesota.

- Botvin, G.J., & Torbu, S. (1988). Preventing adolescent substance abuse through life skills training. In R. Price, E. Cowen, R. Lorion, & Ramos-McKay(Eds.), *14 ounces of prevention: A casebook for practitioners*(pp.98-1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itwaite, J. (1981). The Mi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Reconside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36-57.
- Brezina, T. (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The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71-99.
-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295-319.
- Chung, I. J.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2, 355-380.
- Chung, H., & Elias, M. (1996). Patterns of adolescent involvement in problem behaviors: Relationship to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life ev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771-784.
- Clabby, J. F., & Elias, M.J. (1986). *Teach your child decision making*. New York: Doubleday.
- Comer, J.P (1980). *School Power: Implications of and Intervention Project*. New York. ,NY: Free Press.
- DeVoe, J.F., Peter, K., Noonan, M., Snyder, T.D., and Baum, K.(2005).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05(NCES 2006-001/NCJ 210697).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Just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epartment of Education in State of Hawaii (2002). [Chapter 19 Student Misconduct, Discipline, School Searches and Seizures,

- Reporting Offenses, Police Interviews and Arrests, and Restitution for Vandalism and Negligence] in HAWAII ADMINISTRATIVE RULES, Office of Curriculum.
- Dryfoos, J.G. (1990).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lias, M. J., & Clabby, J. F. (1989). *How to monitor, personalize, and adapt lesson activities. Social decision making skills: A curriculum guide for the elementary grades* (pp. 235–253). Piscataway, NJ: Rutgers University Center for Applied Psychology.
- Elias, M. J., Gara, M. A., Schuyler, T. F., Branden–Muller, L. R., & Sayette, M. A. (1991). The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Longitudinal study of a preventative school–based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409–417.
- Elliott, D.S., Voss, H. (1974). *Delinquency and Dropout*. Lexington: Lexington.
- Franklin, W. (1995).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adolescents: The role of protective and compensatory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3.
- Glueck, S., & Gul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Gottfredson, M.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Stanford University Press.
- Gribble, P. A. (1991). *Prarnets' and children's view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ies and stress–resilient outcomes in urban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Rochester.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Jang, S.J. and C. Smith (1997). A Test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ervision,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307-36.
- Johnson, R.E.,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zdin, A.E. (1997) Parent Management Training: Evidence, Outcomes, and Issu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1349-56.
- Kelly, D.H., & Pink, W.T. (1973). School Commitment, Youth Rebellion, and Delinquency. *Criminology*, 10: 473-485.
- Kisberg, B. et al. (2004),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Klem, A.M., & Connell, J.P.(2004). Relationship Matter: Linking Teacher Support to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62-273.
- Lawrence, R. (1985). School Performance, Containment Theory, and Delinquent Behavior, *Youth and Society*, 17(1): 69-95.
- Loeber, R. and M. Stouthamer-Loeber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 and Delinquency. In *Crime and Justice*, M. Tonry and N.M. Morris(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sueda, R.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577-1611.

- McCord, J. (1979). Some Child-rearing Antecedents of Criminal Behavior in Adolescent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77-86.
- Mihalic, S. Irwin, K., Fagan, A., Ballard, D., & Elliott, D. (2004). *Successful Program Implementation. Lessons from Blueprint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1995). *Violence prevention plan: Unlearning violence*. Saint Paul, MB: State of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 Mischell, W. (1984). Convergences and challenges in the search for consistency. *American Psychologist*, 39: 351-364.
- Mischell, W., & Ebbesen, E. B. (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329-337.
- Mischell, W., Ebbesen, E. B., & Zeiss, A.R. (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s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204-218.
- Nye, F. (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03). *Guide to Using School Cop to Address Students Discipline and Crime Problems*. 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U.S. Department of Justice.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4).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Olweus, D., Limber, S. & Mihalic, S.F. (1999).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Book Nine: Bullying Prevention Program*. Boulder, CO: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 Paternoster, R. and P. Mazerolle, (1994),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 : 235-263
- Patterson, G.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 (1986). Maternal Rejection: Determinent or Product for Deviant Child Behavior? In W.W. Hartup & Z. Rubin(ed.).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Patterson, G.R., J.B. Reid, T.J. Dishon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olk, K., & Schafer, W.E. (1972). *School and Delinquenc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Rankin, J.H., & Kern, R. (1994). Parental Attachment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2: 495-515.
- Rankin, J.H., & Wells, E. (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149-165.
- Ray, M.C. and W.R. Downs (1986). An Empirical Test of Labeling Theory Using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3:169-94.
- Rebellon, C.J. (2002). Reconsidering the Broken Homes/Delinquency Relationships and Exploring its Mediating Mechanism. *Criminology*40:103-35.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W., Bauman, K.E., Harris, K.M., Jones, J., Tabor, K., Beuhring, T., Sieving, R.E., Shaw, M., Ireland, M., Bearinger, L.I., & Udry, J.R.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823-832.

- Rosenberg, M., & Kaplan, H. B. (1982).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 concept*. Arlington Heights, IL: Harlan Davidson.
- Rutter, M., & Giller, H. (1984). *Juvenile Delinquency: Trends and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mpson, R.J. and J.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Seligson, M. & Allenson, M. (1993), *School-age Chile Care*, London, Auburn House.
- Simons, R.L., C. Wu, K. Lin, L. Gordon, and R.D. Conger (2000).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Corporal Punishment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8:47-79.
- Smith, C.A. and S.B. Stern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382-420.
- Snell (2005). *School Violence and No Child Left Behind: Best Practices to Keep Kids Safe*. Reason Foundation.
- Snow, D. A. (1995). Personality correlates of adolescents stress coping response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Sullivan, R. and Wilson, M.F. (1995).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elinquency: A Review and Proposal' , *Adolescence* 30(117): 1-17
- Snyder (2001),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Tittle, C.R., Villemez, W.J. and Smith, D.A. (1978). The myth of

-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643-650.
- Tittle, C. R. & Meiyer, R. F. (1991). Specifying the SES/Delinquency Relationship, *Crimnology*, 28(2): 271-299.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Unsafe School Choice Op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5).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5*. NCES 2005-09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Secret Services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The Final Report and Finding of the Safe School Initiative.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U.S. Secret Serv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z, J.R., G.R. Donenberg, S.S. Han, and D. Kauneckis (1995).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Outcomes in Experiments vs Clinics: Why the Dispar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83-106.
- Weissberg, R.P., Jackson, A.S., & Schriver, T. P. (1993). Promot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and health practices in young urban adolescents. In M.J. Elias(Ed.), *Social decision making and life skills development: Guidelines for middle school educators*(pp.45-77). Gaithersburg, MD: Aspen.
- Weissberg, R.P., Caplan, M., & Harwood, R.L. (1991). Promoting competent=enhancing environments: A systems-based perspective on primary preventio.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30-841.
- Wells, L.E. and J.H. Rankin (1988). Direct Parental Control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6:263-85.

- Wider Reserch Center (1998). *The Initiative for Violence Free Families and Communities: A Five Year Assessment*. Minnesota Center Against Violence and Abuse(MINCAVA). MN. U.S.
- Zhang, L. and S.F. Messner (1995). Family Devian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3:359-87.
- Ziegler, E., Taussig, C., & Black, K. (1992).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 promising preventative for juvenile delinquency . *American Psychologist*, 47(8): 997-1006.

연구보고 06-R13-1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인 쇄 2006년 12월 3일

발 행 2006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화신문화(주) 전화 (02) 2277-062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 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지원정보팀)

ISBN 89-7816-646-6(93330)